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09-16

방송통신콘텐츠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한국전파진흥원

방송통신콘텐츠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조사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여 수행한 ‘방송통신콘텐츠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 임 연 구 원 : 박유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공 동 연 구 원 : 최진원(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정언(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경남(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Contents

요약	vii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II	저작권의 이해
	1. 저작권의 기본 개념 및 구성 5
	1) 저작권법의 목적 5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 6
	3) 공정한 이용의 도모 10
	4) 저작물의 자유 이용 10
	2. 저작권법의 변화 14
	1) 저작물의 법적 보호의 시작 14
	2) 국제질서에서의 편입 14
	3) IT기술과 저작권법 15
III	저작권 침해 및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 현황
	1.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유통 현황 17
	1)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른 불법복제물 규모 17
	2)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불법복제물 규모 26
	2. 방송통신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현황 29
	1) DRM 30
	2) CAS(수신제한시스템: Conditional Access System) 기술 32

3) 디지털 워터마킹	34
4) 핑거프린팅 기술	36
5) 필터링(Filtering)	39
6) 복사 방지(Copy Protection) 기술	41
7) CL(Copyright Labeling)	43

IV

뉴미디어의 등장과 저작권

1. 뉴미디어 등장에 따른 저작권 이슈	45
1) 아날로그 저작권의 한계로 인한 저작권 문제 대두	45
2) 뉴미디어와 관련된 저작권 법	46
2. 사례 분석	49
1) 전송과 방송	49
2) 방송통신융합과 저작물의 사적 이용	52
3. 해외 주요국의 저작권 제도 정비 현황	61
1) 공중 이용에의 제공	61
2) 사적인 이용에 대한 통제	63
4. 저작권 개선 필요성	66
1) 방송·전송 준별에 대한 재고	66
2) 사적 복제에 대한 재고	68

V

인터넷의 진화와 저작권

1. 인터넷 진화에 따른 저작권이슈	73
1) 저작권 문제 대두 배경	73
2) 인터넷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	75
2. 사례 분석	80
1)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저작권	80
2) OSP와 간접침해	85
3) 자유이용과 권리처리	88
3. 해외 주요국의 저작권 제도 정비 현황	92
1) OSP의 저작권법적 지위	92
2) 권리처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97
4. 저작권 개선 필요성	101

1) OSP의 역할과 책임	101
2) 자유이용의 재조정 – 열거적 조항의 한계	102
3) 권리처리의 어려움	103

VI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미디어 융합에 따른 재편	105
1) 방통융합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체계 마련	105
2) 사적 복제에 대한 개선 방안	106
3) OSP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	107
4)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의무와 시정명령 제도	108
2. 권리처리의 간소화	110
1) 저작권 등록 활성화	110
2) 집중관리단체의 역할 제고	111
3) 법정허락 제도와 저작권집중관리제도 (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	112
4) 온라인 저작권거래소	113
3.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권리 균형 제고	116
1) DRM 우회금지에 대한 개선 방안	116
2) 일반 조항의 도입 검토	117
3) 가이드라인의 모색	118
4. 상생의 저작권 모델	119
1)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119
2) 오픈 비즈니스 모델	120
3) 대안적 보상체계	121

VII 결 론

Contents

표 목 차

〈표 1〉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8
〈표 2〉 저작권의 자유이용	11
〈표 3〉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0
〈표 4〉 2008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성과	26
〈표 5〉 저작권법 위반 및 검거 관련 현황	28
〈표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과태료 처분 현황	29
〈표 7〉 CCL의 구성 요소	44
〈표 8〉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비교	48
〈표 9〉 국제협약상의 공중전달권	62
〈표 10〉 우리나라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79
〈표 11〉 현행 법률에 의한 검색사이트 규제 내용	81
〈표 12〉 저작권 등록의 효과	98
〈표 13〉 계정 게시판서비스 정지 명령	109

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1]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	18
[그림 2] 온라인에서의 불법 복제물 시장 규모	19
[그림 3]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24
[그림 4]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적(월별)	27
[그림 5] 온라인 콘텐츠의 건당 모니터링 실적 추이	28
[그림 6] DRM의 기술적 구조도	30
[그림 7] CAS 시스템 구성도	33
[그림 8] 특징점 기반의 핑거프린팅을 이용한 UCC 인증절차	37
[그림 9] 워터마킹 기반의 핑거프린팅의 활용	39
[그림 10] 공중송신의 개념	48
[그림 11] Ental 홈페이지	58
[그림 12]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이용 절차	115
[그림 13] 방송콘텐츠 라이선스 이용계약신청시스템	115

요 약 문

저작권보호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복제물시장 규모는 9,660억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온라인의 불법복제물 유통비율이 83.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기준으로 영화콘텐츠가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으며, 방송콘텐츠, 게임콘텐츠가 뒤를 이었다. 모니터링 및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변화로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콘텐츠가 무료 혹은 저가에 유통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뿐 아니라 불법복제 국가라는 낙인이 찍힘으로써 국가적인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불법복제 및 유통이 세계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것은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디지털콘텐츠는 품질의 저하 없이 무한히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쉽게 복제되어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유통될 수 있다. 원천콘텐츠와 품질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는 불법복제된 콘텐츠를 이용할 경제적 유인이 발생하게 되며, 반대로 저작권자는 창작의 유인을 잃게 되어 콘텐츠의 제작이 감소하게 된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관점에서, 그 동안 저작권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유와 개방으로 대표되는 웹2.0시대가 도래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강화에 덧붙여 이용자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청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웹2.0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콘텐츠의 창작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더 많은 개방과 공유로 원천 콘텐츠의 활용이 높아짐은 물론 제 2, 제 3의 새로운 콘텐츠가 창출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발생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고품질의 콘텐츠가 탄생되는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저작물의 불법적인 사용은 창작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위법성의 인식이 전혀 없는 일상적 활용에 대해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적법한 이용까지 위축되어 인터넷의 의미 자체가 축소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더불어 콘텐츠의 활발한 유통을 가능케 하는 저작권 시스템을 고려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방통융합 시대, 저작물의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이해 관계

자간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변화된 환경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바람직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저작권 제도에 영향을 미친 큰 변화로 방송통신융합과 인터넷의 진화를 고려하여 이들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해외 주요국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저작권자와 이용자, 양자의 권리를 조율하고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방통융합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방송과 전송의 명확한 구분이 힘든 현실에서,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효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중에 대한 전달과 지인간의 전달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법의 태도 역시 재고의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 저작권법은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수년간 개정을 해오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기술 방식에 따른 준별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방송과 전송의 개념은 좀 더 세밀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의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발전을 저작권법이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사적복제에 대한 개선이다. 복제기와 DRM 기술 등의 발전으로 사적 복제 조항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융합 미디어는 공중에 대한 이용, 개인에 대한 이용의 구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고가의 PVR을 구입할 필요 없이 인터넷VCR 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개인용 방송중계장치를 이용하면 방송권역이나 저작권 분쟁에 대한 고민 없이 사실상 지상파 재전송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메일을 통해 다수에게 ‘사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중에게 음원을 전달하는 사업자도 등장했다. 사적 복제 규정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조화방안으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로는 복제보상금제도와 사적 복제 대상을 제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즉 복제기기나 매체 등에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안과, 불법 복제에 대한 법률적 방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적복제 면책의 요건으로 ‘정당한 원본’을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사업자(OSP)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이다. 새로운 매개자로 등장한

OSP는 이전의 매개자와는 달리 콘텐츠에 대해 인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자기 책임 과실책임을 기조로 하는 책임 체계에 간접침해 방조책임이라는 이론 하에 제3자의 책임이 확대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OSP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면책 조항에서 구체화되는데 OSP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법조문의 적용 대상이 되는 OSP 범위 확정만큼이나 OSP의 종류와 행동에 따른 책임 범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하므로 일일이 미리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오히려 현재처럼 단일한 규율체계를 통해 일반 조항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춘 면책 조항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OSP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법 적용이 바람직해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면책 규정의 효과가 임의적 감면인 점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2009년 4월에 새로이 도입된 ‘3진아웃제’는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OSP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저작권의 권리처리의 효율화이다.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저작권자 탐색과 협상에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므로, 권리자 탐색을 위한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거래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등록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법적인 저작권의 공시 제도로는 저작권 등록제도가 유일하며, 비교적 간단한 서류의 제출로 쉽게 법적인 효력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관리와 보존, 그리고 검색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면, 권리자 확인을 위한 공시 수단으로서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리의 보유자와 변동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DB 구축이 이루어지면 현재 권리자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시수단으로서 거래비용을 낮추고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고, 공유(Public Domain) 저작물, 공공콘텐츠의 활용도 보다 용이해져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온라인저작권거래시장 구축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원 파일을 간편하게 결제하고 다운로드 받듯이, 권리자와 이용자를 매개할 수 있는 콘텐츠 거래시장이 갖추어진다면 콘텐츠 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소재와 협상이 필요치 않으므로 저작권 처리를 위한 거래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저작권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되는 콘텐츠 권리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

급하다. 등록제나 권리인증제도와 연계하여 거래되는 콘텐츠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등록이나 인증의 법적 효과를 제고하는 입법론적 대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저작권자의 권리뿐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균형의 재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권리의 부여와 저작권 제한 등 자유이용 관련 조항들이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새로운 이용형태가 나타나면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열거가 아닌 일반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이용의 일반 조항 도입이 유력한 가운데, 각 분야별로 소위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권리와 이용자의 균형은 세세한 사례들을 일일이 법조문을 통해 구현할 수는 없다. 결국 권리와 이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룰형성이 필요하고, 이에 의하여 법원의 판단 준거가 생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사용의 정착이 이루어져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일곱째,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활용 촉진이다. CCL이 표기된 저작물의 경우, 이용자는 저작권자와 직접 접촉하여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의 이용방법과 조건을 알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저작권 분쟁의 소지 또한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등의 대형포털을 중심으로 CCL이 활용되고는 있으나 아직 CCL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용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 활성화를 위한 CCL 도입 지원이 필요하다. 그 대안의 하나로 공공콘텐츠에의 CCL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CCL을 적용한 공공콘텐츠를 개방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공공콘텐츠를 이용한 제 2차, 3차 콘텐츠가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된 콘텐츠들이 또 다른 콘텐츠 제작에 활용된다면 콘텐츠 부족과 저작물 침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저작권자와의 상생을 위한 오픈비즈니스 모델의 고려이다. 최근 CCL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은 CCL이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자가 배타적으로 콘텐츠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공유를 선택함으로써 콘텐츠가 더 많이 활용되고 나아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멘도, 로프트워크 등의 사례는 콘텐츠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해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고 활용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보상체계의 도입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UCC관련 저작권분쟁의 많은 부분은 저작권 권리가 자신의 저작물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공유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원 저작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UCC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그리고 UCC 비즈니스 사업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이용자가 원 저작권자와 일대일로 계약을 하는 것은 거래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개별 이용자들은 권리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일일이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천 콘텐츠를 이용하고 대신 권리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저작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의 법률 개정보다는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인다.

미디어 융합, 인터넷의 진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저작권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추구하여 문화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권리자의 보호만큼이나 이용자의 보호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저작권제도는 콘텐츠의 창작과 전달, 향유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 및 활발한 유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저작권제도는 저작권자, OSP,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저작권 제도에 대한 고민이 바람직한 저작권 환경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IT 기술의 발전 초기, 저작권법의 과제는 저작권의 위기로 함축될 수 있다. PC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원본과 동질의 복제물을 생성 할 수 있게 되었고, 복제된 콘텐츠는 삽시간에 ‘거대한 복사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된다. 출판사나 음반제작자들의 도움 없이도 쉽고 간편하게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통신 매체를 통해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IT기술의 발전으로 콘텐츠의 복제 및 유통이 쉬워지면서 불법복제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불법복제와 유통을 단속하고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 제도의 주목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공유와 개방으로 대표되는 웹2.0시대가 도래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강화에 덧붙여 이용자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청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웹2.0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콘텐츠의 창작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더 많은 개방과 공유로 원천 콘텐츠의 활용이 높아짐은 물론 제 2, 제 3의 새로운 콘텐츠 창출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발생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고품질의 콘텐츠가 탄생되는 시너지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저작물의 불법적인 사용은 창작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위법성의 인식이 전혀 없는 일상적 활용에 대해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적법한 이용까지 위축되어 인터넷의 의미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더불어 콘텐츠의 활발한 유통을 가능케하는 저작권 시스템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다.

인터넷의 진화와 더불어 현재 저작권에 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변화는 디지털컨버전스라 할 수 있다. 과거 방송과 통신은 상이한 기반기술을 채용함에 따라 ‘공중과 무선송신’과 ‘유선 정보 송수신’으로 엄격한 구분이 가능하였다. 방송은 단방향·무지향성인 무선기술을 채택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스 미디어의 특성을 갖는 반

면 통신은 유선기술을 채택하여 좁은 대역에서 개인 간 의사소통기구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컨버전스의 도래와 함께 방송과 통신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져 각각 고유한 콘텐츠를 제공하던 방송과 통신서비스는 이제 기술적인 구별이 무의미할 정도로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영상 위주의 매스커뮤니케이션수단이라는 방송의 특성도 점차 흐려져, 협송(narrowcasting), 개인형 방송(personal casting) 그리고 개별 수용자와 일대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송(pointcasting)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김대호 외, 2003), 통신망을 활용한 대중 매체 플랫폼도 등장하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공중 공용망을 방송 매체의 하부구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¹⁾ 새로운 방송 매체들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들이 등장,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최진원, 2009).

이렇게 방송과 통신 시장환경은 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 변화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은 여전히 방송과 통신, 양자의 구분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송신자가 개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방송은 다수의 이용을 가져오므로 저작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반면,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인 통신은 원칙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사적인 이용과 공중에 대한 전달, 콘텐츠 전달을 위한 투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등에 있어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 현 저작권법의 체계는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저작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 활용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매개자가 등장하였고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는 획기적으로 확장되었다. 복제·전달 기술은 과거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만큼의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주었고 높아진 매체 접근성과 쌍방향적 정보 유통은 저마다의 창작성이 발현된 집단 지성을 구축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 혁명에 저작권법이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

1) 방통융합의 현상 중 망의 융합(convergence of network)에 해당한다. 그 외에 '서비스의 융합(convergence of service provision)', '기업의 융합(convergence of corporate organizations)' 등이 있다.

소리가 높다. 소리바다, 냅스터, 그록스터 등의 P2P 음원 교환 서비스 제공자와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했던 벅스 뮤직 등은 저작권법의 장벽에 부딪혀 날개가 꺾였다. 유튜브나 구글, 네이버나 다음 등의 OSP는 수많은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다. 지상파 재전송 등 방송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서도 기존 권리자들은 법적 분쟁의 근거로 저작권법을 활용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떠오른 일반 공중은 권리자의 수차례에 걸친 ‘형사 고발 사태’를 겪으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일방적으로 권리자에게만 유리하여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향유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적절한 저작권법적 균형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추구하여 문화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권리자의 보호만큼이나 이용자의 보호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저작권 제도는 콘텐츠의 창작과 전달, 향유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 및 활발한 유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방통융합 시대, 저작물의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이해 관계자간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변화된 환경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바람직한 저작권 제도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인터넷과 디지털컨버전스라는 큰 흐름속에, 세계적으로 권리자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저작권법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여 권리자에게 부여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0여 년 동안 전송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의 권리가 신설되었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금지하였으며, 최근 OSP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거나 계정 정지 명령을 도입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위한 수차례의 개정이 있어 왔다.

일련의 조치로 저작권법의 형해화(形骸化)를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권리자의 과보호가 우려되면서 이용자의 보호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사자 간의 저작권적 균형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은 영원한 저작권법의 테마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저작권 제도에 영향을 미친 큰 변화로 방통통신융합과 인터넷의 진화를 고려하여 이들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해외 주요국들

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저작권자와 이용자, 양자의 권리를 조율하고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저작권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2장에서 저작권법의 목적과 개요를 개괄하고 IT혁명이 일어난 이후의 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의 역사와 동향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불법복제 및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막기 위해 강구되어 온 기술적 보호조치를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실제로 새로운 미디어들이 기존 저작권법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살펴보면서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5장에서는 저작권법 적용 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권리 처리의 거래 비용으로 인한 합법적 이용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OSP를 포함한 침해 책임의 배분을 검토하였다. 6장에서는 4장과 5장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7장은 결론으로 할애하였다.

II. 저작권의 이해

1. 저작권의 기본 개념 및 구성

1)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종종 지적 창조자의 권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관심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지적 창조물의 과실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오승중, 2007).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자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작의 결과가 아니라, 선인들이 쌓아 놓은 문화유산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점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물의 이용을 오로지 저작자의 자의에만 맡겨 놓는 것은 불합리하고, 저작권의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공평하면서도 합리적이다.

저작권법 역시 창작자의 이익과 이용자인 공중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려 하는바,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도 법의 목적이 ‘문화 발전’에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참고〉 영미법과 대륙법, 시각의 차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저작권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다. 프랑스와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로 파악하면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발현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비해,²⁾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을 ‘복제를 금지하는 권리’(copyright)로 파악하여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copyright 법계가 저작권을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는 권리’라는 시각을 담고 있었다

2) ‘저작인격권’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는 점에서 창작자 개인의 자연권적 권리 시각에서 저작권을 파악한 프랑스, 독일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1909년에 미국 의회가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발표한 보고서(HR Rep. No. 2222: 방석호, 1998 재인용)는 저작권이 저작자의 이익이 아니라 창작을 장려함으로써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

저작권법 제1조에는 저작권법의 목적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할 것이 언급되어 있다. 제11조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창작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로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는 각국의 경제적·사회적인 여건과 문화정책의 차이로 인하여 실정법상 반드시 일치되어 있지 않고, 학문적으로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저작권이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로는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로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에다가 저작인접권과 출판권 등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오승중, 2007).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이라는 제목으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0조), 두 가지 권리를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로마협약이 대표적인 저작인접권 보호 조약이다. 1928년 베른 협약 로마 개정 회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연자(實演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1948년의 베른 협약 브뤼셀 개정 회의에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하나의 문서에 의해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인 로마 협약이 1961년에 탄생되게 되었다.

(1)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지분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기간의 만료

나 저작권재산권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재산권을 구성하는 지분권들을 ‘유형적 권리’(copy related rights), ‘무형적 권리’(non copy related rights), ‘변형권’(transformation rights)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유형적 권리는 유형물을 통한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지칭하며, 이에 해당하는 권리로서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등이 있다. 무형적 권리는 무형적 방법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포함) 등이 있다. 변형권은 번역이나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유형적 이용과 무형적 이용의 구분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유형적 방법에 의한 이용은 유형물로 남은 저작물을 다시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적 이용기회가 쉽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하동철, 2006).

(2)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저작권재산권과 구별되며,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인 입법은 각 국가마다 상이하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베른협약에서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인격권이라 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법인 등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 그 단체가 해산)하면 그와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3)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보호도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3자의 권리를 총칭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neighbouring right(specific right neighbouring on copyright)’의 우리말 번역이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면, 저작인접권자는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비록 저작물의 창작에 처음부터 관여하지는 않지만 실연과 음반,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을 전파하는 것 역시 대중문화 사회에 있어서 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들을 보호해주자

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법제화된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저작권에 대한 시각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다소 상이하다. 영미법계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문화창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거나 문화창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는 저작자의 인격의 투영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물이 되기 위한 창작성의 수준을 높게 설정하게 되고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게 된다. 하지만 대륙법계의 입장에서 문화의 발전과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고 본래 의미의 저작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 연출하여 전달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다.³⁾

〈표 1〉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저작권	인격권	공표권	(제11조):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제12조):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제13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갖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재산권	복제권	(제16조):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공연권	(제17조):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공중송신권	(제18조): 그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
		전시권	(제19조):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권	(제20조):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대여권	(제21조):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제22조):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3) 저작물의 창작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작물을 전파하는 역할은 현대 대중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1961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제1조에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 인접권	실연자	성명표시권	(제66조):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제67조):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복제권	(제69조):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
		배포권	(제70조):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대여권	(제71조):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공연권	(제72조):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
		방송권	(제73조):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
		전송권	(제74조):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
		보상청구권	(제75조):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의 2):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 제작자	복제권	(제78조):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
		배포권	(제79조):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
		대여권	(제80조):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전송권	(제81조):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
		보상청구권	(제82조):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방송 사업자	복제권	(제84조):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
		동시중계방송권	(제85조):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

3) 공정한 이용의 도모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사전 허락을 받도록 요구하게 되면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더구나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서 선인들이 쌓아 놓은 문화유산의 바탕 위에서 어느 정도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된 저작물이 원활히 유통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새로운 창작도 가능해진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도 문화발전을 위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제11조 내지 제22조에서 저작권보호규정을 두는 한편 제23조에서 제38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을 두고, 보호기간의 관한 규정을 두며(제39조 내지 제44조), 법정허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50조 내지 제52조).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여 저작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의 균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오승중, 2007).

4) 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 함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상으로 또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유이용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이형하, 1992).

- ① 최광의(最廣義): 타인의 저작물을 그것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조약상 보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저작물, 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등의 자유이용을 포함한다.
- ② 광의(廣義): 저작권이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법정허락제도에 의한 저작물이용(저작권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이 포함된다.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유이용에 대한 정의는 자유이용을 광의로 파악한 것이다.
- ③ 협의(狹義): 광의의 자유이용 중 법정허락제도에 의한 저작물 이용을 제외한 것,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서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7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

상 자유이용이라고 하면 대개 이러한 협의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규정하고 제50조 내지 제52조에서 법정허락제도에 의한 저작물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 내지 제37조에서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2〉 저작권의 자유이용

구분	성격	근거 법률	내 용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률 등	제1호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정부 고시·공고 등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등	제3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작성한 편집·번역물	제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 보도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법정 허락	권리자 불명 저작물	제50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공표 저작물의 방송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방송할 수 있다.

구분	성격	근거 법률	내 용
법정 허락	판매용 음반	제52조	판매된지 3년이 경과한 판매용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저작 재산권 제한	재판절차상 복제	제23조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정치적 연설 등	제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이용할 수 있다.
	학교 교육목적	제25조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시사보도 목적	제26조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기사 및 논설	제27조	신문 및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공표 저작물 인용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비영리 공연·방송	제29조	① 비영리 목적으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②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구분	성격	근거 법률	내 용
저작 재산권 제한	사적 이용 복제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서관 등	제31조	① 다음의 경우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험문제	제32조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등	제33조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복제	제34조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미술저작물 등	제35조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복제도 할 수 있다.
	번역 등	제36조	① 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저작권법의 변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하여 사용하다가 1957년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이후 1986년과 2006년 두 차례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저작권법은 보다 상세한 조문으로 구체화되어 왔으며, 국제조약 가입에 따라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였고, 최근에는 IT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1) 저작물의 법적 보호의 시작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한국에서의 발명·의장·상표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일미(日美)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이 1908년 8월 12일 공포되었고, 같은 달 13일 한국 정부가 내각 고시 제4호로 반포함으로써 같은 달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고시 제1조와 제2조에서 한국의 저작권에 관하여는 1899년에 제정된 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시 일본 저작권법이 우리나라에 의용(依用)되었다(박성호, 2006).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일본 저작권법을 시행하다가 1957년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이 공포되었다.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선언하고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총 5장 75조로 구성된 당시 법률은 조문의 구체화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았고, 특히 외국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2) 국제질서에서의 편입

1986년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과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음반협약)에 가입하면서 사실상 제정에 가까운 전면적인 개정을 하였다. 저작권에 관련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저작물의 예시를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고, 저작재산권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정하였다. 법정허락제도를 보완하고 업무상 저작물 규정과 영상

저작물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으며 가입한 국제 조약의 준수를 위해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규정을 보완하였다.

그 후 한미지적소유권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4년 1월 7일 저작권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음반의 대여권 제도를 도입하였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의 연장 및 저작권침해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행정규제의 완화차원에서 저작권 위탁관리업 중 일부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WTO협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분야의 국제규범인 베른협약 가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작권 등의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하는 등 국·내외의 저작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15호로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5년 개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 조약발효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소급보호를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기존에 합법적으로 활용하던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 새롭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소위 ‘회복저작물’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3) IT 기술과 저작권법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저작권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범용 기기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원본과 동일한 품질의 복제물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비용 없이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저작권자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고 저작권법은 형해화(形骸化)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의 불법침해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도 2000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 중 새로운 지분권으로 전송권을 추가하였고,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후 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에는 사후적 구제수단의 한계를 보완해주기 위해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했으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규정을 도입하여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

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저작권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일부가 개정되었지만 기존 저작권법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결국 전면적으로 저작권법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실연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 등 각종 조약과 조화시킬 필요도 제기되었기에 전부 개정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6년 드디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방송과 전송 외에 공중송신권과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새로이 신설되었고 WPPT 등 각종 조약의 가입을 위해서 실연자의 인격권을 신설하고,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대여권을 강화하였으며, 실연자에 대하여 생실연권을 부여하고, 음반제작자의 보호시점을 조정하였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도 일부 고려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법 제104조 제1항)나 친고죄의 예외가 마련되는 등 전반적으로 권리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둔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들어서는 3월과 4월, 두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3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위한 복제권 인정,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고,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하였다. 4월 개정법안 소위 ‘미디어법’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바,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삼진 아웃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Ⅲ. 저작권 침해 및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 현황

1.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유통 현황⁴⁾

국내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단속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수치를 활용하는 방법과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복제물⁵⁾의 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방법을 사용한 현황은 저작권 보호센터가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 복제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후자의 방법을 사용한 불법 유통 현황은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하여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공급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오프라인의 경우 노점상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한 결과와는 별개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불법복제물 단속량은 단속 인력의 수 및 저작권 보호 정책의 변화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작권보호센터의 2008년 1년간 온·오프라인 단속량은 약 2,900만개(점)로, 2006년 대비 약 150%가 증가하였으나, 소비자 조사 결과 추정된 2008년 1년간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34억 4,974만개(점)로 2006년 대비 약 9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유통 현황을 소비자 조사를 통한 결과와 모니터링 단속을 통한 결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른 불법복제물 규모

2009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건수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약 28.8억 만개, 오프라인에서 약 5.7억 만개로 총 34억 5천만 개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하면 1인 당 한 달 평균 7.41개의 불법복제물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온라인의 경우 약 2,537억 원, 오프라인의 경우 약 7,123

4) 200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참고

5) 그 제작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제작 과정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로 정의(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억 원 규모의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총 9,66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당 한 달 평균 약 2,074원을 불법복제물 소비에 지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비율로 보면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온라인 유통비율이 83.4%로 오프라인 유통 비율인 16.6%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반면,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시장은 26.26%, 오프라인 시장은 73.74%로 나타나 오프라인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의 경우 복제비용 발생이 거의 없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보다 CD, DVD 등의 매개체에 복제를 하는 생산비용과 유통거래 비용, 이윤 등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1]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

기준	구분	건수 기준		금액 기준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기준	온라인	28억7,709만2,344 개	83.40 %	34억4,974만7,031 개	
	오프라인	5억7,265만4,687 개	16.60 %		
		합계		합계	
				1인당 한 달 평균 불법복제물 7.41개를 불법 이용 불법복제물 이용자 1인당 한 달 평균 12.06개를 불법 이용	
금액 기준	온라인	2,536억5,456만4,361 원	26.26 %	9,659억7,530만5,951 원	
	오프라인	7,123억2,074만1,590 원	73.74 %		
		합계		합계	
				1인당 한 달 평균 불법복제물 소비에 약 2,074원 지출 불법복제물 이용자 1인당 한 달 평균 불법복제물 소비에 약 3,378원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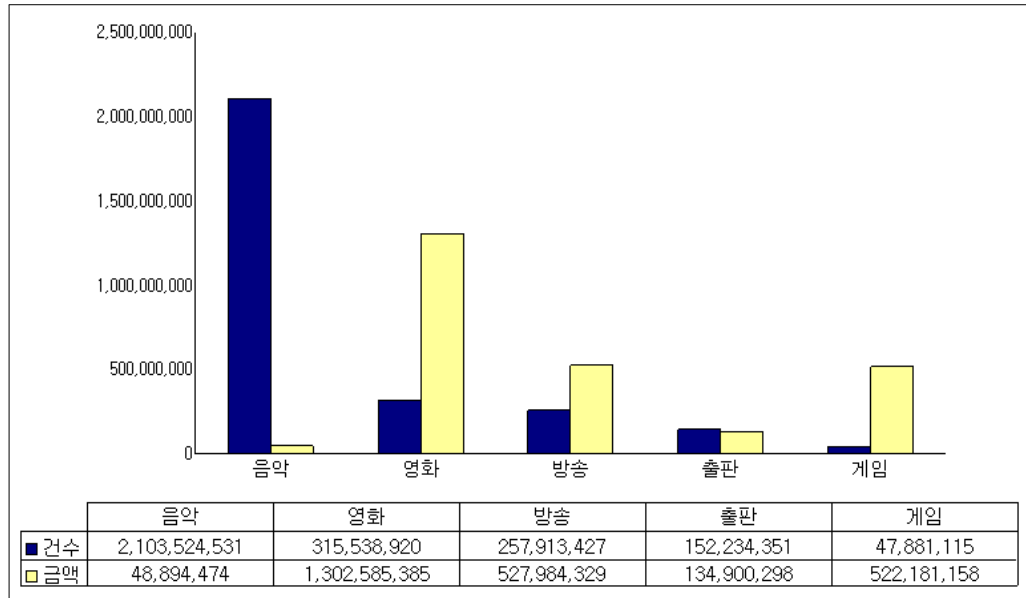
자료: 저작권보호센터(2009. 10a)

(1) 온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정품 및 불법복제물 구매자 또는 비공식적으로 콘텐츠를 입수한 자가 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 업로드함으로써 발생한다. 한번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은 동시 다발적으로 P2P, 웹하드 등 타 온라인 사이트로 유포되는 형태이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과정 상의 특징은 최초 업로더 중 일부만이 영리 목적이며 그 이후의 업로더들은 영리 목적이거나 보다는 사이트 내에서의 명성을 위해 또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림 2] 온라인에서의 불법 복제물 시장 규모

(단위: 건, 100원)



자료: 저작권보호센터(2009. 10a)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콘텐츠별 현황을 보면, 음악물의 유통량이 21억 352만곡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화물 3억 1,553만편, 방송물 2억 5,791만편, 출판물 1억 5,223만편, 게임물 4,788만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통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영화물이 1,302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방송물 527억원, 게임물 522억원, 출판물 134억원, 음악물 48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 경로는 웹하드가 12.2억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P2P가 11.9억개, 포털이 4.6억개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P2P가 1,757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웹하드 754억 원, 포털 25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 P2P는 주로 음악물과 출판물, 게임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웹하드는 영화물과 방송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단위: 건, 원)

		합계	P2P	포털	웹하드
전체	건수	2,877,092,343	1,190,387,902	463,881,987	1,222,822,454
	금액	253,654,564,362	175,748,209,525	2,503,895,593*	75,402,459,244
음악	건수	2,103,524,531	867,583,816	370,943,902	864,996,813
	금액	4,889,447,438	3,643,852,027	**	1,245,595,41
영화	건수	315,538,920	124,542,639	36,918,690	154,077,591
	금액	130,258,538,499	91,538,839,886	**	38,719,698,613
방송	건수	257,913,426	100,214,031	30,602,090	127,097,305
	금액	52,798,432,853	36,828,656,501	**	15,969,776,352
출판 (만화)	건수	76,823,212	40,281,794	9,140,744	27,400,674
	금액	519,124,528	308,961,357	**	210,163,171
게임	건수	47,881,115	22,981,211	5,227,902	19,672,002
	금액	52,218,115,785	39,324,298,476	**	12,893,817,309

주: * 출판(학술서적)의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 포털의 불법복제물 이용시 별도의 금액 지불 없음

자료: 저작권보호센터(2009. 10a)

① 음악 불법복제 현황

음악의 불법복제시장 규모를 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21억 352만 4,531곡이 불법으로 유통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9억에 해당하는 규모가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오프라인 통틀어 볼 때 국민 1인당 한달 평균 약 5.49곡을 이용하고 515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음악물의 유통 경로를 보면, 동시 접속자가 보유한 최신 음악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2P(Peer-to-Peer)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건수 기준 41.2%, 금액 기준 74.5%) 최근에는 음악 한곡이 아닌 앨범 전체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대용량 파일의 업로드·다운로드가 가능한 웹하드(건수 기준 41.1%, 금액 기준 25.5%)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의 경우 다른 온라인 유통경로와는 달리 불법복제물 이용이 상당 부분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포털을 이용하는 건수가 약 3.7억 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액수 기준 불법시장 규모는 별도로 잡히지 않고 있다.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BGM 등 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자와

의 계약 하에 제공되고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로 본 불법시장 규모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주로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Blog),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영화 불법복제 현황

영화의 불법복제시장 규모를 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3억 1,554만 편이 유통되고 금액 기준으로는 약 1,303억 원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통틀어서 국민 1인당 한 달 평균 0.75편, 약 445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를 보면, 영화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량이 크게 때문에 다운로드 및 업로드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웹하드가 주로 활용(건수 기준 48.8%, 금액 기준 29.7%)되어 약 1.5억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P2P(건수 기준 29.7%, 금액 기준 70.3%)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P2P 상에서 영화복제물의 유통단가(735원)가 웹하드의 유통단가(251.3) 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화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간 제휴를 통해 합법적인 유통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방식의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물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 이용 시마다 과금이 되고 있으며,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공된 틀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합법저작물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하에 웹상의 별도의 공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③ 방송 불법복제 현황

방송의 불법복제시장 규모를 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2억 5,791만 편이 불법으로 유통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28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가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통틀어서 국민 1인 당 한 달 평균 약 5.49곡을 이용하고 515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를 보면, 방송물의 경우에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운로드 및 업로드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웹하드(건수기준 49.3%, 액수기준 30.2%)가 1.3억 건으로 주요 경로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액 기준에서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P2P의 유통단가가 높아 6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방송물을 제작한 제작사의 홈페이지나 자회사의 홈페이지에서만 VOD 서비스나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웹하드 사이트나 P2P사이트 등과 콘텐츠 제휴 관계를 맺어 일부 방송물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지는 추세이다.

④ 출판 불법복제 현황

출판물의 불법복제시장 규모를 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1억 5,223만 편이 불법으로 유통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35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가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르별로는 만화가 7,682만 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설/수필이 그 다음으로 높은 6,187만편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학술서적이 약 128억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만화가 5억 원, 소설/수필이 1.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를 보면, 최근 들어 비교적 용량이 적은 텍스트 파일 형식에서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JPEG 형식의 파일이 유통됨에 따라 P2P가 주된 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 장르의 경우 P2P를 통한 유통량이 4천만 건으로 금액기준으로는 3억원 규모의 불법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각 52.4%, 5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출판물의 합법적인 서비스는 전자책(e-book)과 오디오북 시장, 일부 온라인 만화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인터넷 상의 출판물 다운로드의 대부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복제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게임 불법복제 현황

게임의 불법복제시장 규모를 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4,788만편이 불법으로 유통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22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가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통틀어서 국민 1인 당 한 달 평균 약 0.13편을 이용하고 매달 2,516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를 보면, 최신 게임을 단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2P가 주로 활용(건수 기준 48.0%, 금액 기준 75.3%)되고 있으며, 최근 게임의

대용량화로 인해 이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하드(건수 기준 41.1%, 금액 기준 24.7%)를 통한 이용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유 사이트에서는 PC 패키지게임을 비롯하여 플레이스테이션, XBOX, 닌텐도 DS, PSP 기반의 콘솔게임과 핸드폰, PDA, PM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등이 유통되고 있으며,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을 추출하여 압축한 형태나 DVD 또는 CD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유통되고 있다. 국내외 게임은 물론이고, 이미 출시된 게임과 출시 예정인 게임들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PC게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게임물 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2) 불법복제물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불법복제물 시장과 불법복제물로 인하여 합법 시장이 침해된 규모는 차이가 있다. 만일 불법복제물 시장이 그대로 합법시장을 대체한다면 불법복제물 시장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총액과 그 규모가 일치하겠지만, 실제로 합법저작물이 대부분 유료인 관계로 구매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보호센터는 합법시장 침해액을 “2008년 한 해 동안 제작, 구입 또는 불법복제물로 인하여 기존의 합법저작물에 대해 구매 의사(intent)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침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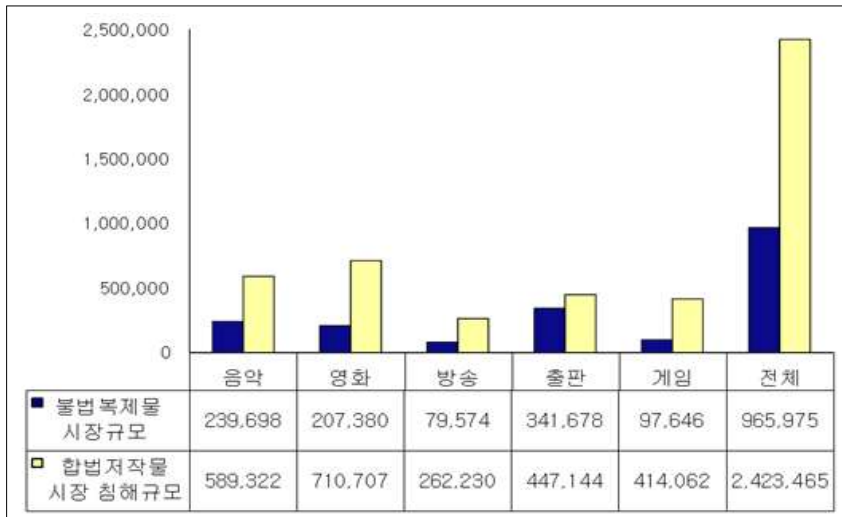
조사 결과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가 9,660억 원이었고 이러한 불법복제물 시장이 존재함으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총 2조 4,235억 원으로 나타났다. 즉,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금액)는 불법복제물 시장의 약 2배 이상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불법복제물 시장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총액보다는 작음을 알 수 있다.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보면, 영화가 7,107억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이 5,893억 원, 출판이 4,471억 원, 게임이 4,141억 원, 방송이 2,622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로 불법복제 음악물이 음악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하는 비율(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건수기준)을 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은 이용한 100곡중 10.05

곡이 온라인 합법저작물(디지털 음원)을 침해하고 있으며, 100개 앨범 중 14.26개 앨범이 오프라인 합법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단위: 백만원)



자료: 저작권보호센터(2009. 10a)

불법복제 영화물이 영화 분야의 합법저작물을 침해하는 비율(건수기준)을 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을 이용한 100편 중 5.87편은 정식 다운로드, 2.53편은 VOD 서비스 이용, 14.64편은 극장 관람, 1.06 편은 비디오 구매, 2.94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은 구입한 100편 중 13.99편은 정식 다운로드, 7.27편은 VOD 서비스 이용, 23.68편은 극장 관람, 3.06편은 비디오 구매, 9.15 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방송물이 방송 분야의 합법저작물을 침해하는 비율(건수 기준)을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은 이용한 100편 중 8.40편은 정식 다운로드, 3.83편은 VOD 서비스 이용, 0.75편은 비디오 구매, 3.77 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은 구입한 100편 중 20.21편은 정식 다운로드, 9.34편은 VOD 서비스 이용, 4.59편은 비디오 구매, 13.69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불법복제 게임물의 경우 게임 분야의 합법저작물을 침해하는 비율(건수 기준)은 온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은 이용한 100편 중 14.57편은 정식 다운로드를, 14.05편은 정식 타이틀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은 구입한

100편 중 19.59편은 정식 다운로드를 16.78편은 정식 타이틀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불법복제물 시장의 변화

저작권보호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른 2006년과 2008년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를 금액 기준으로 비교⁶⁾해 보면, 2006년에는 43,955 억 원인 반면 2008년에는 9,660 억 원으로 약 7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2006년은 400억 개에서 2008년에는 34억 개로 약 9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2008년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가 감소한 이유를 저작권보호센터는 크게 시기적 요인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즉, 시기적으로 2006년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서비스의 시작 단계로 이용자가 급증하는 시기였으며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사이트 상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콘텐츠가 불법복제물로 볼 수 있었다. 반면 2008년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계도가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합법저작물을 유통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각종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소송과 고발이 급증하여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던 시기라 할 수 있다.

2006년과 2008년의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를 비교해 보면, 불법복제물 시장이 급격히 감소한 것과 달리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6년에 약 2조 191억 원에서 2008년에는 2조 4,234억 원으로 2008년에 추가로 조사된 게임물을 제외할 경우 침해규모는 2조 94억 원으로 근소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 규모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감소된 불법 수요가 합법 수요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합법 서비스가 가격 등의 면에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겼거나 이용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에 연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6)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와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는 조사방법 및 대상, 모집단, 표본수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치를 직접적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불법복제물 규모

실태 조사와는 별도로 저작권보호센터는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이에 따르면 2008년 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 결과, 약 10만건, 2,800만점의 단속 결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의 7만 8천건, 2,347만점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는 28.8%, 점수 기준으로는 125.8%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 2008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성과

	유통 경로	2007		2008		증가율	
		건	점	건	점	건	점
음악	P2P	985	1,763,426	1,236	1,863,445	25.5%	5.7%
	웹하드	4,420	5,374,930	4,870	7,648,271	10.2%	42.3%
	포털	21,538	1,342,010	18,274	3,362,546	-15.2%	150.6%
	소계	26,943	8,480,366	24,380	12,874,262	-9.5%	51.8%
영상	P2P	3,672	125,062	4,976	502,451	35.5%	301.8%
	웹하드	44,399	610,022	61,622	2,591,736	38.8%	324.9%
	포털	2,114	17,379	465	7,803	-78.0%	-55.1%
	소계	50,185	752,463	67,063	3,101,990	33.6%	312.2%
출판	P2P	108	721,440	652	1,077,051	503.7%	49.3%
	웹하드	305	2,511,588	5,877	10,951,960	1,826.9%	336.1%
	포털	41	194	520	127,331	1,168.3%	65,534.5%
	소계	454,454	3,233,222	7,049	12,156,342	-98.4%	276.0%
게임	P2P	-	-	65	1,516	-	-
	웹하드	-	-	1,353	14,941	-	-
	포털	-	-	43	573	-	-
	소계	-	-	1,461	17,030	-	-
전체	P2P	4,765	2,609,928	6,929	3,444,463	45.4%	32.0%
	웹하드	49,124	8,496,540	73,722	21,206,908	50.1%	149.6%
	포털	23,693	1,359,583	19,302	3,498,253	-18.5%	157.3%
	소계	77,582	12,466,051	99,953	28,149,624	28.8%	125.8%

주: 건은 단속을 통해 적발한 해당 아이디(계정) 수를 의미하며, 점은 적발한 불법 콘텐츠 수를 의미

자료: 저작권보호센터(2009. 10b)

유통경로별로 보면, 웹하드가 7.3만건, 2,121만점으로 가장 많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포털이 1.9만건, 350만점, P2P가 약7천건, 344만점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포털보다는 P2P의 단속 결과(점 기준)가 높았던 반면, 2008년에는 포털의 단속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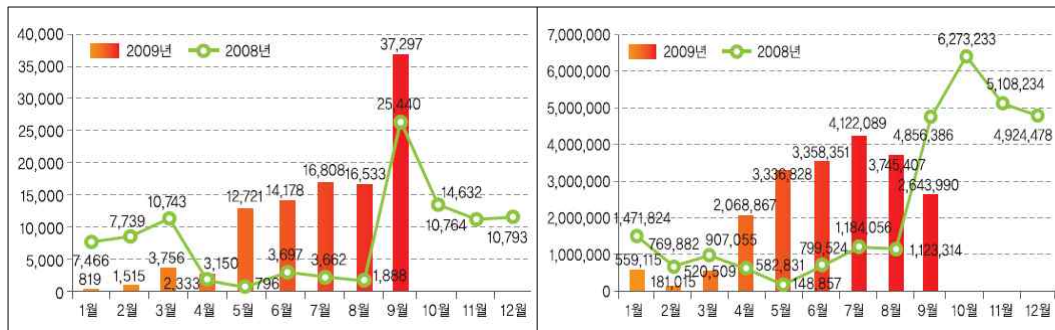
콘텐츠 분야별로 보면, 음악물은 약 1,287만점(24,380건)으로 전년대비 51.8% 단속에 걸린 점수가 증가했으며, 영상물은 약 310만점(67,063건)으로 312% 증가했다. 2008년 10월부터 시작된 게임물 단속은 약 1.7만건(1,461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106,777건, 20,536,171점으로 2008년 동기 건수 대비 43,013건(67%), 점수 대비 8,692,492점(7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그림 4]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적(월별)

- 건 수 -

- 점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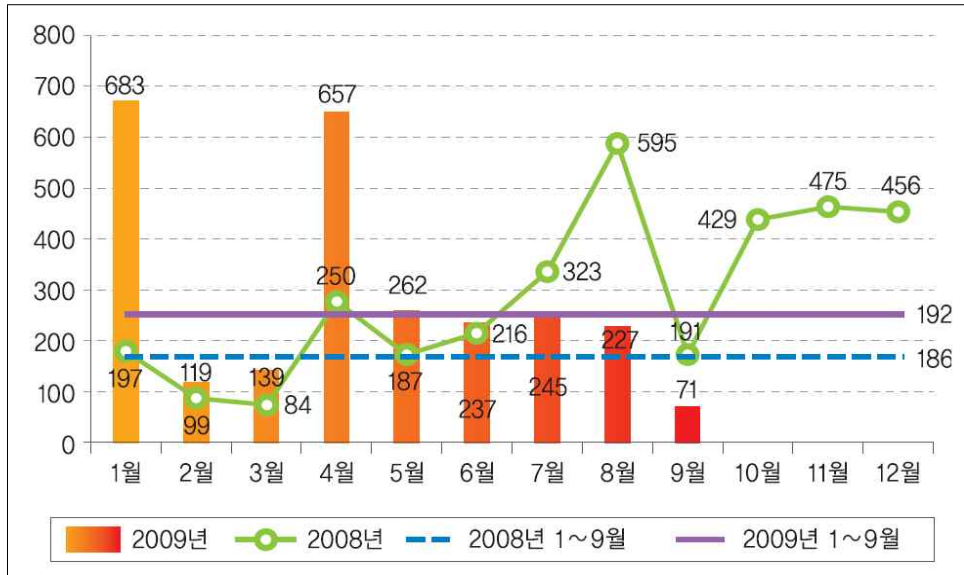


자료: 저작권보호센터(2009. 10b)

또한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건당평균모니터링 실적은 192점으로 2008년 평균대비 6점(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건당 평균 모니터링 실적 증가는 온라인상에서 다량의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5] 참조).

[그림 5] 온라인 콘텐츠의 건당 모니터링 실적 추이

(단위: 점)



자료: 저작권보호센터(2009. 10b)

이와 같이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이루어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 외에 2008년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무 법인들에 의한 소송이 급증하면서 관련 침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발생건수가 2006년 이래 해마다 증가하여 2008년에는 약 6만 8천건에 달하는 침해 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4배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 위반 미성년 사범은 2007년 586명에서 2008년 4,655명으로 7.9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저작권법 위반 및 검거 관련 현황

내용	2006년	2007년	2008년	최근 3년간 합계
발생건수	13,144	20,333	68,677	102,124
검거건수	9,026	13,627	47,885	70,538
전년대비 증가율 (발생건수 기준)	-	1.6배	3.4배	-
미성년 위반사범(명)	157	568	4,655	5,398
전년대비증가율	-	3.7배	7.9배	-

자료: 경찰청, 저작권보호센터(2009. 10a) 재인용

이러한 개인 위반 건수 외에 정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의 범위를 웹하드 및 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과태료 처분 현황

(단위: 천원)

부과일	업체수	금액	처분사유
2008년 1월 3일	31	270,700	「저작권법」 제104조 위반
2008년 9월 4일	27	258,700	「저작권법」 제104조 위반
2008년 12월 30일	22	144,200	「저작권법」 제104조 위반
2009년 4월 16일	21	154,300	「저작권법」 제104조 위반
합계	101	827,9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09. 8. 3), 국회입법조사처(2009. 8) 재인용

2. 방송통신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현황

인터넷에서 통신콘텐츠의 폭발적 증가와 방송콘텐츠의 디지털화라는 최근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콘텐츠는 무한히 반복하여 복제되고 전송됨으로써 이용자들의 삶속에서 풍부한 지식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품질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무한히 반복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디지털화의 이점은 누구든지 쉽게 풍부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작자의 권리 및 노력, 그리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대한 고민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창작자 및 지적재산권자들의 권익 침해는 장기적으로는 콘텐츠의 질적 저하뿐 아니라 콘텐츠의 생산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자 조사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불법시장 규모는 9,660억에 달하고, 온라인이 83.4%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불법복제로 인한 침해규모가 결코 작지 않으며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불법복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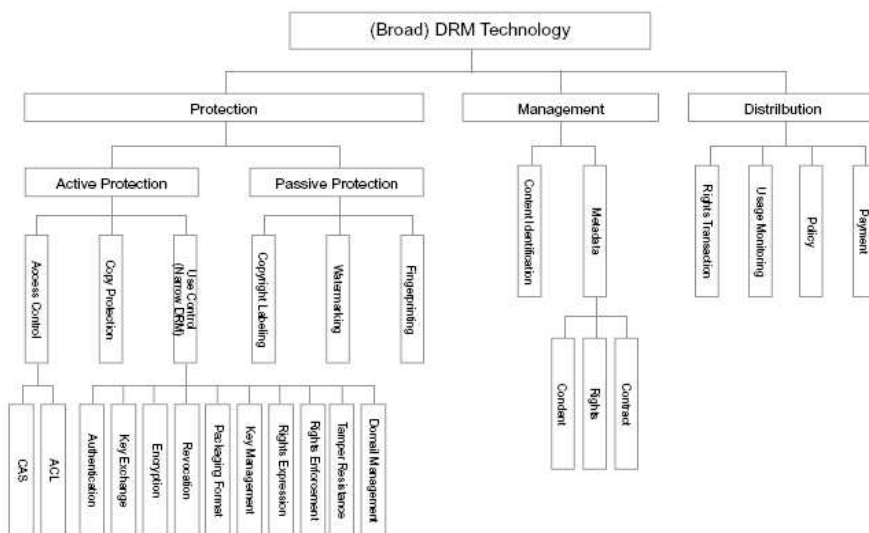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의 발달과 함께 불법 복제 및 지적재산권 침해 위협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단순히 디지털 복제를 방지하고 감시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의 결합을 통한 유통 전반에 관련된 포괄적인 기술로의 진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크게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은 음악 및 영상콘텐츠의 보안 및 유통모델을 위해 개발된 DRM 기술과 방송콘텐츠의 수신제한 기능을 중심으로 발달된 CAS 기술, 그리고 광의의 DRM 기술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정보 및 사용내역 정보를 삽입하는 워터마킹 및 핑거프린팅 기술이 가장 대표적이라 하겠다. 이때 DRM 기술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기 CAS 및 워터마킹 등 기술이 하위에 포함되기도 한다.

1) DRM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에서 이용까지 유통 전과정에 걸쳐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부여된 권한 정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을 제어 및 통제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DRM은 세부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① 보호기술(Protection Technology)과 디지털 콘텐츠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용되는 ② 관리 기술(Management Technology),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위해 사용되는 ③ 유통 기술(Distribution Technology)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TTA, 2008. 5).

[그림 6] DRM의 기술적 구조도



자료: TTA(2006a)

[그림 6]은 이러한 DRM의 기술적인 구조를 잘 설명해준다. 광의의 의미에서의 DRM은 특정 요소 기술을 지칭하기 보다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기술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황성운, 2007). 즉, 위의 그림에서 ① 보호 기술(Protection Technology) → ② 관리 기술(Management Technology) → ③ 유통 기술(Distribution Technology)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광의의 DRM은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의 생산, 분배, 거래 규칙, 이용 규칙 과금, 거래 내역의 관리 및 보고, 정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디지털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한 사용되는 기술 및 서비스를 통칭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TTA, 2006a).

반면 협의의 DRM은 불법 복제 및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부터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해주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디지털콘텐츠의 암호화를 수행하는 패키징 기술과 허가된 사용자만이 허가된 권한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관리 기술 그리고 이렇게 부여된 권한이 지속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에서 콘텐츠의 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권한 통제기술 등이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협의의 DRM은 상기 그림의 기술적 구조도에서 보호 기술(Protection Technology) 중 적극적인 보호 기술의 하위단인 사용 제어(User Control) 기술을 의미한다(TTA, 2006a).

그림에서 보듯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기술(Protection Technology)은 다시 암호화 기술 등 적극적인 보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과 소극적인 보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인 보호 기술(Active Protection Technology)을 이용하는 방식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디지털콘텐츠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시키는 기술로, 기술적인 특성에 따라 ① 사용제어(Use Control) 방식과 ② 접근 제어(Access Control) 방식, 그리고 ③ 복제 방지(Copy Protection) 방식으로 구분된다(TTA, 2006a).

사용제어 방식은 비록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허가된 사용 권한에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디지털 콘텐츠 유통 현장에서 이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접근제어 방식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이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허락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방송 콘텐츠의 유료 채널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CAS 기술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제방지 방식은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 매체나 또는 단말기에 종속된 암

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함으로써, 비록 다른 매체나 단말기로 콘텐츠가 복제되어도 복제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복제방지 기술은 단독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CAS 또는 DRM 기술의 디지털 출력단 보호를 위해 최근 많이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소극적인 보호 기술(Passive Protection Technology)을 사용하는 방식은 일종의 스피드 범프(Speed bump)와 같은 역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 하여금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자각심을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이다(TTA, 2006a).

이러한 소극적인 보호 기술은 기술적인 특성에 따라서 ① 디지털 워터마킹(Watermarking), ② 디지털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③ Copyright Labeling 으로 구분된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중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등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특정의 데이터를 사람의 육안이나 청각으로는 구별할 수 없게 삽입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김동균, 2008).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은 콘텐츠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확인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디지털 워터마킹과 비슷한 기술이지만 저작권자나 판매자의 정보가 아닌 사용자의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내역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하게 될 콘텐츠의 불법 복제자를 추적하는데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ETRI, 2004; KISA, 2009 재인용).

마지막으로 Copyright Labeling은 'Creative Commons License(CCL)'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술들은 모두 소비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적인 검열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자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중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인 방송 콘텐츠를 중심으로 수신제한 기능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CAS 기술과 워터마크, 핑거프린팅, 그리고 CC(Creative Commons) 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CAS(수신제한시스템: Conditional Access System)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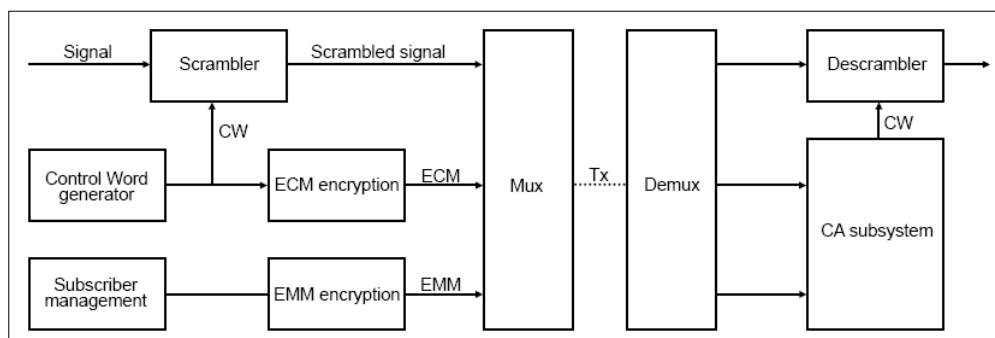
CAS 기술은 단순히 유료방송에서 송출된 신호에 왜곡을 발생(암호화)시켜 이를 수신기에서 복원(복호화)하는 형태의 제한수신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신망의 광대역화 및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VoIP, WiBro, HSDPA, DMB,

IPTV 등 유무선 통합, 음성 데이터 통합 및 통신 방송이 융합되는 신규 서비스를 보이며서 과거의 단순 제한 수신 기술에서 가입자 인증을 기반으로 하여 송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수신기에서 이를 복호화 하는 형태의 제한 수신 기술로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박중혁, 2009).

수신제한시스템은 방송사업자가 송신기에서 콘텐츠에 스크램블(Scramble)을 걸어 케이블, 위성, 지상파, 인터넷, 휴대이동 방송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송하면 제한수신 모듈을 통해 시청자가 유료 가입자인지, 어떤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콘텐츠를 디스크램블링(Descrambling)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7] CAS 시스템 구성도



자료: TTA(2008. 5)

[그림 7]의 CAS 시스템 구성도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신제한시스템의 기능은 크게 스크램블링/디스크램블링, 자격 제어, 자격 관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TTA, 2008. 5).

(1) 스크램블링/디스크램블링

스크램블링은 수신 자격이 없는 수신자는 시청이 불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된 방송 콘텐츠의 제어는 CW(Control Word)를 이용하여 암호화 및 복호화를 처리한다. 암호화는 수신자용 암호해독기로 송신될 스크램블링된 신호와 함께 전송되는 CW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송신부와 수신부는 반드시 같은 비밀키(Secret Key)를 가지고 있어야만 디스크램블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비밀키를 전송하는 과정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업자는 스마트카드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비밀키를 제공한다.

(2) 자격 제어(Control Word Generator)

자격 제어란 CW를 인증키로 암호화하고, 이를 ECM(Entitled Control Message)에 실어서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보안을 위해서 CW는 주기적으로 전송되며, 그 때 마다 새롭게 CW가 생성되고 암호화된다. 모든 수신기는 전송된 ECM을 수신할 수 있지만, 수신된 제어변수와 수신기의 인증변수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용자로 판단될 경우에만 스마트카드내의 비밀키를 제공한다.

(3) 자격 관리(Subscriber Management)

자격관리는 수신기에 자격을 부여·갱신·관리하는 기능으로, 인증키를 분배키로 암호화하여 EMM(Entitled Management Message)을 생성하고 암호화하여 TS패킷을 이용하여 수신 측으로 전송한다. EMM은 수신기의 보안장치인 스마트카드에 자격을 부여하거나 또는 갱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송신부에서는 가입신청을 한 정당한 수신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인증키와 수신자격을 전송하며, 인증키는 수신자 고유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다음 인증변수와 함께 EMM을 생성한 후 메시지의 변조 방식을 위해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전송한다.

최근에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을 완화하고 기술 진화에 따라서 플랫폼간의 유연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D-CAS(Downloadable CAS)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서로 다른 전송매체 및 단말기간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서 CAS-to-DRM 연동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및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디지털 워터마킹

디지털 워터마킹은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등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특정의 데이터를 사람의 육안이나 청각으로는 구별할 수 없게 삽입하는 기술이다. 다만, 유통 과정에서 소유권의 분쟁 등 원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를 다시 검색, 추출하여 소유권, 저작권 등을 인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오디오 워터마킹, 이미지 워터마킹, 비디

오 워터마킹, 벡터 워터마킹, 텍스트 워터마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워터마크의 삽입 및 검출과정의 적용영역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워터마킹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워터마킹 기술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기술과의 접목으로 구현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현재까지 잘 알려진 적용 분야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ETRI, 2002).

(1) 저작권 주장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이다. 먼저 콘텐츠를 만드는 저작자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워터마크를 생성한 뒤 그것을 원본 콘텐츠에 삽입한다.

그런 뒤 저작자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를 공개한다. 워터마크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복사하지 않을 것이고, 비가시적인 경우는 다른 사람이 콘텐츠의 소유를 주장하면 원래 콘텐츠를 생성한 저작자는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의 이미지에 자신이 삽입한 워터마크가 있음을 보여주어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 대한 압축, 확대, 축소 등과 같은 연산을 수행해도 워터마크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한다.

(2) 온라인상의 콘텐츠 위변조 판별

보통 연성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하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편집이나 수정시, 워터마킹된 부분이 깨지게 되므로 이를 통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워터마킹이 된 문서를 사용하여 일부를 수정한 후에 이를 사용하려고 할 때 원 저작권자는 이 파일을 검사하여 이 파일이 원본인지 아니면 변조된 것인지 확인한다.

주로 온라인 티켓, 보험증서, 성적증명서, 의료기록 등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상으로 전송되는 파일들의 위변조 확인에 활용된다.

(3) 무단 배포 방지(복사 제어)

워터마킹 기술을 사용해서 콘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 예로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 이 이미지가 만들어진 시간, 창작자 등과 같은 정보나 복사된

것이라는 표시를 워터마크로 만들어서 이미지에 삽입한다. 주로 각종 서류나 문서, 유가 증권 등의 복사기를 통한 복사 방지에 적용된다.

(4) 사용자 제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복사하거나 재생하는데 특별한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한 경우, 디지털 워터마크가 콘텐츠에 삽입되어 콘텐츠를 복사할 수 있는 횟수 등을 제어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경우 복사를 할 때마다 하드웨어가 워터마크를 수정하게 되므로 어느 제한 이상 복사 할 수 없게 된다.

활용 분야로는 온라인 티켓,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전자문서 발급시 횟수 제한 등이 있다.

(5) 기타

이 밖에도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사용자 신원카드에 내재된 워터마킹을 인식하여 신원 확인을 하거나 인증을 하는 경우, 혹은 저작권 정보의 추적 기술, 장치의 사용권 제한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될 수가 있다.

4) 핑거프린팅 기술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은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예; 오디오 신호의 에너지나 파형, 영상의 색상, 텍스처 혹은 움직임 정보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식별하는 기술이다(TTA, 2008).

핑거프린팅 방식은 디지털 워터마킹과 비슷한 기술이지만 저작권자나 판매자의 정보가 아닌 사용자의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내역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하게 될 콘텐츠의 불법 복제자를 추적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ETRI, 2003).

즉, 디지털 핑거프린팅 방식은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용자 고유의 정보를 담고 있는 핑거프린팅이 삽입되므로 정상적인 사용자인 경우 서로 다른 핑거프린팅을 가진 콘텐츠를 사용한다는 것이 워터마킹 기술과의 차이점이다. 또한 디지털 워터마킹은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하지만, 디지털 핑거프린팅은 사용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할 때 사용내역이 삽입되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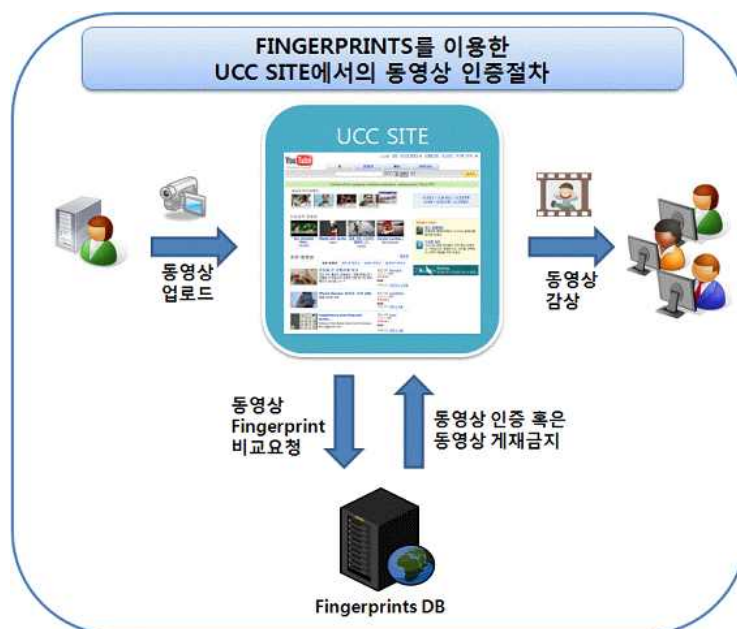
로 추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핑거프린팅은 크게 ‘특징점 기반의 핑거프린팅’과 ‘위터마킹 기반의 핑거프린팅(식별 정보 삽입 방식의 핑거프린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김동균, 2008).

(1) 특징점 기반의 핑거프린팅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에서 특징점을 찾아내어 이것을 DB에 보관하고, 후에 이를 다른 콘텐츠에서 추출된 특징점과 비교하여 두 콘텐츠가 일치 혹은 유사한지 알아내는 방법을 특징점 기반의 핑거프린팅이라고 한다. 여기서 특징점이란 음악이나 영상 파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음원의 주파수나 화면전환정보, 위치정보, 컬러정보 등을 말하며, 이것을 음원 DNA, 영상물 DNA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문을 통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듯이, 콘텐츠의 특징점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올바르게 인식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 특징점 기반의 핑거프린팅을 이용한 UCC 인증절차



자료: 김동균(2008)

이러한 특징점 기반은 파일이 복제되거나 편집되었다고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다면 높은 확률로 사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업체마다

특징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다르므로 필터링 정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명한 업체나 연구소의 필터링 정확도는 대개 95%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2차 저작물을 필터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등의 기술적인 쟁점도 존재한다.

특징점 기반의 핑거프린팅은 Negative 필터링 방식으로 P2P서비스나 웹하드에 적용될 경우 콘텐츠를 암호화시켜 유통시키는 암호화 공격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 즉, 콘텐츠가 암호화되면 원저작물과 특징점 비교가 불가능해지므로 Negative 방식의 필터를 그냥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P2P서비스나 웹하드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불법유통시키고자 할 때, 암호화 및 복호화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여러 해킹 도구들이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특징점 기반의 핑거프린팅을 적용하였지만 Negative 필터링을 하는 소리바다 서비스는 이러한 암호화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하지만 UCC서비스의 경우는 P2P나 웹하드의 경우와 성격이 다르다. UCC사이트에 암호화된 콘텐츠를 업로드할 경우, 콘텐츠 자체가 변형되기 때문에 바로 감상이 불가능하고 서비스업체는 이러한 눈에 띄는 콘텐츠를 바로 삭제할 수 있다. 따라서 특징점 기반의 핑거프린팅은 UCC서비스에 유효한 보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2) 워터마킹 기반의 핑거프린팅(식별정보 삽입 방식의 핑거프린팅)

워터마킹 기반의 핑거프린팅이란 콘텐츠 구매자의 정보를 콘텐츠 내에 삽입하여 콘텐츠 불법 배포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워터마킹과 매우 유사하지만 삽입되는 정보에 있어서 디지털 워터마킹이 저작권자 정보만 삽입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워터마킹 기반의 핑거프린팅 기술은 소유권에 대한 인증 뿐만 아니라 개인 식별 기능까지 제공해야 하므로 기존의 워터마킹이 갖추어야 할 요구 사항인 비가시성, 견고성, 유일성과 더불어 공모 허용, 비대칭성, 익명성, 조건부 추적성 등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이선화, 2004).

불법배포자의 정보가 파일 내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후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구매자 정보를 삽입하는 알고리즘이 유출되면 정보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원본의 변형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를 삽입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3) 디지털 워터마킹과 4) 핑거프린팅 기술은 앞에서 살펴본 DRM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의 하나로서 향후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DRM의 암호화 기술은 암호화를 통해 불법 사

용자가 해당 콘텐츠에 접근을 못하게 할 뿐이며 접근을 제어할 뿐이지만, 디지털 워터마킹은 접근 제어가 아니라 소유권 및 배포 경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9〕 워터마킹 기반의 핑거프린팅의 활용



자료: ETRI(2009), http://dcon.etri.re.kr/drm_finger.html

따라서 암호화와 달리 사용자들에게 불법 복사에 대한 심리적 억제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암호화가 접근 제어를 통해서 사전에 불법 복사를 막는다는 개념이라면, 워터마킹 및 핑거프린팅은 비록 해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규모의 불법 복사를 방지하겠다는 방어적 개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5) 필터링(Filtering)

저작권 보호기술에서의 필터링이란,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사용자들의 불법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불법 콘텐츠를 걸러내는 여러 방법들을 통칭한다(김동균, 2008).

온라인서비스업자들은 최근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 및 모니터링 부서를 두고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P2P 서비스에서 검색 금지어 등을 설정하여 사용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검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필터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필터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현재 널리 쓰이는 필터링 기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김동균, 2008).

(1) 제목 필터링

제목 필터링이란 콘텐츠 제목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콘텐츠의 제목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 검색을 시도하면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제목 필터링은 단순히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금치어(콘텐츠 제목)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면 되므로 제목 필터링 서비스 구축에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지만, 검색할 제목을 조금만 변경하여도 아주 쉽게 필터링을 피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하고 낮은 수준의 필터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P2P 및 웹하드 업체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음악, 영화 등 저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저작물마다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2) 문자열 비교 방식의 필터링

제목 필터링과 유사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검색하기 위한 단어들의 조합을 금치어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문자열 비교 방식의 필터링 또한 단순히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금치어(단어 조합)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면 되므로 이러한 서비스 구축에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자열 비교방식의 필터링 역시 검색할 단어를 조금만 변경하여도 쉽게 필터링을 피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제목 필터링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필터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문자를 비교하는 필터링 방법들은 모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부분의 P2P, 웹하드 업체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도 음악, 영화 등 저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저작물마다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3)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은 파일의 특정 확장자를 차단하여 필터링하는 방법이다. 즉, mp3, mpg, mpeg, avi, wmv 등과 같은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을 모두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은 파일의 확장자에 따라 검색 결과만 제외시키면 되므로 제목 필터링이나 문자열 비교 방식의 필터링과 같이 서비스 구축이 간단하고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물들이 개별적으로 필터링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자별로 필터링 되므로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다. 또한 파일의 확장자명을 바꿔 파일을 유통시킬 경우 이러한 필터링 방법을 쉽게 피해갈 수 있다.

일부 P2P업체에서는 음악 파일의 확장자를 모두 필터링하여 음악파일의 유통을 모두 차단하고 있다.

(4) 해시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

해시값(Hash Value)이란 해시함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값으로 해시함수는 임의의 크기의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하고 고정된 길이의 정수값을 출력하는 함수이다. 이 함수의 특징은 데이터의 입력값이 다르면 그 출력값도 거의 다르다는 것으로 출력값이 다른 두 입력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해시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은 이러한 파일의 고유한 해시값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동일성 여부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해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구현 또한 어렵지 않으므로, 필터링 서비스의 구축도 간단하고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다만 간단한 파일의 변형을 통해서도 해시값이 다르게 나오므로 필터링을 손쉽게 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파일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한된 수의 파일들에 대한 해시값을 이용하여 필터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일부 P2P 업체에서 해시값을 통한 필터링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6) 복사 방지(Copy Protection) 기술

지금까지는 콘텐츠와 사용자의 접근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보호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콘텐츠가 출발지로부터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중간에 여러 디바이스 및 매체를 거치게 된다. 이런 디바이스 및 매체 전달 과정에서 불법 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복사 방지(Copy Protection) 기술이라고 한다(황성운, 2007).

즉, 저장 매체, 인터페이스 신호, 디스플레이 신호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복사를 제어하는 기술로 대표적인 예로는 DTC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HDCP

(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CPRM(Content Protection for Recordable Media) 기술⁷⁾ 등이 있다.

(1) DTC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DTCP는 IEEE 1394 시리얼 버스, USB(Universal Serial Bus), MOST(Media Oriented Systems Transport)와 같은 고성능의 디지털 전송로 상에서의 불법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규격이다(황성운, 2007).

1998년 2월 히타치, 인텔, 마쯔시타, 소니, 도시바(일반적으로 5C라고 명명)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연결된 두 디지털장치(예를 들면 디지털 TV, 디지털 VCR, DVD 플레이어 등) 사이에서 인증, 암호화된 콘텐츠 및 CCI(콘텐츠의 복사 허용 여부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황성운, 2007).

DTCP의 특징은 단말기간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함에 따라 DTCP에 준거한 장치 간에서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콘텐츠 제공자가 콘텐츠를 설정한 속성(복사 금지, 1회만 복사 가능 등)을 장치 간 송수신해서 부정 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종혁, 2007).

(2) HDCP(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HDCP는 HDCP 송신기와 HDCP 수신기간에 DVI(Digital Visual Interface) 또는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등 디지털 버스를 통해 전송되는 오디오·비디오 콘텐츠의 전송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황성운, 2007).

HDCP의 주요 기능을 보면, 우선 인증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HDCP 송신기는 주어진 HDCP 수신기가 HDCP 콘텐츠를 받을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HDCP 수신기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면 암호화된 HDCP 콘텐츠가 인증 프로토콜 과정에서 설정된 고유키를 이용하여 두 디바이스 간에 전송된다. 이것은 콘텐츠의 가로채기 용도를 가진 디바이스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디바이스가 HDCP 콘텐츠의 불법적인 이용을 허락하도록 변형이 될 수 있는데, 디바이스 인증 취소(renewability)는 HDCP 송신기로 하여금 변형된 디바이스를 식별하고 HDCP 콘텐츠의 전송을 방지하도록 해준다(박종혁, 2007).

7) DVD 리코더, 하드 드라이브, SD 메모리 카드와 같은 저장 장치로의 복사를 제어하는 기술

7) CL(Copyright Labeling)

CL(Copyright Labeling) 기술은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같이 디지털콘텐츠에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보 표시는 비록 적극적인 콘텐츠 접근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워터마킹 및 핑거프린팅 기술처럼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자발적인 통제를 유도하는 소극적인 보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창작물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이용 요구와 함께 저작권자의 허락이 수반되어야 한다.

CCL은 이러한 창작물의 이용상에 있어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때부터 이용 허락과 관련된 일정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유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CC는 2001년 스탠포드 로스쿨의 교수인 Lawrence Lessig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여러 단체와 개인이 내는 기부금과 정보보조금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Stanford Law School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로부터 물적·인적 설비의 지원을 받아 Creative Commons License의 배포와 이와 관련된 사회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대회, 2007. 3).

CC의 이용허락 조건은 상표와 같이 간단한 표시에 의하여 이용허락조건을 표시하고 타인이 그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저작자는 이용자가 저작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고,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이대회, 2007. 3).

CC와 관련된 국내 Creative Commons Korea의 이용 허락 조건은 다음과 같이 원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4가지 요소를 자신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표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하게 된다. 변경금지(nonderivation)와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용 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가 된다. 그러나 “저작권표시”는 모든 라이선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선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가지 종류가 있다(www.cckorea.org).

〈표 7〉 CCL의 구성 요소

구 성	표 식	내 용
원저작자표시 (attribution)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름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
비영리 (noncommercial)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한다는 의미. 다만, 영리 조건은 이용자가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저작권자가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
변경금지 (nonderivation)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
동일조건 변경허락 (sharealike)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되,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

자료: www.cckorea.org

이처럼 불법복제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개발되고 진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만으로 불법복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기술은 불법 복제 기술의 진화에 맞추어 개발하되, 불법 복제 및 유통을 합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IV. 뉴미디어의 등장과 저작권

1. 뉴미디어 등장에 따른 저작권 이슈

1) 아날로그 저작권의 한계로 인한 저작권 문제 대두

(1) 권리자의 위기 및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매스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저작권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개인간의 통신으로 콘텐츠가 유통되면서 법률에 규정된 권리들만으로는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담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냅스터와 그록스터, 소리바다와 벅스 뮤직으로 대표되는 P2P와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매개자들과의 MP3 분쟁들을 겪으면서, 저작권자는 새로운 보호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다.

90년대 후반 이후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논의가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데이터 베이스 등 보호대상을 확대하였고 전송권, 공중송신권 등 권리를 신설 확대하였으며, 사후적 구제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여기에 행정적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저작권법이 규범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입된 새로운 개념들과 권리들은 과연 기존 저작권 체제와 조화롭게 융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아울러 새로운 매체 등장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이 권리자의 입장에 치중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다다랐다. 권리자와 이용자의 조화라는 저작권법의 본래의 목적을 상기하면서 이용자의 시각에서도 현행 저작권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사적 이용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이용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왔다. 사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이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보더라도 공연이나 방송, 전송 등은 모두 공중에 대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복제 역시 사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이러한 사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법의 태도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뉴미디어들이 등장함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받고 있다.

방통융합 환경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콘텐츠 전달 방법을 제시한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고가의 PVR을 구입할 필요 없이 인터넷VCR 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개인용 방송중계장치를 이용하면 방송권역이나 저작권 분쟁에 대한 고민 없이 사실상 지상파 재전송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메일을 통해 다수에게 ‘사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중에게 음원을 전달하는 사업자도 등장했다. 사적 이용의 개념이 역사의 유물로서 사라질 것인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자유 이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뉴미디어와 관련된 저작권 법

(1) 새로운 이용형태와 권리의 신설

① 전송권

유형물을 매체로 한 콘텐츠 유통에서 무형적 이용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면서, 이를 반영한 저작권법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종래 배포의 개념에는 점유의 이전이 포함되는 유체물의 배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장인숙, 1989) 인터넷을 통해서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기존의 배포권으로 포섭하기가 어렵다. 또한 정보의 흐름이 쌍방향적으로 변화하면서 단순히 서버에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 다수에게 전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기존의 배타적 권리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제적으로 새로운 권리 부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 제8조를 채택하면서 공중이용제공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합의하였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자국에 일임하였다.

이에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전송을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구 저작권법 제2조 9의 2호), 기존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과 구분되는 ‘전송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함으로써 WCT의 공중이용제공권을 수용하였다.⁸⁾

8) 2006년 12월 개정은 전송의 개념을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비슷한 시기에 벅스뮤직을 비롯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즈니스모델로 활용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저작권접권자의 보호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고(서울지방법원 2003. 9. 30. 2003카합2114 판결 참조) 여기에 WPPT 가입을 검토하던 시대적 상황이 더해지면서 2004년에는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도 전송권을 전격적으로 부여하게 되었다.

② 공중송신권

전송권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방통융합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저작권법은 모든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다. 기존 저작권법은 송신을 방송과 전송의 이원적 권리범주만을 별개로 설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한 권리 적용은 어려웠다. 이에 2006년에는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 음성송신 등 송신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개념으로서 공중송신권이 신설되었다.(법 제18조) 이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법 제2조 제7호)으로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과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공중에 대한 송신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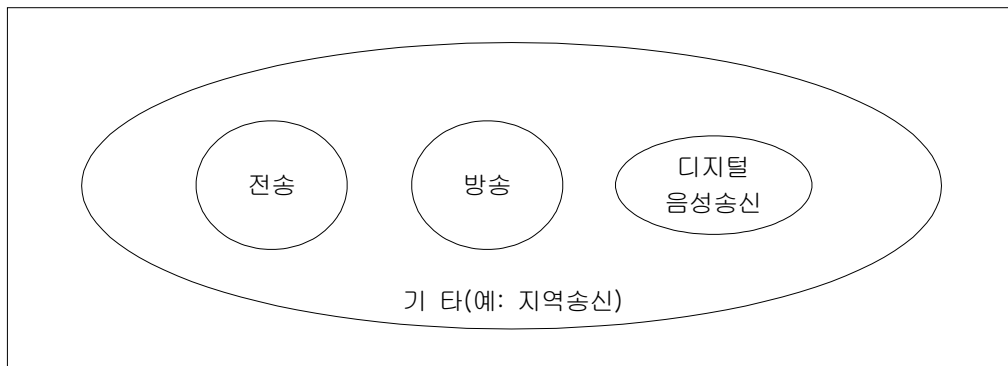
‘공중송신’이라는 상위개념이 설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송과 전송 개념에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방송’에 대한 개념정의는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즉, 음성·음향을 포괄하는 의미로 “음”이라 표현하고, 방법적으로는 유·무선 통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는데, 이 부분은 상위개념인 공중송신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유·무선 통신에 의한다는 문구는 삭제되었다. 또한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로 정의함으로써, ‘이용제공’을 전송의 주개념으로 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즉, 기계적 전송은 부개념으로 전송의 정의에 포함된다. 다음 표에 방송,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의 특징 및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로 다소 변경하였다. 이는 이용제공을 전송의 주개념으로 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계적 전송을 부개념으로 하여 전송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표 8〉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비교

이용형태	특징			사례	비고
	동시성	쌍방향성	주문형		
방송	○	×	×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전송	×	○	○	박스뮤직 주문형 서비스 방송 인터넷 ‘다시보기’ 인터넷 영화관	
디지털 음성송신	×	○	×	개인 인터넷방송(Winamp 방송) 지상파방송 동시 웹캐스팅 (Simulcast) 무선 분야에서는 준비 예정임 (June, Fimm 등)	음성·음향에 한정
기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공중에 대한 송신형태					

〔그림 10〕 공중송신의 개념



자료: 문화관광부(2006)

(2) 사적인 이용과 저작권법

① 저작권의 통제영역

독일 지적재산권법의 대가 Ulmer(1960)는 저작권의 통제영역에 속하는 저작물 이용과 그렇지 않은 이용을 구별하는 척도를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과 공중에 대한 이용”

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즉, 저작물을 복제나 개작 등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한다면, 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범위 안에 놓이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공중에 공개하는 경우에만 저작자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역시 공연이나 전송, 방송 등은 애당초 개념 자체가 모두 ‘공중’에 대한 전달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적인 복제 역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0조 본문)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인 이용은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② 사적 복제에 대한 면책

사적 복제의 면책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으로서 오로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영역에서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도록 한 제도이다(김현철, 2004).

유형물에 복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용에 대해 저작권 제한을 규정한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소수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고 또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얻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고려 때문이다.

오늘날 매체기술의 발전으로 공적이용과 사적이용의 경계는 모호해졌고 사적 이용에 대한 통제 필요성과 통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명문으로 사적복제 저작권 제한에서 배제하였다(제30조 단서).⁹⁾

2. 사례 분석

1) 전송과 방송

방통융합시대의 방송과 전송의 구분은 법학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지만 저작권법의 시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9) 복제보상금은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산업계와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좌절된 바 있다.

1990년대 초반 미국의 전화회사들은 VOD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영역을 제한한 당시 법제도에 도전하였다. 당시 VOD 는 기존 전화선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주문하게 되면 전화교환기처럼 비디오교환기가 프로그램을 선별, 가정 내 셋탑 박스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사업자와 시청자간의 1대1 전송관계를 생각한다면 통신의 개념에 속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1984년 케이블TV법에 따라 전화회사가 영상서비스 방송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규제기관이나 판결은 명시적으로 전화회사의 VOD서비스를 방송이라 간주하지 않았고, FCC가 1992년 VDT(video dial tone) 결정을 통해 전화회사에 대해 케이블 TV프로그램을 포함한 비디오 전송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면서 통신과 방송의 법적 개념 구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방석호, 2007).

같은 시기 영국에서도 British Telecom이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시내전화 시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VOD서비스를 실험적으로 보급한 바 있다. 미국과 유사하게 방송이나 통신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방송 규제기관이었던 ITV(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가 VOD가 방송법에 의한 방송서비스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BT는 VOD 서비스를 방송허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방통융합과 관련한 방송과 전송의 구분은 주로 행정적 규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전술하였듯이 우리 저작권법은 전송/공중송신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방송과 전송의 구분을 위한 개념 정립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저작권법에서 방송권과 전송권의 권리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영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두 개념을 넘나드는 비즈니스모델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다. 모호한 현실적 구분과 달리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은 명백히 다르게 취급되므로 양자의 관계에 대한 재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양자의 구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 법원은 ‘지저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사례와 ‘박스뮤직’ 사례에서 다소 모순되는 듯한 결론을 보여준 바 있다. 이들 두 사례를 통해, 그간 방송과 전송의 구분이 혼란을 겪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IPTV의 등장과 함께 다시 한번 전송과 방송, 디지털음성송신간의 개념 확정이 문제되고 있다.

(1)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사건¹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녹화한 후 이를 인터넷에서 VOD로 볼

10) 서울지방법원 2003. 7. 7. 선고 2002노11814.

수 있도록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전송권이 아니라 방송권의 침해를 인정하였다.

피고측은 방송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행위 시점이 2000년 1월 12일 이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전송권이 인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일반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행위로서, 개정 저작권법상으로는 일반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는 것이 아니어서 방송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에 정한 방송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2나 968).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방송이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까지만 송신되고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방송과 같은 전송도 포함된다’고 하여 방송의 개념에 전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¹¹⁾

(2) 벅스뮤직 사건¹²⁾

벅스뮤직은 소리바다와 달리 이용자가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한 동안에만 재생하여 청취하는 스트리밍 방식의 음악서비스 제공이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서는 OSP의 서버에 음악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하므로, OSP가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와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¹³⁾ 재생시켜 청취할

11) 상세한 평석은 양현주(2003, pp.173~184) 참조.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9.30자 2003카합2114결정; 2003. 9. 30자 2003카합2151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6. 25자 2002카합280결정.

13) 스트리밍이란 개울 또는 물결의 흐름을 의미하며 개울에 발을 담고 시원한 개울물을 소유하지 않은 채 즐기는 것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란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고 흘러보내면서 저작물을 즐기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가령 영상저작물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임시 기억장치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중앙처리장치의 프로세스만으로 스피커를 통해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 후에는 임시 기억장치에서 삭제하는 방식이다. 스트리밍 방식은 1995년 미국의 리얼네트워크(Real Network)사가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처음에는 리얼오디오(RealAudio)를 통해 음악 실행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인터넷 방송이라 불리는 웹캐스팅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P2P 미디어 스트리밍의 수신 피어(peer)는 미디어 데이터를 재생과 동시에 저장하고, 스트리밍이 끝나면 다른 피어에게 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스피어로 작동한다(이성용 외, 2004).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시 되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벅스뮤직의 복제권 침해를 인정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음악을 재생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서버에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저장한 행위에 대해 판례는 음반을 컴퓨터 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창작성 없는 기계적 변환’이고 변환된 파일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것은 유형물에 고정된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므로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벅스뮤직은 실질적으로 공중과 방송과 차이가 없으며¹⁴⁾ 자신은 저작권법상의 방송사업자임을 주장하였으나¹⁵⁾ 법원은 ‘벅스뮤직의 인터넷 서비스는 수신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또는 시청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것으로 1대 1 송신 및 1대 다수 송신, 이시성, 쌍방향적 정보유통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시성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⁶⁾ 방송으로 본다면 원고는 벅스뮤직에 보상청구권만을 가질 뿐 서비스의 중단을 청구할 수 없었는데, 법원은 벅스뮤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¹⁷⁾

2) 방송통신융합과 저작물의 사적 이용

광대역 인터넷망을 통해 수신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용량의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개인별로 커스터마이징된 콘텐츠 제공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VCR이나 MP3 player처럼 시간이동(time-shifting)이나 장소이동(space-shifting)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며, 사적인 1대 1 통신은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인터넷 녹화기나 개인용 방송중계장치 등은 기존의 저작권법 이론으로는 위법성의 판단이 쉽지 않다. 형식적으로 사인간 1대 1 전송의 형태를 띠고

14) 2003년 12월 당시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었다.

15) 구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방송의 개념에 동시성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았다. 방송사업자로 인정되면 저작권법 제68조에 따라 음반제작사들은 보상청구권만을 가지게 된다.

16) 벅스 가처분 결정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송이라고 명확히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벅스에 대해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송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전송이라고 명확히 단정하면 전송권이 없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행사가 전반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오병철, 2005).

17)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2003카합2151에서도 벅스뮤직의 음악청취 서비스는 동시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방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른 사건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의 방송사업자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27. 2003고단6560; 전수정, 2007, p.49)

있지만, 실제로는 공중을 향한 정보의 전달로 볼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해서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사업자들은 저작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러한 법적 공백을 공략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방통융합형 매체가 발전할수록 저작권법이 준비하지 못한 허점을 찾으려는 도전은 계속될 것이므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1) 아이멤스 사건¹⁸⁾

아이멤스 서비스는 P2P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을 교묘히 비껴가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모델로 고안된 ‘P2P유사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E-MAIL AUTOMATION’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버의 계정을 할당 받은 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자기의 계정에 업로드한다. 이로써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기 계정의 음악파일을 재생해 청취할 수 있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 뿐 아니라 타인의 계정에 업로드된 음악파일을 프로그램의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 허락을 받은 뒤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법원은 이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적 복제로 복제권 침해는 아니며, 전송의 개념정의상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타인이 업로드한 음악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한 이용자는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메일을 통한 허락 시스템을 도입하였음에도 자신의 계정에 음악파일을 업로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나아가 OSP의 방조책임도 인정하였다. 검색청취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권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이용자들의 저작권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만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음악파일의 청취를 하는데 필수적인 서버를 운영하여 검색청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권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저작권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30. 선고 2004카합3965결정.

(2) 인터넷 VCR

인터넷 녹화기의 허용 여부는 권리 부여와 원활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영원한 주제를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으로 불러들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엔탈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인데, 이에 앞서 외국에서는 이미 권리자들의 문제 제기로 법정 분쟁 중인 곳이 나타나고 있다. 영미법계의 미국과 대륙법계인 독일, 그리고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제를 지닌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참고할만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개개의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에 사업자로서는 자신들이 VCR 제조업체와 같은 지위에 있고 이용자들의 합법적인 사적 이용을 도왔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⁹⁾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에서는 합법적 이용 가능성을 법원이 확인 해주었으며, 독일에서는 유상 서비스에 대해서만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반면 일본은 독특한 ‘가라오케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엔탈 서비스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각 국가의 사적 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이하고 특히 간접침해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고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최진원, 2008d).

① 미국 케이블비전 사건²⁰⁾

케이블 방송사인 Cablevision은 2006년 3월, “new Remote-Storage DVR System”(이하 “RS-DVR”)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이용자가 자신의 가정에 PVR을 설치하고 녹화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Cablevision이 제공하는 웹하드에 방송콘텐츠를 저장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전송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²¹⁾ 출시 당시 셋톱박스 가격인하와 유지 보수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선호도와 정보를 파악하며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 모델로서 상당한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할리우드 영화사들과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 감소를 우려하였고 저작권의 힘을 빌려 법적으로 대응하였다. 저작

19) 간접침해론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0)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v. Cablevision Systems Corp., 478 F. Supp. 2d 607(S.D.N.Y. 2007)

21) 9.95달러를 한달 사용료로 책정하고 80시간 녹화할 수 있는 웹 하드 공간을 제공하였다.

권자들은 Cablevision은 단순히 일시적 복제와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며, 자신의 저장장치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간접 침해가 아닌 직접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뉴욕주 1심 법원은 Cablevision사의 RS-DVR은 여러 가지 장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단일 장치(stand alone)인 VCR과 다르게 보았다. VCR의 진화형이라기 보다는 VOD에 가깝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직접 복제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²²⁾ 하지만 2008년 8월 항소법원은 원심을 뒤엎고 Cablevision의 손을 들어 주었고 상소도 기각되어 Cablevision측의 승리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²³⁾

항소심의 주요 판결 요지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i) Cablevision의 저작권 있는 프로그램의 고정(embodiment)은 저작권법이 의미하는 “fixed”로 볼 수 없다.
- ii) 복제는 케이블 가입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케이블 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직접 침해 책임이 없다.
- iii) 녹화된 복제물의 재생을 위한 전송은 “공중”에 대한 공연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어떠한 공연권도 침해하지 않았다.

② 독일 “Personal Video Recorder” 사건²⁴⁾

독일 Personal Video Recorder는 TV 프로그램 편성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해당 프로그램이 녹화되어 사용자 개인 계정에 저장되는 서비스이다. Cablevision 사건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되었고, 방송사업자측은 인터넷 녹화기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안에서 쟁점은 이용자의 복제가 사적 복제에 해당하는가에 모아졌는데,²⁵⁾ 법원은

22) 저장 과정에 수반되는 Buffer Memory 일시적 복제 역시 미국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Cablevision은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데에도 직접 관여해 온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3) Cable News Network, Inc. v. CSC Holdings, Inc., 129 S.Ct. 2890(U.S. 2009). (June 29, 2009 선고).

24) OLG Köln, MMR 2006. 35-“Personal Video Recorder”

25) 독일 저작권법 제53조(사적 사용 및 여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① 사적 사용을 위하여 자연인이 저작물을 임의의 매체로 개개 복제하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영업목적이 아니며 복제를 위해 명백하게 위법 제작된 모형이 사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복제할 권능이 있는 자는, 무상으로 행해지거나 종이 혹은 임의적인 사진기술적인 절차나 여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절차를 이용한 유사 매체로의 복제가 행해지는 한도에서, 복제본이 또한 타인에 의하여 작성되도록 할 수 있다.

Personal Video Recorder의 운영은 단순히 CD라이터를 동전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 것과는 다르다고 하면서²⁶⁾ 인터넷 녹화기의 운영을 공중 복사기의 설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공중복사기는 사용자가 기기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직접 작동시키는 것이지만, 인터넷 녹화기에서 이용자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데 불과하고 설비에 직접 접근하거나 제어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복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 저작권법 규정대로²⁷⁾ 무상서비스의 경우는 허용이 되겠지만,²⁸⁾ 유상서비스 부분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Personal Video Recorder 사업자는 유상 서비스 부분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²⁹⁾

③ 일본 녹화넷(録画ネット)사건

일본의 ‘녹화넷(録画ネット)’은 미국, 독일의 상기 사례와 거의 유사한 인터페이스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회원은 반드시 ‘텔레비전PC’를 구매하도록 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사업자는 다분히 사적 복제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구성했는데, 각 개인별로 자신만이 사용하는 컴퓨터(テレビパソコン: 텔레비전 PC)를³⁰⁾ 구입하도록³¹⁾ 강요하였고 이를 사업자 사무실에 설치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6)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복사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자성이 부인된다. 독일에서는 CD라이터를 동전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 자에 대해 제3자 해당성을 부인한 바 있다.

27) 사용자 자신이 직접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매체와 방법을 불문하고 모두 허용되지만 제3자에 의해 복제하는 경우에는 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유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종이 등의 매체에 사진기술의 방법과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과정을 통해 복제가 되는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다(독일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제2문). 구법상으로는 제3자를 통해 녹화 녹음매체에 복제하거나 미술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에만 무상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3년 개정법에서는 무상요건을 일반화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의 경제적 손실 위험을 고려하여 사적 복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안효길, 2005, p.151).

28) 물론 복제기기의 운영자로서 복제기기 운영에 대한 복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29) 유상부분에 대해서는 독일 저작권법 제19조a 공중이용제공권도 침해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고객은 공중이며 공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볼 수 있으므로 공중이용제공권의 침해가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제19a의 영역에 있어서도 제53조 1항에 의한 유무상 구별이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사적복제가 되면 제19a조의 침해도 함께 사라진다는 판시를 하였다. 원문은 “Aus diesem Grund kommt es auch im Bereich des § 19a UrhG auf eine Differenzierung nach entgeltlichem oder unentgeltlichem Tun i.S.d. § 53 Abs. 1 UrhG entgegen der von der Ast. ... vertretenen Auffassung an.” 이 판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일호(2006, p.5) 참조.

30) 텔레비전 PC(テレビパソコン)는 이용자마다 별도의 TV튜너를 배정하여, TV프로그램의 복제와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송신하는 서버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 각 텔레비전 PC에 내장된 튜너만으로는 화상이 열화되는 경우가 있어 부스터로 출력을 높인 뒤 분배기를 경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허브 및 라우터를 경유해 인터넷과 접속하도록 하고 있다.

31) 판매·구입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약관상의 내용을 확인하면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다.

보수 관리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³²⁾ 이용자가 텔레비전 PC를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³³⁾ 즉 미국의 Cablevision이나 독일의 Personal Video Recorder와는 달리 ‘나만의’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는 것이고, 단지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치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조정할 뿐이므로 가정에 설치한 기존 VCR에 보다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이용자가 컴퓨터를 구매하여 ‘녹화넷’에 맡기고 관리 보수해 주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신이 직접 웹사이트를 통해 원격 조정하여 녹화 명령을 내리는 구조인 것이므로 멀리 떨어진 곳의 VCR에 리모컨으로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주장할 수 있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방송협회는 가정용 VCR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³⁴⁾ 녹화넷을 운영하는 유한회사 에프에이-비전(有限會社エフエービジョン)을 상대로 저작권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재판소는 녹화의 주체가 ‘에프에이-비전’이라고 판단하여 저작권의 직접 침해를 인정하였다.³⁵⁾ 이처럼 일본에서는 이용자의 사적 복제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서비스 운영자를 복제의 직접 주체로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간접침해에 대한 일본의 독특한 이론인 ‘가라오케 법리’가 변형되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엔탈 사건³⁶⁾

엔탈은 웹사이트상에 TV편성표를 올려놓고 해당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녹화를 대행하여 동영상 파일로 제공하며, 10일 이내에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2)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iEPG 대응 TV프로그램 사이트와 연동시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예약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 가11의 2, 1의 14를 보면 매주 일정한 시간대의 특정 프로그램을 반복 녹화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이 부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3) 이용자들은 먼저 사이트에 접속한 뒤 ID와 Password로 인증을 받고 텔레비전PC에 로그인한다. 녹화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일시와 채널, 해상도, 녹화모드 등을 입력하고 ‘예약하기(予約する)’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대로 자동으로 녹화되고, 프로그램을 복제한 동영상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이용자는 추후 언제라도 ‘녹화된 프로그램(録画済み)’ 탭으로 들어가면 저장한 파일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통상의 동영상 플레이어로 재생 시청이 가능하다. ‘자동 전송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별도의 다운로드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용자의 PC로 전송되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해당 판결의 증거 자료 갑1의 15 참조).

34) 저작권접권 중 하나인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며(일본 저작권법 제98조) 사적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5) 원심 결정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는데, 에프에이-비전측이 항고하여 高等裁判所の 판단을 받게 되었으나 위법성에 있어서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36) <http://www.ental.co.kr> [2008. 6. 27 접속] 현재는 서비스 폐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2009. 11. 7 접속]

저작권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워 놓았는데, 지상파 방송국의 방송 콘텐츠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³⁷⁾ 예약하지 않은 과거의 프로그램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고 이미 방송된 콘텐츠의 파일은 저장이나 판매를 하지 않음으로써³⁸⁾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복제 요건을 충족시키려 하였다.

이에 대해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본안에 앞서 우선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08. 3. 19.자 2008카합114 결정 등) 엔탈은 한동안 간접 강제금의 부담을 안은 채 서비스를 지속해 왔으나, 2009년 10월 17일자로 회원 모집을 중단하였으며 기존 회원에게도 서비스 폐쇄 일정 등을 공지한 상태이다.

[그림 11] Ental 홈페이지



* 편성표에서 녹화를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상세정보가 op-up 된다. 연속극인 경우 동일 시간대에 자동 연속 녹화가 가능하고, HD방송은 고해상도의 동영상상을 제공한다. 상세 설명의 상태에 보면 ‘시작 시간이 지나 예약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2008. 6. 27접속]

37) KBS1, KBS2, SBS, MBC, EBS만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케이블 등 유료방송은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은 수신이 무료이기 때문에 저작권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38) http://www.ental.co.kr/customer/faq_list.html ‘지난 프로그램에 대한 구입 문의는 해당 방송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3) 개인용 방송중계장치 마네키TV사건

IT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기술을 넘나드는 다양한 디지털미디어어댑터(Digital Media Adaptor, DMA)가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로케이션프리, 슬링박스, 붐TV 등의 ‘개인용 방송 중계장치’는³⁹⁾ 방송의 가시청권을 획기적으로 넓혀준다는 점에서 방송프로그램 유통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AV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송신하는 DMA로서, 여러 가지 기술적 제약은 있지만 집안에 작은 방송국이 있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최진원, 2009).

미국에서도 슬링박스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실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소니의 로케이션프리 제품을 활용한 마네키TV에 대한 법정 분쟁이 3년 가까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지속되었고, 2009년 초 드디어 마네키TV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피고가 된 마네키TV(まねきTV)는 초기 입회비로 31,500엔, 월 이용료로 5,040엔을 받고 고객의 ‘로케이션프리’ 베이스 스테이션을 동경 소재 나가소 상점 데이터 센터에 보관해 주는 사업을 하었는데, 해당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TV안테나와 인터넷 선을 연결 해주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업체는 ‘해외에서도 일본의 TV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 광고하여 50명~100명 정도의 고객을 유치하고 있었다.

2006년 2월 NHK 등의 방송사업자들은 마네키TV서비스가 저작권법 제99조의2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⁴⁰⁾ 서비스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⁴¹⁾ 가처분 사건은 같은 해 6월에 동경지방법판소(東京地方裁判所)에서 각하된 데 이어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에서도 마네키TV측의 손을 들어 주었으

39) 방송콘텐츠를 중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작한 영상이나 보안용 CCTV, 홈오토메이션 등의 용도로 활용범위를 넓혀 갈 수 있다. 초기 제품들이 공히 기존 방송의 중계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었고 홍보도 동일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하 ‘개인용 방송 중계장치’라고 통칭한다.

40) 로케이션프리는 녹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복제권 침해(일본 저작권법 제98조)는 주장되지 않았다.

41)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송을 제기한 방송사업자측도 로케이션프리를 개인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소니 로케이션 프리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 침해는 별도로 주장되지 않았고 기기 자체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장치이며 로케이션프리를 개인이 자신의 시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마네키TV 서비스가 상당한 대가를 징수하고 MDA기기를 TV안테나, 인터넷 선과 연결해 주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송신가능화의 주체는 개개의 고객이 아니라 업자이며, 이 서비스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 송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며⁴²⁾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로의 항고도 불허되었다. 방송사업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송신가능화권과 공중송신권 침해를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진행했지만 2008년 6월 1심 패소에 이어 2008년 12월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고, 2009년 1월에는 최고재판소에 대한 상고마저 불허됨으로써 만 3년여에 걸친 법정 분쟁은 마네키TV의 승리로 결말을 맺었다.

본 사건에서 저작권 관련 쟁점은 로케이션프리를 통해 원격지로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이 ‘공중을 향한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저작권법 제99조2의 송신가능화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 원고는 마네키TV에 설치된 베이스 스테이션 등이 ‘자동공중송신장치’(自動公衆送信装置)⁴³⁾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마네키TV는 로케이션프리를 통한 방송의 원격 시청은 고객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적 이용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였다. 일본에서 IT기술과 방송저작권의 충돌을 다룬 대표적 사례인 ‘녹화넷 사건’과는⁴⁴⁾ 달리, 마네키TV는 복제가 수반되지 않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이기에 ‘송신가능화 행위’ 해당 여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가름하는 쟁점이 된 것이다.

법원은 하나의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별도의 독립된 사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private Internet protocol address, PIA)를 통해 각 이용자의 PC로 소위 1:1 접속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인터넷 접속 기술을 언급하면서,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은 ‘사전에 설정을 마친 단말기와 1:1 송수신만 가능하므로 공중 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송신가능화 행위(일본 저작권법 제99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방송사업자측은 행위의 ‘주체’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었는데,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송의 주체는 마네키TV가 아닌 개별 이용자라고 판단하였다. 마네키TV측은 특별한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않았고 기기의 설정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등 단지 설치만을 해주고 있을 뿐이므로, 방송을 수신하여 인터넷으로 송신하고 원격지에서 수신 재생하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고객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영리적으로 개인용 방송중계장치를 활용

42) 저작권자로서 ‘공중송신권’에 근거한 주장을 추가로 제기하였으나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

43)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9의2. 자동공중송신이란 공중용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등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9의2 가목, 나목에 규정되는 행위에 의해 자동 공중 송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44) 녹화넷 사건에 대해서는 최진원(2008d, pp.84~114) 참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면서 저작권법과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충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3. 해외 주요국의 저작권 제도 정비 현황

1) 공중 이용에의 제공

(1) 국제규범의 검토

1996년 WIPO 외교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송신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존의 저작권 중에서 어떠한 권리가 디지털 송신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미국과 같이 배포권에 기초하여 해결하려는 입장과 EU처럼 일반적인 공중 전달권에 의해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나누어졌다. 하지만 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배포권은 유형의 복제물에 대한 권리로 보고 있으며, 후자 역시 베른협약의 일반적 공중전달권은 모든 유형의 저작물에 인정된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자 모두 적절한 대안은 되지 못한다.⁴⁵⁾

이에 각국의 대표는 디지털 송신의 쌍방향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중이용제공’에 대한 권리 인정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WCT에 공중전달권을 신설하였다(제8조). 동조는 베른협약상의 공중전달권을 확대하여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한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works)을 저작자에게 부여하면서, 이용자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디지털 송신이 가능하도록 송신의 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컴퓨터 서버에의 송신 등, 송신을 가능하게 하는 상태(on demand possible)에 대해서까지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여 공중이용제공에 대한 권리(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works)를 포함시키고 있다.⁴⁶⁾

45) 예컨대 문학 저작물은 낭송에 대해서만 공중전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진저작물이나 회화저작물 등은 공중전달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았다(이대회, 정상조 편, 2007).

46) 이용제공(making available)이라는 중립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은 어떠한 유형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각국의 국내 입법에 완전히 일임하기 위한 것이었다(Ficsor, 2002, p.493).

〈참고〉 WIPO 저작권조약(제8조 공중전달권)

베른협약 제11조 제1항 (ii), 제11조의 2 제1항 (i) 및 (ii), 제11조의 3 제1항 (ii), 제14조 제1항 (i) 그리고 제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표 9〉 국제협약상의 공중전달권

구분	대상	전달방법	(쌍방향) 디지털 송신	명칭
베른협약	문학, 예술, 악곡	모든 방법	없음	공연, 방송, 공중전달
WCT	모든 저작물	무선, 유선, 위성통신	공중전달 (공중이용제공 포함)	(확대된) 공중전달권
WPPT	저작인접물	무선, 유선, 위성통신	공중이용제공	

자료: 하동철(2008)

(2) 주요국의 법제도

미국은 WCT 공중전달권과 관련하여 특별한 입법을 새로이 하지는 않았다. 대체로 기존의 배타적 권리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통제 된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와 권리자 단체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정부는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가 공중이용제공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용제공에 해당하는 행위가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공연권 등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⁴⁷⁾ 법원은 냅스터사건에서 P2P 파일 교환에 있어 타인이 복제하도록 파일이름을 검색 목록에 올리는 행위를 배포권 침해라고 판시하였다(A&M Records, Inc v. Napster, 114 F.Supp.2d 896(2000)).

반면 유럽 연합은 저작권 지침에서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해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으로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

47) Letter from Marybeth Peters to Rep. Howard Berman, RE:Hearing on Piracy of Intellectual Property on Peer-to-Peer Networks(Sep. 25, 2005).

정하여 공중전달권의 국내법화를 독려하였다(동 지침 제3조).

일본은 1997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송신가능화를 포함하는 ‘공중송신’의 개념을 신설하고 해당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제23조 제1항), 실제로 일반 공중에 대한 송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서버에 업로드하는 시점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 일본 저작권법(제2조 제1항-정의)

- 7-2. 공중송신이란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무선통신 또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유선전기통신설비로 그 한 부분의 설치장소가 타 부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구내(그 구내가 2 이상의 자의 점유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의 점유에 속하는 구역 내)에 있는 것에 의한 송신(프로그램저작물의 송신을 제외)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 9-4. 자동공중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을 말한다.
- 9-5. 송신가능화란 다음에 게시하는 행위에 의해 자동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되어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는 것에 의하여, 그 기록매체 중 자동공중송신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분(이하 본호에서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라 한다)에 기록되거나 또는 당해 장치에 입력되는 정보를 자동공중송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서 추가, 혹은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 변환하거나 또는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
- 나. 그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가 기록되고 또는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대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있는 전기통신회선으로의 접속(배선, 자동공중송신장치의 시동, 송수신용 프로그램의 기동, 기타 일련의 행위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일련의 행위 중 맨 마지막 것을 말한다)을 행하는 것

2) 사적인 이용에 대한 통제

(1) 국제규범의 검토

사적 복제는 저작권의 제한 규정 중 권리자의 이익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인 만큼 해석 및 운용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복제권 역시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제한에는 헌법상 한계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며, 저작권은 국제 규범의 특성

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적 복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내법에 규정함에 있어서 국제법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⁴⁸⁾

베른 협약 제9조 제2항에서는 복제권의 제한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⁴⁹⁾ 소위 3단계 테스트를 도입하고 있다.⁵⁰⁾ 이와 같은 3단계 테스트는 WTO/TRIPs 협정에도 이어졌고,⁵¹⁾ 인터넷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1996년 체결된 WCT와 WPPT에서도 수용되었으므로, 3단계 테스트는 디지털 시대의 사적 복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있다.⁵²⁾

(2) 주요국의 법제도

일반적으로 영미법계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 ‘Copyright 체계’에서는 사적 복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잘 두고 있지 않은 반면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droit d’auteur 체계’에서는 저작권 제한의 하나로 사적 복제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이익 조정 방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사적 복제에 대한 면책 조항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미국법상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개별 규정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유자가 보존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미국 저작권법 제117조(a)), 음악 녹음물을 사적 이용을 위해 녹음하는 경우(AHRA 제1008조) 등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그 외에 경우에 대해서는 제107조의 공정 이용에 대한 일반 조항으로

48) 국내적으로는 내재적인 한계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우리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사회 기속성을 언급하여 제한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49) 베른 협약 제9조 제2항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일반 조항이 도입된 이유는 1896년 베른협약 체결시에는 복제권을 두지 않았고, 1967년 스톡홀름 개정회의에서 도입 될 때는 이미 많은 나라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복제권 제한 규정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국의 형편에 맞도록 복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를 협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50) 국제조약상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에 대한 열거적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브뤼셀 개정과 스톡홀름 개정을 통해 3단계 테스트(three-step test)가 도입되었는데, 영미와 대륙 저작권법의 조화 내지 융합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Senftleben, 2004, p.63).

51) WTO/TRIPs 제13조(제한과 예외)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정하고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52) 3단계 테스트와 관련된 국제 조약간의 관계와 해석에 대해서는 Sam Ricketson(2003, p.63) 참조.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 조항은 IT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적 복제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SONY Batamax VCR에 대해서는 ‘private, non-commercial’으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에 P2P Napster 사건에서는 저작물의 성격, 사용 목적에 비추어 공정 이용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영국연방의 오랜 소속국이었던 캐나다 역시 사적 복제 관련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반 조항(fair dealing)에 의해 해결해 왔으며 개인적인 연구를 위한 경우와 사적 사용을 위한 음반 복제의 경우 공정 이용으로 본다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⁵³⁾

이에 비해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체로 사적 복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01년 ‘문학 및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LUG)’ 제15조 제2항에서 사적 복제를 허용한 이래로 지금까지 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다만 EU 저작권 지침을 국내법화하기 위해 2003년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규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사적 복제에 관한 제53조를 대폭 수정하면서 제3자 관여 정도나 디지털 복제 여부, 복제 원본의 적법성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디지털 복제나 컴퓨터 프로그램, DB등에 대한 면책 기준을 제시하여 사적 복제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⁵⁴⁾ 프랑스에서도 저작권법 제122조의5에서 사적 사용에 이용되는 복사 또는 복제는 저작자가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으로 변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적 복제를 면책시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와 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1899년 이래로 명문의 규정을 두어 사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1999년 디지털 환경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면적으로 법 개정을 단행하면서도 사적 복제에 대해 면책 시키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 외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도 사적 복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⁵⁵⁾

53) 호주 역시 사적 복제를 일반적으로 면책 시키는 개별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54) 제53조의 내용은 “Personal Video Recorder”사건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 있다. 우선 사용자 자신이 직접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매체와 방법을 불문하고 모두 허용된다. 하지만 만약 사용자의 개인용으로 사용할 것이더라도 제3자에 의해 복제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먼저 그것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제의 방법이나 매체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종이 등의 매체에 사진복제의 방법과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과정을 통해 복제가 되는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다.

55) 그 외에 스위스(스위스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라 개인과 가정 내에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며(제1항 제1호), 제3자에 의한 복제 역시 허용된다. 복제방법이나 매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제3자에 의한 복제 역시 허용된다(스위스 저작권법 제2항).)나 오스트리아(저작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종이에 사진복제의 방법으로 복사하는 경우 사적 복제가 허용된다. 제4항에 의하면 종이와 다른 매체에 다른 방법으로 복제되는 경우에도 복제가 자연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영리목적이 없다면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3자에 의한 복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도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4. 저작권 개선 필요성

1) 방송·전송 준별에 대한 재고

(1) 개념의 구분과 한계

방송과 전송은 전송수단, 전송물, 전송대상, 전송방식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중 동시 수신이나 일방향성 등을 방송의 특성이라 보고, 개별수신, 양방향성 등을 전송의 특성이라고 구분하였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전통적 개념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은 물리적 인프라 계층의 동시성 여부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방송은 1대 다 및 동시성을 띤 공중에 대한 일방향 송신으로, 전송은 1대 1 송신 및 1 대 다 송신, 이시성, 양방향적 정보 유통을 특징으로 하며 주로 파일의 업로드, 송신, 다운로드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전송권이 도입된 2000년 개정법에서 방송의 개념을 전송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송신하게 할 목적으로…송신하는 것”에서 오히려 고전적 개념인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송신하게 할 목적으로…송신하는 것”으로 바꾸어 정립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송 개념의 변화는 전통적인 ‘broadcasting’에 충실하도록 수정된 것이지만, 현재의 방송의 개념, 전송과의 구분은 기술적 변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방송’의 현실은 디지털기술의 영향으로 이미 ‘1 대 다수의 일방향적 전파’ 방식에서 벗어나 VOD, 인터넷 방송 등의 개념에서 보듯이 ‘1 대 소수 내지 1 대 1의 양방향적 전송’으로 바뀌고 있으며, 점차 통신과의 차별성도 없어지고 있다. 더구나 저작권법상 ‘방송’은 유·무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과 ‘방송’의 개념을 서로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들다(방석호, 2004).

(2) 현행 저작권법의 준별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효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⁵⁶⁾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저작권법 제24조)이나 비영리 방송(저작권법 제26조)에 있어서 방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제한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한편, 방송을 위한 경우에는 일시적 녹음 녹화가

56) 이러한 현상은 우리 저작권법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에서도 방송과 공중송신을 구별하고 있으며 미국도 판례상 이를 구별하고 있다.

가능하고(저작권법 제31조),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저작권법 제48조)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일종의 법정허락이 인정되고 있어, 개념상 혼동에 기인한 법적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⁵⁷⁾ 무엇보다도 방송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저작권접권으로 방송을 복제하거나(저작권법 제84조) 동시중계방송 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저작권법 제85조). 현행법상 방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VOD방식의 인터넷 방송이나 웹방송, IPTV 등의 새로운 서비스는 이러한 특례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저작 인접권자로서 권리를 부여 받을 수도 없다.⁵⁸⁾

미디어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데, 저작권법적으로 양자의 법률적 취급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 방송의 법적 개념

우리나라 입법자의 방송 개념에 대한 입장은 저작권법과 방송법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라 하여(방송법 제2조 1호)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저작권법 제2조 8호)⁵⁹⁾과 전송(저작권법 제2조 9호의2)⁶⁰⁾을 준별하여 방송의 개념을 확정하고 있다. 양 법은 서로 다른 영역을 관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 정의에 있어서도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상호 호환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을 충족하는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곧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방송법상 방송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중계 유선방송이나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는 저작권법상 방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최경수, 오기석, 2003).

〈참고〉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비교법적 고찰

저작권법에 방송의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다. 미국은 특별히 방송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송신의 개념만을 정의하고 있다. 독일 역시 저작권법에서 방송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방송권을 규정하면서 ‘저작물을 라디오 및 텔레비

57) 벅스뮤직 사건에서 방송사업자 법정허락 항변을 하였으나 벅스는 전송이므로 동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03. 6. 25.자 2002카합280 결정).

58)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IPTV는 공중송신의 영역에 속하므로 저작권자는 IPTV에 대한 공중송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중송신권이 없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는 IPTV 개별 서비스의 쌍방향/일방향 성격에 따라 배타적권리 또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9) 방송: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60) 전송: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 방송, 위성방송, 유선방송 혹은 이와 유사한 기술 장치를 통하여 일반 공중이 접근하도록 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독일 저작권법 제20조).⁶¹⁾

반면 일본과 영국은 방송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공중 송신 중 공중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되었을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8호), 영국 저작권법에서는 '무선전신에 의한 시각 영상, 소리 또는 기타 정보의 송신으로서 (a) 일반공중이 적법하게 수신할 수 있거나, 또는 (b) 일반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송신되는 것'을 의미한다(영국 저작권법 제6조).⁶²⁾

〈참고〉 방송사업자의 전송권 도입

2004년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면서 방송사업자만 누락이 되었다.⁶³⁾ 이에 KBS, MBC 등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쌍방향송신으로 전달되는 방송신호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⁶⁴⁾ 독일은 2003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공중이용제공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저작권법도 방송사업자에게 우리의 전송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독일 저작권법 제87조 제1항; 일본 저작권법 제99조 제2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마찬가지이다(프랑스 지적재산권법 L216-1,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79조 제1항 (d), 그리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g)).

일응 타당한 주장임에는 분명한데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방송사업자의 저작권적 지위가 과도하게 높아져 문제를 일으키고 지적이 많은 만큼, 법리적 검토와 더불어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적 고려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사적 복제에 대한 재고

(1) 면책 논거의 약화

사적복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이유는 저작권법이 태동하고 발전하던 시기에는 복

61) 이에 대해서는 독일이 로마협약상의 규정을 따르고 있고 협약상의 규정이 국내법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로마 협약상 방송의 정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최경수, 1990, p.20).

62) 영국법은 방송의 개념에서 인터넷 송신을 제외하고 있지만 일정한 종류의 비대화형 송신은 방송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보고 방송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유추하여 분류하면 (i) 인터넷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비대화형 송신, (ii) 현장실연의 비대화형 송신, (iii)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송신되는 상연, 연주, 가창, 연설 등의 복제물의 송신 등이 방송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Cook, Brazell, Chalton, & Smyth, 2004, p.37).

63) 이는 SCCR에서 논의 중이던 방송사업자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SCCR의 관련 논의 연혁은 최진원(2008b) 참조.

64) 예컨대 하동철(2008b, p.132) 참조.

제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인이 고가의 복제기기를 소유하거나 복제를 행할 가능성이 매우 적었다는 점, 그리고 사적 영역에 대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기 때문이다(김현철, 2004).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저작권법이 태동했을 당시의 환경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복제기기가 소형화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됨으로써 개인에 의한 소유 및 복제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권리자의 이익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한편,⁶⁵⁾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통제가능성 역시 증대되었다. 한편 사적으로 이루어진 복제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어 저작권 침해로 나아가는 주요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사적 영역에 대한 절대적 보호 역시 논거가 약해졌다.

(2) 복제 보상금 제도

사적복제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독일에서는 1965년에 이미 복제 보상금제도를 규정하였고 지금까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⁶⁶⁾ 복제보상금제도란 저작물의 복제에 이용될 것이 잠재적으로 예견된 기기나 매체에 대해 일정 보상금을 부과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저작권자는 복제기와 공매체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받는 대신 사적복제를 자유롭게 인정해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페인, 핀란드, 헝가리 등은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청구권 문제로 구성하고 있으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특별세를 징수하는 조세제도로 대응하고 있고 프랑스는 양 제도를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디지털 녹음 녹화용 기록매체에 대해서 독일식의 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내지 제1010조,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04조의2 내지 제103조의11), 아직은 국지적이라 할지라도 대륙과 영미 저작권법이 통합되어 나가는 하나의 양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Christie, 2005).

그러나 보상금제도의 도입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적절한 균형 유지를

65) 미국 연방대법원이 합법적 기기로 판단한 'VCR'도 권리자의 이익을 크게 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공정이용으로 본 것이다. 즉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TV방영을 허락한 저작권자들 중 상당수는 개인적인 시청자들이 시간이동 목적으로 방송내용 녹화에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이 증명되었고, 저작권자는 시간이동이 그들의 저작물 가치나 잠재적 시장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매우 한정된 조건하에서였다. Sony Corporation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 Inc., 464 U.S.417(1984) 참조.

66) 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한 역사적 개관은 안효철(2005, p.149) 참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적용 대상과 금액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계속되는 매체의 등장과 복제기술의 진보로 인해 보상금의 결정과 대상 확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저작물 복제에 이용된다고 하여 복제보상금을 내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프린터에 대한 적정 보상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등,⁶⁷⁾ 사적 복제를 둘러싼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⁶⁸⁾

〈참고〉 독일의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복제 보상금 분쟁

이 사건의 원고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다. 원고는 컴퓨터 제조업자들인 피고에 대해 독일 저작권법 제54조의g에 따라 컴퓨터의 생산량에 대해 통보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제조업자들은 복제기기를 제조하지 않는 전자기기 생산자들에게 생산량을 통지해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저작권단체는 컴퓨터 제조업자에 대해 기기보상금의 합의를 위해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견조율에 실패했고, 결국 조정절차에 의해 12유로의 보상금이 적절하다는 조정안이 나왔다. 이 조정안은 컴퓨터 제조업자들은 물론이고, 저작권단체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에 저작자단체는 저작자단체와 컴퓨터 제조업자들 사이에 생산량의 통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보상금으로서 12유로가 적절한지를 확인해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생산량의 통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존부에 대해 살피면서, 컴퓨터가 복제기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우선 인터넷이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컴퓨터에서 불러들여지고, 장기기억장치에 저장되며,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는 명백하게 저작물이 복제된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장기간 저장되는 것이 아닌 이용에 수반되는 복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복제개념과 기기보상금제도에서 이야기되는 복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것이다. 즉, 독일 저작권법 제16조에 규정된 복제의 개념은 복제의 유형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저작권법 제54조의a에서 복제(Ablichtung)는 오로지 “사진복제”의 방법으로 복제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방법에 의한 복제만을 말하게 된다. 따라서 후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복제는 오로지 하드카피만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용에 수반되는 복제는 광의의 복제개념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제54조의a에 의해서도 복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정교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어느 범위까지가 이른바 하드카피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하는 실익은 기기보상금의 산정실익과 직결되어 있다. 독일 법원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본래적 복제기기와 부수적

67) 보통 복제보상금은 복제기기의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정되는데, 최근 프린터 제조자들이 기기의 가격은 낮추는 반면, 잉크 카트리지의 가격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으므로 저작자에게 지나치게 적은 보상금이 돌아간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VG Wort Aktuell, 2006, S. 2 ff.).

68) 이에 더해 DRM과 보상금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김현철, 2004, pp.148~150).

으로 복제기능을 갖는 기기들은 구별된다. 과거 연방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팩스기기, 스캐너 등은 복사기나 프린터·플로터와 같이 오로지 복제를 위해 제조되거나 주로 복제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들과는 구별된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컴퓨터 역시 팩스, 스캐너와 마찬가지로 부수적으로 복제를 수반하는 기기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란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독일 저작권법 제54조의d의 추가규정을 보면, 복제기기의 기기당 보상금액이 적시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저작자단체와 제조업자들의 합의에 의해 법정보상금보다 다소 낮은 금액의 보상금이 합의된다고 한다. 만약 이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더 높은 법정보상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작자로서는 손해가 없다. 다만 요율표에 적시된 기기의 유형은 오로지 복제를 위한 것들이어서 위의 컴퓨터를 비롯하여 스캐너나 팩스기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기기보상금의 결정은 오로지 저작자단체와 컴퓨터 제조업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⁶⁹⁾ 본 사례에서 법원은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우선 다른 기기에 대해 이미 합의된 내용을 참조했다. 다음으로 기기의 복제용도의 사용과 그 이외의 사용가능성이 비율로서 고려되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CD라이터에 대한 보상금이 약 7유로이고, DVD라이터에 대해서는 약 10유로의 보상금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12유로는 적정하다고 한다. 또 컴퓨터에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복제되는 경우가 아닌 용도의 이용이 약 70~80 퍼센트에 이르기 때문에 12유로가 보상금으로 과소하다는 저작자단체의 의견을 배척했다. 법원은 결국 12유로가 보상금으로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LG München, ZUM 2005, p.241).

(3) 매체의 통제와 개인에 대한 통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개인의 저작물 향유 기회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반면 이는 권리자에 대한 위기로 연결된다. 각국의 법제도는 P2P나 웹하드 등 전파력이 강한 매체를 통제하여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키고자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현재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에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이영록, 2009).

이에 각국의 법제도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개인에 주목하게 되었고 불법 복제물 유통의 중국적 문제는 이용자의 사적 복제에 귀착한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적 복제 대상에서 불법 저작물을 제외하는 입법적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EU는 2001년 채택한 저작권 지침에서 디지털 사적 복제를 포함한 사적 복제 일반에 대해 허용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69)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다.

부여하였고(동 지침 제5조) 독일은 이를 수용하는 2003년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규율에 관한 법률에서’⁷⁰⁾ 복제에 사용되는 원본은 명백히 불법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일본에서도 복제 편의 제공 업체의 출현으로 저작물이 대량으로 복제되는 것은 사적 복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1984년, 공중용 자동복제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면책에서 제외한 데 이어, 1992년에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 녹화기 및 기록 매체에 대해 사적 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9년에는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 등에 의한 복제를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를 사적 복제에서 제외하였다. 나아가 2009년 6월 공포되어 2010년 시행될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여 행하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를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를 사적 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써 P2P나 웹하드를 통한 불법 저작물의 다운로드를 대부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적 사용의 목적으로 스스로 복제를 행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1호).⁷¹⁾

(4) 이익 재조정의 필요성

방통융합으로 사적 이용과 공적 이용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많은 국가들은 사적 복제 환경을 수정하고 있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사적 복제보상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사적 복제의 대상에서 불법물을 제외하는 입법을 하기도 한다.

현행법은 아직 명확한 입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우여곡절 끝에 IPTV도 출범하였다. 인터넷 VCR이나 개인용 방송중계장치는 이미 상용화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P2P와 웹하드는 법적 분쟁을 경험하였고 아이맵스와 같이 사적인 이용에 대한 법적 공백을 활용하려는 시도도 이미 접한 바 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70) Gesetz zur Regelung des Urheberrecht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vom 10. September 2003, BGBl. 2003 TeilI, s. 1774.

71) 일본저작권법 제119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1.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제30조 제1항(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스스로 저작물 혹은 실연 등의 복제를 행한 자,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인격권, 저작권, 실연자인격권 혹은 저작인접권(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인접권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20조의2 제3호에서도 같다)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행한 자 또는 제1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행한 자를 제외한다)

V. 인터넷의 진화와 저작권

1. 인터넷 진화에 따른 저작권 이슈

1) 저작권 문제 대두 배경

(1) 법 적용 대상의 확대

지금까지 저작권법은 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출판사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매개자의 전달행위 또는 전달준비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최종 이용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창작을 위해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변형적(transformative) 사용자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공적 범위에서의 소비적 사용자와 같이 제한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 매체의 등장은 이용자와 창작자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용자가 기존 저작물에 창작성을 가미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스스로 저작물을 유통시킬 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P2P나 웹하드에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물론이고, UCC를 만들 때나 블로그에 신문 기사를 스크랩할 때도 저작권법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저작권법에 무지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었고, 청소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과 일부 법무법인의 저작권 침해범을 대상으로 한 합의금 장사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분쟁 사태의 원인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 홍보 부족을 꼽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는 법률적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가 불특정 다수로 확대되고 대량으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시대에 아직도 출판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현행 저작권법의 권리 처리 방식으로는 콘텐츠의 합법적 이용이 매우 어렵다.

우선은 일반인 입장에서 저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다. 저작권은 특허권과 달리 권리 발생에 절차나 이행이 필요치 않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

서 저작권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현재 권리보유자에 대한 공시가 어렵다. 하나의 저작물에는 여러 사람의 창작적 노력이 반영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이들의 권리처리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합법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거래비용이 상당하다. 저작권료보다 권리자 탐색과 협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⁷²⁾

전 국민의 범죄인화가 우려되는 저작권 침해 사태는 권리의 부여와 단속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현행 자유이용 규정과 이용자 시각에서의 권리 균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2) 매개 축소와 새로운 매개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업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의 등장

역사적으로 새로운 매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은 기존의 시장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곤 했다. 17세기 영국에서 등장한 대출 도서관에 대해서 서점업계가 반기를 들었고, 20세기 복사기에 대해서는 출판업계가, 비디오테이프는 영화사가 반발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인터넷의 발전은 매개 축소 현상(disintermediation)을 가져왔다.⁷³⁾ 큰 자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저작자, 작곡가, 공연자들이 스스로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된 것이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1). 한편 디지털시대의 매개축소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매개자를 탄생시켰다.⁷⁴⁾ 정보의 단순 전달자의 역할은 감소하였지만, 가공하고 검색해주는 역할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즉, 여타 매개축소는 달리, 전통적인 매개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동시에 매개자로서의 OSP가⁷⁵⁾ 대두

72) 더구나 일반인의 경우 작곡가나 실연자인 가수를 직접 만나서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73) 예컨대 MP3의 등장으로 음반회사들이 특히 염려하는 것은 음반에 대한 해적행위 뿐만 아니라, 음반산업경쟁이 치열해지고, 음악가들이 음반회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이대희, 2002, pp.379~380).

74)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시대의 매개축소는 일반적인 의미의 매개축소와 차별화된다.

75)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웹사이트 호스팅(website hosting), 검색엔진(search engine), 전자게시판 시스템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지칭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당연히 포함되며, 그 외에도 인터넷이 아닌 기업 내에서만 연결되는 폐쇄적인 형태의 네트워크 서비스 등 모든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서비스제공자 이에 해당한다(박준석, 2006, p.8).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포함될 것인지는 향후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그 기준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되었다. 누구든지 저작물을 창작·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적인 최종사용자와 기술적 환경을 제공하는 OSP가 저작권법의 규율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기존 질서에 만족하고 있던 권리자들은 새로운 유통 구조로 인한 이익감소를 걱정하였고, 이는 새로운 매개자에 대한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OSP는 크고 작은 저작권 분쟁에 피고가 된 바 있다. 권리자는 새로운 매개자의 등장 자체를 반기지 않거나 일반 대중의 저작권 침해를 일일이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OSP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다.

저작권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OSP는 스스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제3자에게 저작권 침해 수단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OSP를 통한 콘텐츠의 유통은 사회 전체로 보아 잉여 이익을 생산하고, 사회적 문화적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 야기하는 혜택과 책임을 OSP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참여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법의 목적과 직결되는 저작권법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OSP의 ‘간접 침해론’을 논의하면서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면책 규정’을 마련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독려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법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인터넷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

(1) OSP의 책임과 보호

① OSP 책임론

현행 저작권법에는 2006년 12월 개정으로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제104조 외에는⁷⁶⁾ OSP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적극적인 저작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⁷⁷⁾ 때문에 그 동안 OSP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76) 제104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만 적용되는데, OSP책임의 근거를 입법으로 정한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입법기술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박준석, 2006).

77) 저작권법에 OSP의 책임과 관련된 규정인 제102조와 제103조는 책임의 근거규정이 아닌 감면규정을 유의해야 한다.

학계에서의 논의로는 OSP에게 삭제권을 부여한 약관이 있을 경우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의무를 인정하자는 견해(이충훈, 2000), 부작위범의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18조를 근거로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공법 규정을 근거로 하자는 견해(염동신, 2001),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0조로 충분하다거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제760조 제1항을 근거로 할 수 있다는 견해(안기순, 2002) 등도 있었다.

법원은 초창기 BBS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다룬 판결들에서부터 소리바다 손해배상 1심판결에 이르기까지 OSP 책임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소리바다 가처분 이의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과(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소리바다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이르러(서울고등법원 2005. 1. 25 선고 2003나80798 판결) 교사자나 방조; 대법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을 책임의 근거규정으로 지적하면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② OSP의 책임 제한

OSP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인정하게 되면, 결국 OSP가 게시물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기술 진보를 문화발전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OSP의 합법적 활동 영역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제도적으로 OSP의 면책(Safe Harbor) 조항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우리나라는 2003. 5. 27.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OSP의 서비스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책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제102조, 제103조).⁷⁸⁾

저작권법 제102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78) 이 규정은 저작권 영역에 대해서만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원용할 수가 없다. 2007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같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EU의 전자상거래 지침, 독일의 온라인서비스법, 일본의 서비스제공자책임제한법 등의 경우 단일 조항으로 저작권침해, 상표권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 일반의 침해에 대한 감면을 다루고 있다.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제1항) 중단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제되도록 하였다(제2항).⁷⁹⁾

제103조는 소위 'Notice & Takedown 조항'이라 불리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의 규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OSP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소명을 받은 경우, 즉시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고 복제 전송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항). 반대로 복제 전송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고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권리 주장자에게 통지하고 복제 전송을 재개하도록 하면서(제3항)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책임이 감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권리처리의 어려움

① 무방식주의와 권리자 탐색

권리처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10조 제2항)'고 하여 이른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⁸⁰⁾ 그러므로 저작권 등록에 따른 법률적 효과는 클 수 없으며 이는 등록률 저조로 이어져 권리자 탐색을 위한 공시수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설령 창작자가 누구인지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현재 권리자를 탐색하는데 또 다른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 탐색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거래비용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② 권리인증

저작권은 공시제도가 완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정

79) 이에 대해서는 스스로 중단시킨 경우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제2항의 경우 필요적으로 면제되도록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오병철, 2003).

80) WTO/TRIPs를 통해 국제법적 표준으로 자리 잡은 베른협약에서 무방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우리나라 역시 베른협약 가입국이고, 저작권의 발생에는 특허나 상표 등과 달리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당한 권원'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되었듯이,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에도 실제로는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 열풍이 불던 시기에 중국, 일본 등지에서 권리자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저작물의 수출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정당한 권리자여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확인해 주는 '권리 인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인증을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33호)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기에 이르렀다(제56조).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주고 담보해 줄 수 있다면 저작물 이용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상태로 보인다. 모든 저작물에 대해 진정한 저작권자,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확인할 방법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가 의문시된다. 실제로 법률 시행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권리 인증은 아직 실현이 되지 못했으며, 최근 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와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오승중 외, 2009).

③ 집중관리제도

집중관리제도는 집중관리단체가 특정 분야의 저작권을 일괄 집중하여 관리함으로써 권리자에게는 관리의 편리함을 주고 이용자에게는 이용의 편리함을 주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집중관리제도가 없다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매번 협의를 통하여 이용 조건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저작권자를 찾아서 직접 연락을 하고 허락을 받는 등에서 상당한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창안된 것이 바로 권리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집중관리제도이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는 저작권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위해서도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저작권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저작자로서는 창작의욕이 고취될 것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용이하게 허락을 받을 수 있다면 저작물의 이용과 2차적 창작, 안정적 사업수행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집중관리와 관련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대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정부는 동일 분야에 사실상 하나의 단체만을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2000년 이전까지 겨우 3개의 단체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디지털환경의 발달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양적 팽창을 이루었고 현재 12개 단체가 저작권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음악 분야에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을 신탁범위로 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저작인접권을 신탁범위로 하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KAPO)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KAPP)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반면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은 특별한 규제 없이 법에서 규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에 의하여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 힘입어 2006년 말 현재 528개 업체가 신고되어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2000년 이후 들어서만 9개의 단체, 2005년과 2006년에만도 공공콘텐츠, 영상저작물, 뉴스저작물 관련해서 4개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개황에서 보듯이 국내 대부분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아직 그 업무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상태이며 성과적 경험 또한 그러하다(이영록, 2007).

〈표 10〉 우리나라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구분	단체	관리분야	신탁허가	기타
저작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작사·작곡가, 음악출판사)	'88. 2. 23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 연극, 미술, 사진	'89. 3. 16	교과서보상금수령단체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시나리오	'88. 9. 20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	'01. 9. 12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어문저작물의 복사, 전송	'00. 11. 14	도서관보상금 지정단체('03. 10. 17)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공기관의 디지털콘텐츠	'05. 10. 10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저작물의 전송권	'05. 11. 9	
	한국영상산업협회	비디오, DVD의 공연권	'05. 11. 9	
	한국언론재단	뉴스저작물의 온라인상 복제·전송권	'06. 6. 7	
저작인접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00. 11. 14	방송보상금 지정단체('88. 10. 14)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등의 권리)	'02. 2. 20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반제작자의 복제·전송·배포권	'03. 3. 17	방송보상금 지정단체('01. 12. 27)

2. 사례 분석

1)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 저작권

검색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의 콘텐츠 유통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 검색을 통해 정보의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이용자는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남기기도 하는데, 불법 정보의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검색 사업자가 웹사이트를 크롤링(crawling)하고 DB를 구축하거나 효율적 검색을 위해 캐싱(caching)을 하면서 복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의 캐시데이터 저장과 링크에 대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Field v. Google), 이미지 데이터의 썸네일이미지 게시에 대해서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대체적으로 검색사업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Perfect10 v. Google).

우리나라에서도 썸네일 이미지와 관련한 사례가 있는데 법원은 미리 보기 이미지(이하 썸네일 이미지) 크기 등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최근 콘텐츠 유통에 있어 검색 서비스 사업자의 영향력이 막대해지면서, 사업자의 사회적 의무가 강조되고 있고 저작권 관리와 교육 문화 형성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제17대 국회의 진수희 의원 대표 발의안과 김영선 의원 대표 발의안이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되었으나, 18대 국회에 들어서 김영선 의원이 17대 당시 발의하였던 안과 거의 동일한 법률안을 제안하여 2009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의안번호 1800255). 주요 내용은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안 제3조), 편집된 검색결과를 구분(안 제6조), 인기 검색어 집계 기준을 공표하고 순위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갖출 것(안 제7조), 신고하기 버튼 제도 운영(안 제9조) 등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법률로서도 규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⁸¹⁾

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08. 12. 28, 이하 ‘정부제출안’)에서도 검색사이트를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표 11〉 현행 법률에 의한 검색사이트 규제 내용

근거법률	주요 규제 내용	규제기관
전기통신사업법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21조) ▪ 사업의 양도·양수, 휴지·폐지 등의 신고(제25조, 제27조) ▪ 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금지(제34조의5) ▪ 통신비밀 보호, 통신자료제공사실 등 관련자료 비치 및 년 2회 통신자료제출현황 보고(제54조)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의 보호(제22조~제3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광고금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정보보관(제42조~제43조)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제44조의2) ▪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조치 의무(제44조의5)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제44의7) ▪ 정보보호 안전진단 및 결과 제출(제46조의3) ▪ 자료 제출 의무(제64조)	

자료: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 검토 보고서(2009)

(1) 미국의 판례

① Field vs. Google(Field v. Google, Inc. 412 F.Supp.2d. 1106(D.Nev.2006))

네바다 주 변호사인 블레이크 필드(Blake A. Field)는 2004년 1월 자신이 창작한 어문저작물 51개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후 그 저작물들의 저작권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였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Google과 같은 검색엔진들이 해당 웹페이지들의 저작물들에 대한 자료를 자동적으로 수집하게 되고 그 자료들은 검색 결과에 노출된다. 필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메타 태그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수집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아무 조치 없이 자신의 웹페이지에 게재된 저작물들이 Google의 검색로봇에 의해 수집, 저장되도록 노출시켰다. 필드의 저작물들은 Google의 서버에 캐시 데이터로 저장되었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검색 결과와 함께 저장된 캐시 데이터의 링크를 제공하였다. 필드는 Google이 자신의 저작물을 캐시 데이터로 저장하고 검색 결과에 게재되는 것을 확인한 후, 2004년 4월 Google을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그러나 Google이 검색서비스의 결과로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한 것은 그 이용의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필드가 메타 태그 등을 이용해 Google의 기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묵시적 이용허락 및 금반언 원칙 위반 등의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또 검색서비스의 캐시 데이터 이용이 대체적,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시스템 캐시에 관한 면책 조항인 DMCA 제512(b)가 적용되어 필드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② Perfect10 vs. Google(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487 F.3d 701(Cal. 2007))

남성잡지를 발행하는 Perfect10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누드 모델 등의 사진을 회원제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Perfect10의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개인 회원들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사진들을 자신들의 블로그 등 웹상에 업로드하였고, 검색엔진인 Google의 검색로봇이 블로그 등에 게시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일부는 캐시 데이터로 저장하는 동시에, 해당 이미지들을 검색 결과로 표시하면서 검색 결과 화면에 이용할 목적으로 원본 이미지보다 크기가 작은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하여 검색 결과에 함께 게시하였다.

Perfect10은 이후 웹사이트로 제공하던 사진을 모바일 기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Google이 검색 결과를 통해 유료로 판매하는 사진의 원본 링크가 제공되는 물론, 작은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가 Google 서버 내에 생성, 저장되어 검색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모바일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Google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Perfect10은 먼저, 썸네일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은 전시권의 침해이고, 인라인링크(In-line linking)⁸²⁾에 의한 결과표시를 검색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배포권의 침해이므로 Google이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Google은 공정이용을 들어 항변하였다. 이 사안에서도 법원은 DMCA 제512(d)조 및 제512(b)조⁸³⁾

82) Google의 경우 이미지 검색 결과를 framing 형태로 표시해 준다.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를 다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에 연결하여 하나의 창에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The process by which the webpage directs a user’s browser to incorporate content from different computers into a single window is referred to as “in-line linking.”);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3d 811, 816(9th Cir. 2003).

를 적용함으로써 Google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에서는 Google이 애드센스(adsense)를 통한 수익을 얻고 있던 점, 썸네일의 제공으로 모바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을 들어 Google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미지 검색엔진에서 해당 이미지의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썸네일 이미지의 변형적 속성이 다른 부수적 대체사용 또는 상업적 요소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Perfect 10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가설적 추론에 의해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함으로써 이미지 검색서비스에서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우리나라의 판례

①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이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저작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작품 중 69점을 복사한 다음, 검색을 위하여 게시된 썸네일 이미지 검색 결과 화면에 게시하였다.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저작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본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와 일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며, 이를 통해 원본이미지를 간단히 저장·복사·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① 원본이미지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한 점, ②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저작물과 동일한 원본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점을 들어 이러한 이용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②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법원은 검색을 위한 썸네일 이미지의 게시가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 즉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① 피고의 검색사이트에 썸네일 이미지의 형태로 게시된 사진작품들은 원고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표된 것인 점, ②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한 주

83) 17 U.S.C.A. 512(d) Information Location Tools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Hyper-text Link, Directory, Index 등의 방법이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어도 그 책임이 제한된다.
17 U.S.C.A. 512(b) System caching 일시적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이 제한된다.

요 목적이 보다 나은 검색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인 점, ③ 사진을 전시나 판매를 위해 게시 한 것이 아닌 만큼 그 상업적 성격이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점, ④ 이용된 이미지의 크기가 원본에 비해 훨씬 작으며(가로 3cm, 세로 2.5cm 또는 가로 4cm, 세로 3cm), 따라서 감상용으로 이용되기 어려워 저작물의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원본 사진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여 검색사이트 이용자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들고 있다. 즉 검색서비스에 이용되는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판례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다면,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에서와 같이 저작권자의 원본 이미지(또는 원본과 유사한 크기, 화질의 이미지)를 자신의 사이트에서 인라인링크나 프레임링크를 통하여 그대로 제공하는가의 여부이다. 검색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검색이미지의 제공으로 저작권자의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웹사이트로 링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당한 이용’임을 인정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나76598 판결(다음커뮤니케이션 썸네일 사건)

본 판결에서도 검색엔진의 썸네일 이미지 이용이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⁸⁴⁾ 크기가 큰 이미지에 관하여는 저작권침해로 보았다. 즉 큰 이미지는 썸네일 이미지와 달리 그 크기가 원고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원래의 사진 작품 크기(약 369×278픽셀 상당)와 유사한데, 이러한 큰 이미지는 인용된 내용과 분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내용과 분량일 뿐만 아니라 원래의 사진 작품이 가지는 심미감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그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목록화 된 썸네일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큰 이미지의 게시는 그 공공적인 목적을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25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84)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④ 서울고등법원 2006. 12. 26. 선고 2006나24157 판결

인용조항과 관련된 또 다른 사안으로, 사건의 피고인 케이티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미지를 복제·전시한 행위에 대하여, 이용 목적에 비추어 인용의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① 이미지의 크기가 작지만 상당한 정도의 내용과 분량에 해당하는 점, ② 케이티가 전시한 이미지가 손쉽게 파일형태로 복제, 배포될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인터넷 사용자들이 복제 등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④ 검색결과화면에 상당한 크기로 표시되어 사진으로서의 심미감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케이티가 이미지를 게시한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OSP와 간접침해

오늘날 저작권의 중요한 논의 대상 중 하나는 OSP의 ‘간접침해론’이다. 제3자의 침해에 대해 간접 책임을 지는 이론이 IT 기술의 등장에 따라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 양태와 OSP의 역할을 고려할 때 ‘간접침해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냅스터와 그록스터,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등 ‘MP3 사태’를 통해 간접침해에 대한 법원의 평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UCC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해당 사이트 회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소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리바다의 경우 대부분의 유통 콘텐츠가 불법 저작물이었던 반면에 창작성이 가미된 UCC는 원칙적으로 불법 저작물이 아니라 오히려 웹2.0시대의 꽃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세계 최대의 UCC 사이트인 유튜브는 비아콤(Viacom)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당했는데, 이 사건의 결과는 방통융합시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저작권법의 부담을 시사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계류 중에 있는데, 비슷한 시기 또 다른 UCC 사이트인 베오(Veoh)에 대해 취해진 UMG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OSP 면책

조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유튜브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 소리바다 사건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사건은 IT기술의 변천과 그에 따른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보여주는 소위 일련의 ‘시리즈’로 평가되고 있다. 최초의 소리바다1에 대하여는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인정되었고, 그 후 슈퍼피어 방식을 표방한 소리바다3에 대해서도 방조책임을 인정하며 기술적 방식에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였다. 최근 등장했던 소리바다5는 필터링 기술을 채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권리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OSP의 책임 제한 가능성과 관련한 논의에 다시한번 불을 지폈다(오승중·최진원, 2008).

소리바다5는 소리바다3에서 채용했던 슈퍼피어, 슈퍼노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소리바다’와는 달리 몇 가지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들을 도입하였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은 해쉬값 대조 기술과 음악인식 기술을 이용하는 ‘필터링’이었다. 나아가 소리바다5는 여기에서도 걸리지 않는 허락받지 않은 음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 파일 시스템(Green-file System)’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음원 공급계약을 하지 않은 권리가 소리바다의 회원사로 가입한 뒤, 자신의 음원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음원 파일이 필터링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⁸⁵⁾ 먼저 소리바다5와 같은 P2P 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법 제102조가 정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OSP 책임의 면책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는, 적극적 필터링을⁸⁶⁾ 상용화한 서비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극적 필터링만을 취하고 불법 파일의 유통을 방관한 소리바다5가 기술적 불가능을 주장하는 것은 동조 제2항의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거나, 더 이상 침해를 방지·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소리바다5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85) 소리바다5 가처분사건 항고심결정(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라1245).

86) 권리가들이 이용허락을 한 음원들의 파일에 대해서만 파일공유를 허락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고〉 저작권법 제102조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이 필요적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온라인서비스 자체는 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용자의 복제·전송행위 중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함으로써 그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은 침해사실을 알고 저작권 등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2) 비아콤(Viacom) 사건

2007년 3월 미국에서 Viacom이 유튜브를 상대로 자사의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⁸⁷⁾ Viacom은 유튜브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권한 없이 업로드 하고, 이를 다른 이용자들이 유튜브에 접속하여 보게 되므로 복제권, 배포권 및 공연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직접 침해 주장과 함께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 및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등 간접 침해 책임의 부담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유튜브는 간접 침해 책임에 대하여는 DMCA 제512조(c)에 의한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을 들어 항변하였다. 직접 침해 책임에 대하여도 동영상의 업로드 및 게시 기능을 제공할 뿐인 사업자는 이용자들의 직접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이용자들의 행위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며, 그 결과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ISP의 면책조항의 적용 가능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침해 방지의 효율을 가장 높이려는 법경제학적 측면에서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어 그 판단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최승수, 2008).

87) Viacom International, Inc. V. YouTube, Inc., No. 07CV2103(S.D.N.Y. March 13, 2007).

(3) 베오(VEOH NETWORKS) 사건

유튜브와 Viacom의 분쟁이 일어난 시기와 비슷한 때인 2007년 9월, Universal Music Group(UMG)은 또 다른 비디오 공유 사이트인 Veoh를 상대로 자신들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년 동안 진행된 이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베오닷컴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⁸⁸⁾

법원은 첫째, 베오닷컴은 이용약관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분명히 고지한 점, 둘째,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notice)이 있으면 이를 이내에 즉각 삭제(take down)한 점, 셋째, 지난 2006년부터 베오닷컴은 계속되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해쉬 값’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2008년에는 자체 기술적보호장치(Audible Magic filtering)를 적용했다는 점, 넷째, 베오닷컴은 저작권 위반 콘텐츠에 대해 수천 개의 콘텐츠를 스스로 삭제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Veoh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고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아직 계류 중인 Viacom과 유튜브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3) 자유이용과 권리처리

웹 2.0시대 저작물의 창작 유통의 주체인 ‘이용자’ 공중(公衆)은 창작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거나,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시키고자 할 때 권리 처리를 직접 해야 한다. 콘텐츠가 집단지성의 특성을 띠게 되면서 다수의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으며,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사전에 자유 이용의 범위를 법률로 정해 놓은 것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이용의 일반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조항이 어느 정도 일반조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소위 ‘미쳤어’ 동영상 사건은 과거 인용 조항에 근거하여 저작권 제한이 문제되었던 ‘해피에로크리스마스’ 사건과 비교되면서 공정이용, 자유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88) UMG RECORDINGS, INC., et al. v. VEOH NETWORKS INC., et al., No CV 07-5744 AHM(AJWx September 11, 2009)

미국은 대표적으로 ‘일반 조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저작권법 제 107조에 fair use 일반 조항을 두어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그 짐을 미루고 있다. 결국 공정이용 해당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어떠한 저작권법 체제도 이용자의 자유이용과 권리 처리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법에 의한 해결은 분쟁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이 이용된 UCC의 유통을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켜 상생의 길을 찾은 JK Wedding Entrance Dance 사례는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협의를체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 ‘해피에로크리스마스’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 자 2004카합344 결정)

2003. 12월 경 제작, 배급한 영화 <해피 에로크리스마스>의 영화 속 TV화면에, 1999년경 개봉된 이와이 순지 감독의 일본영화 <러브레터>의 영상이 약 30초간 현시된 것에 대해 <러브레터>의 제작사인 후지 텔레비전(이하 후지)이 튜브엔터테인먼트, 튜브픽처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후지는 튜브픽처스 주식회사가 제작한 “해피 에로크리스마스”라는 영화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면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영화를 국내외 영화관, 영화제, 영화마켓 등에서 상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상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각 장면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영화를 비디오, 디브이디(DVD) 등을 포함한 일체의 형태로 복제, 배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복제, 배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중방송, 인터넷영화,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일체의 형태로 방송, 전송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송, 전송하거나 기타 인쇄물, 출판물 기타 모든 상품화된 상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조,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청중의 입장에서 인용 부분의 삽입으로 인하여 인용영화가 피인용 영화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그와 같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반 사정을 모두 모아 보면, 피신청인들이 인용 부분을 인용 영화에 삽입함으로써 피인용영화에 관한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는 것

은 아니다'고 결정하였다.

(2) '미쳤어' 동영상 사건

2009년 6월, 우모씨는 자신의 자녀인 5세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육성으로 따라 부른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해당 동영상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네이버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네이버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임시조치)했다.

우 씨는 네이버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자신의 동영상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재게재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네이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우씨는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업로드한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음악저작권협회와 재게재를 거부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⁸⁹⁾

(3) 렌즈(Lenz) vs. 유니버설뮤직⁹⁰⁾

지난 2007년 2월, 유튜브에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프린스(Prince)의 'Let's Go Crazy'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동영상은 스테파니 렌즈(Stephanie Lenz)가 'Let's Go Crazy #1'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이었다.

2008년 6월 4일, 'Let's Go Crazy'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UMPG(Universal Music Publishing Group)은 이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유튜브에 삭제 요청(takedown notice)을 했고, 유튜브는 이를 렌즈에게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에 대한 조치임을 통보하고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렌즈는 '공정이용'을 근거로 들어 유튜브에 복원을 요청했고 유튜브는 해당 동영상을 즉각 복원시켰다.

렌즈는 그러나 며칠 동안 자신의 동영상이 삭제된 것에 대해 분을 삭이지 못했고 UMP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렌즈가 소송을 제기하자 UMPG는 렌즈의 소송을 기각

89) 2009. 9 현재 법원 계류 중.

90) Stephanie Lenz v. Universal Music Corp., No 5:07-cv-03783 JF(N.D.Cal. filed Aug. 20, 2008).

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은 “삭제 요청을 하려면 게시물이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 지도 권리자가 고려해야 한다”며 UMPG의 기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UMPG는 삭제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공정이용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살펴봐야 한다면, 저작권자들은 잠재적 침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작물의 특정한 이용이 공정이용을 구성하는지의 문제는 사실집약적인 심리이며, 또한 법원이 최종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줄지는 저작권자들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항소하였으나(김경숙, 2009), 이 또한 기각되었다.

(4)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해결

2009년 7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또 한 번 화제가 되었다. ‘JK Wedding Entrance Dance’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한 결혼식에서 전형적인 신랑 신부의 입장 대신 하객들과 함께 Chris Brown의 Forever라는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며 등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특별한 결혼식 영상은 유튜브에서 1,200만 번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⁹¹⁾

주목할 점은 위의 렌즈 사례와는 달리, 배경음악이었던 Forever의 저작권자에 의한 및 그에 따른 유튜브의 삭제 조치 대신 그 영상과 유튜브페이지 모두에 해당 곡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아이튠스(iTunes)와 아마존으로 직접 연결되는 클릭투바이(Click-To-Buy) 링크를 광고 형식으로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이후 공식블로그를 통해 해당 영상을 통한 광고 클릭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음을 밝혔으며, Forever는 이미 1여년 전에 발매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식 영상의 급속한 파급 이후 아이튠스 싱글 부문 4위, 아마존의 베스트셀링 MP3 순위에서 3위에 다시 오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⁹²⁾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로, 유튜브 등에 올라온 일본 오키나와의 쿠로시오 수족관에서 촬영된 영상이 있다.⁹³⁾ 이 수족관 영상에는 바르셀로나(Barcelona)라는 밴드의 Please Don't Go라는 음악이 배경으로 사용되었으며,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백만 번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역시 등의 이용 제한 조치 대신, 바르셀로나는 자신들이 직접 촬영

91) JK Wedding Entrance Dance, <http://www.youtube.com/watch?v=4-94JhLEiN0>; 2009. 9. 20 기준 조회 수는 2천5백만 이상이다.

92) YouTube Biz Blog, ‘I now pronounce you monetized: a YouTube video case study’(2009. 7. 30), http://ytbizblog.blogspot.com/2009/07/i-now-pronounce-you-monetized-youtube_30.html

93) Kuroshio Sea-2nd largest aquarium tank in the world-(song is Please don't go by Barcelona), <http://www.youtube.com/watch?v=u7deClndzQw>

한 인터뷰 형식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⁹⁴⁾ 코멘트를 대신하는 등 이를 이용해 앨범 판매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 두 사례는 UCC 등이 야기하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보다는, UCC가 새로운 수익창출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써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⁹⁵⁾

3. 해외 주요국의 저작권 제도 정비 현황

1) OSP의 저작권법적 지위

(1) 간접침해론

광의의 간접침해는 널리 직접 침해를 제외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서 방조하거나 가담한 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오승중, 2007).

간접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별도의 조문을 만들어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직접침해’로 의제하거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이론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순수한 간접침해 책임’으로 보는 견해 등 세 가지 방향이 제시되어 왔다.

① 입법적 조치-영국

영국은 ‘유럽공동체 특허조약’(Community Patent Convention, CPC) 제30조에⁹⁶⁾ 부응하여 1977년 특허법에서 간접침해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였는데(영국 특허법 제60조 제2항), 저작권법에도 이와 유사하게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은 송신행위, 저작권을 침해하는 실연을 위한 장소의 제공/기기의 제공행위, 복제방지장치

94) Barcelona's Response to the Aquarium Video, <http://www.youtube.com/watch?v=Xqlpa3EWsok>

95) BusinessWeek, 'Will Viral Video Kill the Music Video?', 2009년 8월 3일, http://www.businessweek.com/technology/content/aug2009/tc2009083_487420.htm

96) 현재는 제26조이다.

의 무력화 기기의 제조행위, 허락을 받지 않은 수신을 위한 장치의 제조행위 등을 언급하고 있다.⁹⁷⁾

② 순수 간접책임(기여책임, 대위책임)-미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P2P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다양하게 다루어졌는데, 주로 판례법으로 발전한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으로 논리가 구성되어 왔다.⁹⁸⁾ 구체적으로 Playboy Enterprises Inc. vs. Frena 사건을⁹⁹⁾ 시작으로 Sega Enterprises Ltd. vs. Maphia 사건,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s. Netcom 사건,¹⁰⁰⁾ A&M Records, et al. vs. Napster 사건 및 최근의 Grokster 사건 등의 판결을 예로 들 수 있다.¹⁰¹⁾

이들 사례는 저작권법적으로 중요한 논점들을 다수 제시하였지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은 미국과 달리 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제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¹⁰²⁾

③ 직접 책임-일본

일본의 법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간접침해 그 자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도 기여책임이나 대위책임에 관한 규정도

97) 영국 저작권법 제24조~제26조, 제298조 참조. 제22조부터 제26조에 걸쳐 저작권 간접침해 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22조와 제23조는 직접 침해행위에 의해 작성된 침해물을 확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다.

98) 미국에 있어서 기여책임이나 대위책임에 관한 법리는 판례법을 통하여 상당히 정밀하게 발전하여 왔다고 평가된다. 간접침해와 관련된 판례로서는 오래 전 1886년의 Hayper v. Shoppell 판결로부터 시작하여 1971년의 Gershwin Publishing Corp. v. Columbia Artists Mgt., Inc. 판결을 거쳐 Sony(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57 U.S. 1116, 102 S.Ct 2926(U.S. Cal. Jun 14, 1982).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사건과 최근의 Napster 사건 및 Grokster 사건 판결에까지 일련의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안의 상세한 설명과 DMCA의 내용은 오승중(2007, pp.1191~1199) 참조.

99) Playboy Enterprise, Inc. v. Frena, 839 F.Supp. 1552(M.D. Fla. 1993).

100)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com On-Line Communication Services, Inc., 907 F.Supp. 1361(N.D. Cal. 1995).

101) ‘기여책임’이나 ‘대위책임’과 같은 이른바 간접침해 유형의 책임이론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의 민법체계의 차이점에 대한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오승중, 2007, pp.1171~1172).

102)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에 따른 책임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각국의 제도와 판례를 구분별하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체계에 비추어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연구·검토한 연후에 취사선택 과정을 거쳐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없다. 때문에 간접침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일찍이 저작권정보센터 산하에 ‘기여침해 간접침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등 간접 침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¹⁰³⁾ 동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식의 기여책임이나 대위책임이론은 일본에 적합치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에 관한 상당히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왔지만,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의 관계에 관하여 양자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고, 그것이 중첩되는 경우 양자의 경계 및 그 경계를 이루는 기준도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¹⁰⁴⁾

대신 ‘저작물의 사용주체성’이라는¹⁰⁵⁾ 개념을 규범적으로 파악하여 간접침해자를 직접침해자로 볼 수 있는 이론 구성을 시도하였다. 실제로 일본의 판례를 살펴보면 압도적 다수의 사건들이 넓은 의미의 간접침해 당사자들을 ‘직접침해’로 접근하고 있으며, 카바레나 노래방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음악저작물의 공연 등에 관하여 해당 업소를 경영하는 업주의 책임 여부가 ‘직접주체성’(直接主體性)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¹⁰⁶⁾

이 같은 직접 침해 이론은, 자신이 직접 침해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침해행위에 도움을 준 자에게 직접 침해자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에 있어서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2) OSP의 책임 제한

대량 정보가 유통되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OSP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

103) 각국의 이론과 제도, 판례를 비교하는 한편, 일본 법제도 내에서의 도입 가능성 및 이론구성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위원회는 학계, 변호사, 관계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로 구성되어 제1회 위원회가 개최된 이래 도합 7회에 걸친 집중적인 토의 끝에 최종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104)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제정법의 조문적 해석으로부터 연역적으로 결론을 구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미국 판례의 시사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 놓고 있기도 하다(寄與侵害・間接侵害 委員會: 오승중, 2007, p.1172에서 재인용).

105) 관리/지배와 이익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요구한다.

106) ‘캐츠아이 사건’(일본 최고재판소 1988. 3. 15. 제3소부 판결, 民集 42권 3호 199면, 판례시보 1270호, 34면) 노래방 경영자를 저작권 침해의 주체라고 하면서 직접 침해를 인정. 이후의 하급심 판결에 있어서 영업의 실태가 다소 다른 노래방의 경우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나고야 고등법원 결정 1960. 4. 27. 下民集 11권 4호 940면, 판례시보 224호, 15면. 히로시마 지방법원 후쿠야마 지원 판결 1986. 8. 27. 판례시보 1221호 120면 동경고등법원 1999. 7. 13. 판결 판례시보 1696호, 137면 등 참조).

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면책 조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체적 형태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면책 조항의 입법은 미국, EU, 일본 등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① 미국

미국은 1998년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물의 유통이 늘어나자, AOL, Yahoo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면책시켜주기 위한 특별조항(safe harbor rules)을 포함하는 DMCA를 통과시켰다.

OSP는 가입자 중 반복적 침해자는 일정한 조건하에 배제시켜 나가야 하며(termination policy) 표준적인 기술적 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더해 기술적 유형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¹⁰⁷⁾ 개별적 면책요건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는 경우 면책되도록 규정하였다(17 U.S.C. §512).

미국은 DMCA 외에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에서 선의의 자발적 조치로 음란 정보 등을 차단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시키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참고> Notice & Takedown

저작권자 등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사실을 발견하고 OSP에게 복제 전송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를 미국에서는 침해주장의 통지(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라고 한다. 이러한 통지절차의 필요성은 1995년 미국 Netcom 판결(Religious Technology Center vs. Netcom, 907 F.Supp. 1361(N.D.Cal 1995)에서 피고 OSP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제시된 요건인데, DMCA를 통해 명문화되었다(17 U.S.C 512(c)). DMCA의 이 규정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에 수용되었다. 하지만 EU 지침이나 독일 온라인서비스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다(정상조, 2007, p.984).

107) 4가지 유형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통해 내용물을 전달하는 기능(conduit), 이용자가 요청한 내용물 전달을 신중하기 하기 위한 기능(caching), 이용자가 ISP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내용물을 저장하는 기능(storage),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주는 기능(information location tools and links)이다.

② EU

EU 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 Directive)은 OSP의 서비스 유형을 단순한 도관(mere conduit), 캐싱, 호스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면책요건의 구체적 요건은 DMCA와 거의 동일하다. DMCA와 차이점은 linking에 대해서는 책임면제규정이 없다는 점과 소위 Notice & Takedown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③ 독일

독일의 1997년에 제정된 구 ‘온라인서비스법(Teledienstgesetz:TDG)’은 세계최초로 OSP 책임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정상조, 2007).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를 서비스제공자가 인식하였고 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접속만을 제공한 경우는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2001년 EU의 전자상거래 지침을 국내입법하기 위해 TDG를 개정하였다. 지침의 내용을 TDG 제9조 내지 제11조에 그대로 수용하였고, OSP는 자신에 의해 전송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여부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확인하였다(제8조 제2항).

④ 일본

일본은 2001년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2002년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법에서 독일의 TDG와 마찬가지로 권리 침해 일반에 OSP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권리의 침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정보 발신에 대해 OSP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3조 제1항). 아울러 송신 방지 조치에 대한 책임도 필요한 한도 내인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면책된다. OSP가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침해 정보를 표시하여 송신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침해정보 발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 여부를 조회한지 7일간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송신발신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3조 제2항).

2) 권리처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1) 무방식주의

베른협약은 ‘이러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향유와 행사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하여 무방식주의를 밝히고 있다(제5조 제2항).

2009년 10월 현재 베른협약 가입국수는 164개국에¹⁰⁸⁾ 이르고 있으므로 무방식주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방식주의를 취하였던 미국도 1989년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등록은 저작권 보호의 필요조건이 아니다’(제408조(a))라고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의 완성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참고>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이러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향유와 행사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The enjoyment and exercise of these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formality ; such enjoyment and such exercise shall be independent of the existence of prote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

(2) 저작권 등록제도¹⁰⁹⁾

우리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등록은 권리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추정력을 부여함으로써 상대방의 과실입증이나 침해된 저작물의 창작사실 등의 입증에 도움이 되고, 권리 변동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받을 뿐이다.¹¹⁰⁾

때문에 권리자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자신의 저작권을 등록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어서 저작권 등록부의 일반적 공부(公簿)로서의 공시력은 미약한 수준이다.¹¹¹⁾

108) http://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lang=en&treaty_id=15

109) 이하 내용은 김현철(1998, pp.20~49) 참조.

110) 등록의 저작권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오승중·최진원·박민정(2009) 참조.

111) 최근 등록건수가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나, 여전히 창작 작품 대비 등록률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표 12〉 저작권 등록의 효과

추정력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보호기간 연 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

자료: 최진원·김학선·이종민(2009)

① 미국

미국은 유럽과 달리 1909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권 등록 제도를 도입하면서 등록을 저작권 침해 소송의 제소요건으로 규정하여 ‘방식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은 1976년 개정법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베른협약 가입을 계기로 1988년 베른협약 이행법을 제정하면서, 미국을 본국으로 하지 않는 베른협약 저작물에 대한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등록을 제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외국 저작물에 대하여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였다.

저작권 등록 업무는 저작권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저작권청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 속해 있다. 특히, 저작권청의 주요 업무는 등록업무이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등록을 장려하려는 이유는, 공시 효과의 확보 목적이 크다. 저작권의 형성 및 권리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등록을 통한 저작권 공시 효과가 보장되면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 관계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제410조 이하에서 저작권 등록에 따른 효과를 정하고 있는바, 저작권을 등록하면 그 등록사항에 대하여 추정력 유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저작물이 맨 처음 발행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등록을 한 경우 모든 재판절차에 있어서 등록증은 그 등록 내용에 대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된다.¹¹²⁾

112) 5년이 지난 후 등록을 한 경우 등록 내용의 증거력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미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당해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침해 소송 제기의 법정 요건이며(제411조(a)),¹¹³⁾ 법정손해배상액이나 변호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저작권 등록이 아닌 저작권의 이전 등 모든 형태의 배타적인 권리변동에 관하여서도 문서등록(recordation)이 가능한데, 저작권 관련 문서(document pertaining to copyright)에는 저작권의 존재, 범위, 존속기간, 이전 분할, 행사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문서가 포함된다.

이러한 문서등록에도 법정 효력이 부여되는바, 저작권에 관한 문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고시한 것으로 보는 법정고시(의제통지; constructive notice)의 효력과,¹¹⁴⁾ 저작권의 이중 이전의 경우에, 선등록이 후등록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② 캐나다

미국과 유사한 등록제도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캐나다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캐나다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도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등록에 대하여 추정력 및 대항력 등의 일정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¹¹⁵⁾ 저작권 등록 업무는 캐나다 지적재산권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내의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다.

③ 일본

한편, 일본도 저작권 발생과 관련하여 무방식주의를 취하면서도 일정한 권리 변동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공시하고 저작권 존속기간을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 하에 저작권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등록 업무는 문화청 저작권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역시 대항력과 추정적 효력을 부여한다.¹¹⁶⁾

113) 미국을 본국으로 하지 않는 베른협약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 소송의 경우는 제외된다.

114) 다만, 당해 문서 또는 문서에 첨부된 자료가 특정 저작물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하고, 당해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법정고시적 효력은 저작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그 담보력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115) 캐나다 저작권법 제39조(1), 제39조(2), 제53조(2), 제54조(1), 제57조(3) 참조.

④ 독일

독일은 이들 국가와는 다르게 저작자의 실명 등록 제도만을 두고 있다. 이는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청이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저작물이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때에는 저작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지만, 실명 등록을 하면 실명으로 공표된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발생한다.¹¹⁷⁾

(3) 집중관리단체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영국의 앤여왕법이 1709년에 제정되었고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효시라고 알려진 프랑스의 SACEM(Société des auteurs, compositeurs et éditeurs de musique)은 1851년 설립되었으니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제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¹⁸⁾ 저작물이 국경을 넘나들며 대량으로 이용되는 오늘날 환경에서는 권리 처리의 편의를 위한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신탁관리업이나 대리중개업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나라마다 달라서 영미법계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자유업종으로 하여 국가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는 한편, 대륙법계는 저작권법 혹은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여 저작권자가 안심하고 권리를 위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가 신뢰하고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은 2000년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관리사업법) 제정을 통해 규제 범위를 모든 저작물로 확대하고 주무관청의 감독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였는데, 구 중개업법에서 채택했던 허가제 대신에 등록제를 채택하였다. 신탁관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집중관리단체가 독점의 폐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116) 일본 저작권법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제88조 참조.

117) 독일 저작권법 제138조 제4항.

118) 프랑스의 SACEM은 1851년 독일음악저작권관리단체(GEMA; 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Aufführungs- 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는 1938년(alte GEMA 1915년, STAGMA 1933년) 그리고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1939년에 설립되었다. 이들 외국의 유수의 집중관리단체들과 비교한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역사는 보잘 것 없다.

4. 저작권 개선 필요성

1) OSP의 역할과 책임

(1) OSP의 책임 근거의 문제

우리나라는 간접침해론에 대한 책임 근거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현행법 하에서는 법원의 입장으로 보이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근거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가 큰 무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저작권법 독자적인 이론으로 발전시켜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고민이 필요하다. 유형을 세분화하여 간접침해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침해의 주체를 확대하는 방법, 특허법의 간접침해 규정을 저작권법에 도입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미국에서 발달한 기여책임 내지 대위책임의 법리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판례들을 통해 다듬어진 비교적 탁월한 판례법상 법리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를 참고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가치가 인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륙법을 수용하여 왔으며, 기여책임이나 대위책임에 대해서는 이들을 구분 짓는 기준도 논의된 바를 찾기 어렵다. 즉 우리의 저작권법과 민법은 미국의 판례법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박준석, p.55) 미국의 판례 이론을 별다른 입법적 조치 없이 원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¹¹⁹⁾

같은 맥락에서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연구와 경향은 보다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¹²⁰⁾ 가라오케 법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른바 ‘저작물의 사용 주체성’을 사실적 개념이 아닌 규범적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직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다소 완화하여 해석하는 방법은 법 기술로써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오승중, 2007).

주목할 만한 것은 OSP의 책임과 관련하여 최근 저작권법 개정의 방향이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규제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는 듯하다.(제104조)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삼진아웃제’의 도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119) 각테일 사건이나 인터넷 제국 사건은 민법 제756조와 미국의 대위 책임 법리를 혼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박준석, p.55).

120) 간접 침해와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저작권법에 없는 것은 물론이고, 민법의 불법행위 부분에도 대위책임이나 기여책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지나친 책임 부과와 행정 규제는 OSP의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OSP 면책 조항의 실효성

우리 저작권법은 책임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EU 등 어느 국가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입법형식이다. 이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부터 전면적 책임을 지는 경우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별도의 기준은 법문 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입법 태도는 정보유통의 활성화라는 책임제한입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우려를 자아낸다(박준석, 2006).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달리 미국이나 EU에서는 OSP의 유형을 세분하여 개별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일견 보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유형의 OSP가 등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와 현행법도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2) 자유이용의 재조정-열거적 조항의 한계

권리자와 이용자의 저작권법적 균형은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권리의 부여와 저작권 제한 등 자유이용 관련 조항들이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새로운 이용형태가 나타나면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입법절차는 공론화와 시일이 필요하므로 필연적으로 법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방통융합 매체가 콘텐츠의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주었지만, 정작 저작권 장벽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오히려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콘텐츠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통제되는 것도 그러한 예이다.

법원은 기존 저작권법에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한 조항을 활용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왔다. 저작권 제한규정에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이라든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등의 추상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법원은 이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법과 현실의 간격을 메우려고 노력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제한

적인 운신의 폭을 허용할 뿐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의 fair use 조항이나 영국의 fair dealing과 같은 일반 조항의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권리처리의 어려움

(1) 공시제도의 부실과 거래비용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일반인에게 권리처리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작권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이용허락을 위한 협의를 하기 어려운 ‘거래비용’의 문제는 저작물의 활용과 유통에 결정적 장애로 작용한다. 부실한 공시수단은 권리처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등록제도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법적인 추정력과 대항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등록 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하고 있으며 공신력이 없는 제도이므로 현재의 권리 보유자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라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이용허락에 대해서는 아예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한 라이선스(licensee) 여부는 공시 방법이 아예 없다.¹²¹⁾

(2) 집중관리단체의 한계와 대안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처리의 창구를 단일화 시켜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이점이 있다. 하지만 권리자들이 단체에 위탁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의미는 반감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집중관리단체 구성·운영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이 구축되지 못한 곳이 많다보니 저작권자들이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법제도적으로 위탁하지 않은 권리자에 대한 권리 처리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계약적 및 법적 기술들이 검토되어 왔다. 예로는 면책조항 계약, 법적 추정, 명령적 집중관리, 확대된 집중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면책조항 계약 또는 묵시적 허락은 영국 저작권법 제136조의 경우와 같이 이용자와 계약 시 저작권 단체가 비회원 권리자에 대해 보상지급책임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만

121) 미국 연방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이전, 배타적 이용허락 또는 비배타적 이용허락과 관련된 서면을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드는 것은 아니고 단지 민법상의 재정적 책임을 제거하는 것뿐이다. 계약이 형법상의 책임을 이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그가 행한 침해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

법적 추정은 독일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관리법 제13조(b)가 그 예로 거론된다. 법적 추정은 실무적 효과는 확대된 집중관리와는 다르지만 저작권 단체에 권리자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권리를 주는 반면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명령적 집중관리는 묵시적 허락이나 법적 추정과 반대로 법에 의한 명령으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덴마크저작권법 제39조나 독일저작권법 제54조(h)의 사적 복제, 독일 저작권법 제27조나 네덜란드저작권법 제15조a의 공대권, 덴마크저작권법 제35조(3)의 재송신, 덴마크 저작권법 제38조(5)나 독일 저작권법 제26조의 재판매권이 그 예로 거론된다(이영록, 2007).

이러한 계약적 및 법적 기술들 중 하나로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e)가 있다. 확대된 집중관리는 말 그대로 집중관리를 확대한 것을 말한다. 즉, 기존의 집중관리제도에서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가 위탁한 저작권만을 관리 할 수 있지만,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집중관리 단체의 경우 위탁하지 않은 저작권자의 권리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대량이용의 경우 특히 사진복사와 같은 경우에 그 권리처리를 위한 북구국가들의 특징적 해법이다(이영록, 2007, p.37).

우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자발적 가입자를 늘리고 나아가 미가입자에 대한 권리처리를 위한 법기술적 고민이 필요하다.

Ⅵ.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미디어 융합에 따른 재편

1) 방통융합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체계 마련

저작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법제도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저작물의 활용형태는 다양화되었음에도 아직도 행위유형의 규제는 출판시대에 머물러 있다(이상정, 2009).

방송과 통신의 융합되면서 방송과 전송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공중에 대한 전달과 지인간의 전달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법의 태도 역시 재고의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 콘텐츠는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매개 축소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OSP가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은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수년간 개정을 해오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융합 환경에서는 모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관련 네트워크가 상호 연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서비스를 서비스 플랫폼 또는 형태에 따라 수직적으로 분리하여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 전송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강재원·이상우, 2006). 물리적 인프라 계층은 멀티미디어를 위한 전송기술의 발전에 따라 갈수록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법적 개념으로 전송에 의한 것인지 방송에 의한 것인지의 구분이 용이치 않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통융합 환경에서 기술 방식에 따른 준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방송과 전송의 개념은 좀 더 세밀하게 재고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의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발전을 저작권법이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¹²²⁾

122) 전형적인 통신영역과 전송방식의 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방송영역의 구별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정진근, 2007, p.290).

2) 사적 복제에 대한 개선방안

사적 복제 규정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조화방안으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로는 복제보상금제도와 사적 복제 대상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즉 복제기기나 매체 등에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안과, 불법 복제에 대한 법률적 방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적복제 면책의 요건으로 ‘정당한 원본’을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먼저 보상금 제도와 도입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최근 영화 ‘해운대’ 사건을 계기로 불법 업로더 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식한 대다수의 다운로드자에게 법률적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고 있다. 영화 해운대의 동영상 파일이 웹하드에 합법적으로 유통될 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수많은 일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였고, 이에 대해서까지 사적 복제라는 항변을 인정해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독일과 일본은 이미 유사한 입법을 마친바 있는데, 최종 이용자로 할지라도 위법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까지 면책을 시켜줄 필요성은 크지 않으므로 불법물임을 인식한 경우에는 사적 복제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²³⁾

법원은 하급심이긴 하나 현행법에서도 마치 ‘원본의 적법성’을 사적 복제의 요건으로 하는 적용한 듯한 판결을 내놓은 바 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7카합2827결정; 소위 ‘Diyhard 사건’), 디지털 시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참고〉 Diyhard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7카합2827결정

피신청인은 www.Diyhard.co.kr 사이트를 통해 파일공유 전용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소위 ‘웹하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웹하드 서비스는 최근 본래의 저장형 웹스토리지 서비스에서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로 변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이용자 중 일부가 관리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고 있었다. 웹하드 운영자에 대해 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긍정한 논리는 소리바다 사건들과 상

123) 다만 원본의 정당성을 요구하게 되면, P2P, 웹하드 이용자에 대한 대규모 형사고발과 합의금 협상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근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고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민사책임만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업로드 되어 있는 음원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인 경우에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하면 저작권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행위도 적법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판시를 하였는바, 사적 복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3) OSP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

새로운 매개자로 등장한 OSP는 이전의 매개자와는 달리 콘텐츠에 대해 인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자기책임 과실책임을 기조로 하는 책임 체계에 간접침해 방조책임이라는 이론 하에 제3자의 책임이 확대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이상정, 2009 계간 저작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접침해론에 대한 보다 정치한 법이론 구성이 필요한 상태이다.

OSP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면책 조항에서 구체화되는데 OSP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법조문의 적용대상이 되는 OSP 범위 확정만큼이나 OSP의 종류와 행동에 따른 책임 범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하므로 일일이 미리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오히려 현재처럼 단일한 규율체계를 통해 일반 조항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면책 조항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OSP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법적용이 바람직해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면책 규정의 효과가 임의적 감면인 점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¹²⁴⁾

2007년 타결된 KORUS FTA에서 OSP의 유형을 단순 전송, 캐싱, 웹사이트 링크, 게시판 기능의 4가지로 나누어 그 책임제한요건을 차별화하기로 약속하였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남아 있지만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우선은 유형별 기준 마련에 힘을 모아야겠지만, 유형 구분과 차별화된 면책 요건은 끊임 없는 갱신을 통해 기술 발전을 쫓아가야 할 것이다.

124) 뉴질랜드 의회가 2008년 4월 8일 통과시킨 저작권법 제92조 B는 ISP의 책임과 관련하여 단지 이용자가 권리침해를 한 것으로써 ISP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나 서비스 이용자에 의하여 제공된 소재를 저장(storing) 또는 캐싱(caching)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4)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의무와 시정명령 제도

최근 OSP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 기술적인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바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진 데 이어, 2009년 4월에는 소위 ‘3진 아웃제’로 알려진 계정·게시판정지명령제도가 마련되었다(제133조의 2).¹²⁵⁾

OSP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소위 3진 아웃제도는 내용과 집행 형태에 있어 각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반복적 침해에 대해 망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많은 국가들에서 입법을 검토 중에 있다. 프랑스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수정안을 제시하여 2009년 11월 발효되었고, 뉴질랜드도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발의와 철회를 반복하면서도 2009년 4월 프랑스의 Hadpoi법안을 참조한 삼진아웃제가 포함된 ‘저작권 신기술 개정법’(The Copyright(New Technologies) Amendment Act)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대만도 2009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였는바, 3번에 걸쳐 저작권 침해를 범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속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기 국가들은 입법과정에서 위헌론의 제기와 적잖은 반대 여론에 부딪혔었지만 결국 수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에 성공하였고, 많은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접속을 통제하는 방식의 입법을 논의 중에 있다. 더구나 유럽 의회에서는 최근 회원국의 인터넷 접속차단 조치 제한규정을 폐기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이호홍, 2009).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서 접속을 통제하는 것은 분명 위하력(威嚇力)이 있으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피해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다(이규홍, 2009).

사법기관도 아닌 행정기관의 판단에 저작권의 이름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 방식을 취한 것이 올바른 결말로 이어지려면 적지 않은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지나친 법적 의무의 부과와 행정적 규제는 OSP의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125) 이 제도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수정안을 제시하여 2009년 9월 하원을 통과하고 11월 1일 발효되는 프랑스 Hadpoi법의 3진아웃제와는 다르다. Hadpoi법은 일단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다른 사이트와 계약체결이 금지되어 인터넷에 대한 일체의 접근이 금지되는 반면 국내법은 특정 OSP의 계정만 정지되고 다른 OSP의 계정은 정지되지 않고 또한 이메일 전용계정은 정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입법 연혁과 상세한 내용은 서달주(2009) 참고.

〈참고〉 시정명령제도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물의 배포는 사후적 규제가 어려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내용을 개괄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복제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등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OSP에게 해당 콘텐츠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경고 조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나아가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불법복제물 전송자의 계정 정지” 및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3〉 계정 게시판서비스 정지 명령

구분	계정 정지 명령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조항	제133조의 2 제2항	제133조의 2 제4항
주체 / 객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업무절차도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 ▼ 경고 명령을 위한 심의 요청 ▼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복제·전송자에게 경고 명령 ▼ 불법복제물 반복적 전송 ▼ 계정 정지 명령을 위한 심의 요청 ▼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 계정 정지 사실 통보	OSP내에서 불법복제물 유통 ▼ 삭제, 전송중단 명령을 위한 심의 요청 ▼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삭제, 전송중단 명령 ▼ 3회 이상 명령 대상 및 심각한 저작권 등 이용질서 훼손 인정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위한 심의 요청 ▼ 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 ▼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 ▼ 게시판의 서비스정지 사실 게시
불이행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2조)

2. 권리처리의 간소화

1) 저작권 등록 활성화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저작권자 탐색과 협상에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므로 권리자 탐색을 위한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창작자나 권리자, 권리 이전의 연혁을 공시할 수 있다면 권리자 탐색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해 주는 권리 인증 제도가 정착한다면 콘텐츠 유통의 혁명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입법자가 의도한 권리 인증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거래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대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등록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현행 법상 법적인 저작권의 공시 제도로는 저작권 등록제도가 유일하며, 비교적 간단한 서류의 제출로 쉽게 법적인 효력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방식주의에 따라 등록여부에 따라 법률적 효력이 크게 차이 나지 않으므로 등록율을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¹²⁶⁾ 입법적인 과제로 베른협약 등 국제법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의 법적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내국민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법정손해배상이나 소제기시 인센티브를 주는 미국의 제도는 참고가 될 수 있다.

DB 구축을 위해 등록건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납본제도나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등록과 저작권 등록제도를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 및 그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신탁관리단체에게도 등록료를 면제해주게 되었으므로, 향후 등록률 향상이 기대된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노력과 저작권의 가치 증대와 맞물려 최근 저작권 등록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관리와 보존, 그리고 검색의 편

126) 등록 확대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권리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식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며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한다면 자발적 등록 건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베른협약 등 국제 조약상의 한계로 인해 불가능하거나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최진원·김학선·이종민, 2009).

의성을 제고한다면, 권리자 확인을 위한 공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리의 보유자와 변동의 이력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DB 구축이 이루어지면 현재 권리자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시수단으로서 거래비용을 낮추고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고, 공유저작물, 공공콘텐츠의 활용도 보다 용이해져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집중관리단체의 역할 제고

현대에 있어 저작자의 보호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부여 및 보호와 함께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적절히 보호될 수 있어야 비로소 저작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한 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집중관리제도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디지털환경에서 배포되는 저작물에는 인식 태그(tag)가 부착되고 장래 이용자를 실시간으로 계약할 수 있게 미리 정해진 이용허락 조건을 담은 “permission header” 또는 저작권자에게 자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권리의 자기관리(self-administration) 시스템은 종국적으로 집중관리를 대체할 것으로 본 것이다(Hugenholtz, 1996). 그러나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금, 집중관리제도는 여전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술진보로 저작물의 이용이 대량화되면서 오히려 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이 심화되었으며 저작권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개별관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반대로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대량이용 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집중관리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집중관리단체는 20년의 역사를 쌓고 있지만 그 기대와 성장가능성에 비추어 현재의 성과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¹²⁷⁾ 현실적인 문제로는 국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특히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가 가장 문제된다. 국내 집중관리단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의 투명성의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집중관리단체와 저작권자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는 결코 집중관

127) 집중관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해야 할 주제로는 집중관리단체의 허가주의에 대한 검토, 신탁범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 식별체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검토 등이 도출된 바 있다(오승중·최진원·김성은, 2006).

리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다.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투명성은 집중관리단체 존립의 기초로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이영록, 2007).

집중관리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일의 저작권관리법이나 일본의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을 참조하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의 제정 후 1987년 개정법에서 집중관리단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이래 근거 법률의 변경은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더불어 신규 단체들의 설립도 활발해지고 있어, 저작권법에 규정된 몇 개의 조문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이영록, 2007). 저작권법이 복잡해져 가고 있는 만큼 집중관리 관련 규정들도 다양한 규정과 체계적인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 존립 기반인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기구나 지배구조 및 조직 구조, 회계 감사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집중관리단체에게 공적 단체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거나 정부 주도적으로 규율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특별법 제정의 논의가 과도한 규제의 본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장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3) 법정허락 제도와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

집중관리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권리처리를 시도하는 방안은 권리자가 가입을 주저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음반제작자들은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정 영역에 제한되긴 하나, 복구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확대된 집중관리의 도입이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방송의 재전송에도 ECL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 공공 콘텐츠의 활용과 지상파 재전송의 저작권 이슈가 뜨거운 감자인 우리나라 현실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신탁관리 현실이 ECL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대표성을 확보한 단체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론이 제기될 수 있으며, 국제 협약상의 3단계 테스트 충족도 우려된다.¹²⁸⁾ 무엇보다도 현재 확대된 집중관리가 논의되는 대상영역은 이미 법정

허락이나 지정단체제도 등 어떠한 형태로든 권리제한 등이 행해지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다(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권이 보상 청구화 하는 경향이 있다(이영록, 2007). 우리나라에서도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안적 보상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권리 채권화가 검토되고 있다. 향후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마련되거나, 저작권이 보상청구권화 되는 경우라면 저작물의 이용허락 그 자체보다는 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 온라인 저작권거래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원 파일을 간편하게 결제하고 다운로드 받듯이, 권리자와 이용자를 매개할 수 있는 콘텐츠 거래소가 갖추어진다면 콘텐츠 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소재와 협상이 필요치 않으므로 저작권 처리를 위한 거래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미연방의회의 권고에 따라 사적 단체로서 저작물거래소(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가 조직된 바 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전자저작물거래소(Electronic Copyright Clearance Center; ECCC) 등 집중관리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일본도 일본 저작권심의회 멀티미디어소위원회 위킹그룹이 저작권권리정보집중기구(J-CIS)의 설립을 제창한 이래 그 실행이 꾸준히 도모되고 있다.¹²⁹⁾

우리나라도 10여년 전부터 멀티미디어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이 사업은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저작물 정보와 저작권 소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상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망과 하드웨어를 구축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기초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이용허락

128) 북유럽에서 이미 검증 받은 방식대로 따른다면 국제협약 위배의 우려는 상당부분 희석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베른협약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규정의 효력을 노르웨이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나 노르웨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처음 공표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외국과 노르웨이에서 동시에 처음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129) 일본은 2002년부터 일본 총무성은 브로드밴드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콘텐츠의 네트워크 유통을 위한 권리 클리어런스에 관한 연구회와 연계하여 저작권 클리어런스 메커니즘 개발을 추진해 왔다. 메타데이터 체계는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콘텐츠의 유통 및 아카이브 저장을 위해 콘텐츠와 관련된 수많은 권리 정보 관련 항목을 입력한 것이다.

및 대가 지급까지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이후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저작권정보센터에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등을 둘 수 있게 되었고 저작권거래소 구축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저작권 거래소의 개념은 민간에서도 ucclc.or.kr 등 오픈마켓 형태로 권리와 이용자가 만나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저작권 거래 매개 사이트가 시도된 바도 있었다.¹³⁰⁾ 정부차원에서도 수년전부터 마치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쉽고 편리하게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거래소’를 연구해 왔고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아직 보완할 점이 많기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8년 5월부터 저작물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http://www.clms.or.kr>, CLMS)을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온라인 저작권이용계약서비스를 제공하여 콘텐츠의 저작권정보 및 이용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저작물의 원스탑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집중관리단체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저작물 및 저작권자의 관리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에 관련한 총합적인 디지털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과 연계된다면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율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법제도적인 개선점으로는 시스템 근거법, 소비자 보호 등의 쟁점도 있겠지만, 거래되는 콘텐츠 권리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등록제나 권리인증제도와 연계하여 거래되는 콘텐츠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등록이나 인증의 법적 효과를 제고하는 입법론적 대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CLMS)

CLMS는 KBS의 음악 아카이빙 DB 연계 및 어문 저작권DB 추가로 80만 건 이상의 방대한 저작권통합메타DB, 저작권자 DB를 이용하여 저작권자가 소유한 저작물의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특히 권리관리정보등록에서는 그동안 저작권신탁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리·운영하던 저작물 및 저작권자 번호를 통합하고, 저작권료의 분배·정산과 연계한 저작권관리번호 체계를 도입해 저작권신탁단체의 개별시스템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용계약에서는 저작권이용조건 확인과 전자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사용내역조회를 통해 저작권이용 후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통합사용내역관리시스템과 사용안내서 등도 지원하고 있다.

130) 거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와 저작권자의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저작권 거래소의 한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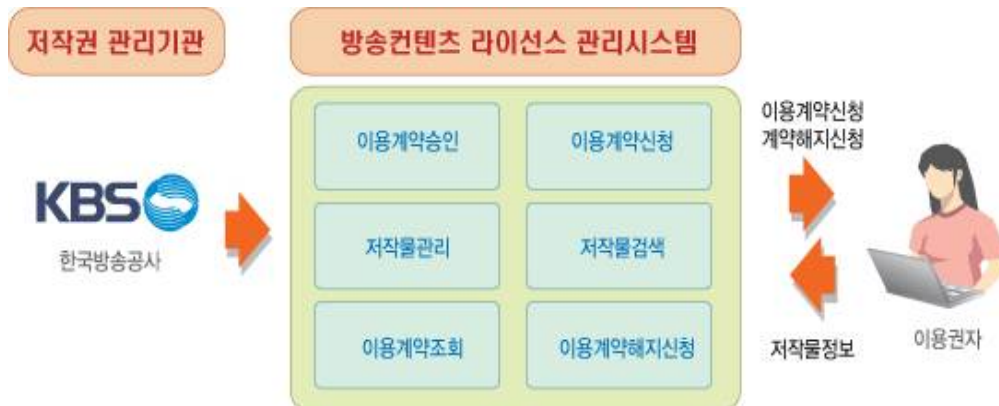
[그림 12]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이용 절차



자료: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http://www.clms.or.kr>

이같은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서비스사업자 등이 그동안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음원제작자에게 각각 제출해야 했던 사용내역을 한번만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유통 및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밖에도, 저작권신탁단체 관리저작물의 조회 및 다운로드, 신탁변경정보의 자동통지 등 이용계약업무에 따르는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3] 방송콘텐츠 라이선스 이용계약신청시스템



자료: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http://www.clms.or.kr>

CLMS는 체계적인 디지털저작권관리체계 구축과 보다 편리한 저작권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3단계 사업을 통해 음악, 어문에 이어 영상저작물로 확대 구축함으로써 저작권 이용에 있어 불법 복제의 사전예방과 합법적인 저작권처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UCC, IPTV 등의 등장으로 복잡해진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과 방송사별로 다른 이용 계약 구조를, 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기초로 표준화는 방안과 뉴스 콘텐츠의 경우 라이선스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워 시행할 계획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음악 및 어문저작물에 이어 방송콘텐츠에 대한 시범서비스도 시작하였다.

3.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권리 균형 재고

1) DRM 우회금지에 대한 개선 방안

저작권자의 권리가 법이 아닌 기술에 의해 보호되고, 그 기술을 다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치하게 조정되어 온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¹³¹⁾

DRM은 Protector에서 Enabler로 변화해 가는 것이 현재의 동향이므로, DRM의 과보호는 저작권법이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물론, 이미 Apple이 iPod MP3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도록 음악파일에 FairPlay DRM을 부착시킨 사례에서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었듯이 DRM은 공정거래법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2007년 6월 서명한 KORUS FTA는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접근통제에 대한 보호를 담고 있고, 이를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안(안 제104조의 2, 의안번호 1801513)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보호는 이제까지 당연시되어 온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막게 될 우려를 자아낸다.¹³²⁾ 이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DRM 관련 입법 노력은 이용자 관점에서 DRM의 오남용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우회 금지의 예외 설정에 대한 고민으로 전환될 시점이다.

DRM의 과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움직임은 세계 각지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정보운동단체인 디지털컨슈머그룹(digitalconsumer.org)이 제시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버지니아 민주당 의원 릭 바우처(Rick Boucher)가 제안한 미디어 소비자 권리법(Digital Media Consumers' Rights Act)이 대표적이다.

우리도 DRM의 보호가 이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하면 미국이 3년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예외 조항을 조정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은 참고가 될 수 있다(최진원, 2008a).

131) 콘텐츠의 유통 경로를 고려하면, 향후 DRM에 대한 저작권법의 태도는 저작권적 권리 균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저작권 정책과도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최진원, 2008b).

132) 미국의 연방헌법 제1조 제8항에서는 학문의 증진, 일반인의 공유영역의 보존, 저작자의 보호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외에 묵시적인 접근권(implied right of access)이 제4의 정책목표로서 추구되고 있다(Patterson & Lindberg, 1991).

2) 일반 조항의 도입 검토

현행 열거적 자유이용 조항만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권리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침해행위라고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상황이 다수 존재하고, 실체에 부합하는 적절한 해결을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 조항의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유이용을 일반 조항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 영국, 대만 정도가 거론된다. 미국에서는 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저작권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이론이 형평법상 판례를 통하여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그 동안 판례법으로만 해석·운용되던 공정이용의 법리는 1976년 개정된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처음으로 명문화 되기에 이르렀는데, 위 조문은 공정이용 원칙에 따라 저작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1) 저작물 사용의 목적 및 성격(사용이 영리성을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비영리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2) 저작물의 성질, (3)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율, (4) 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격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³⁾

영국은 미국의 Fair use와는 다소 다른 Fair Dealing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저작권법은 연구나 사적 학습, 비평이나 논평,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dealing)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fair dealing에 해당여부는 이용목적, 이용된 부분의 양과 가치, 이용된 부분의 비중, 저작물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배포된 범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곽경직, 1990).

대만은 1992년 ‘합리사용(合理使用)’을 규정하면서 이례적으로 미국 fair use와 유사한 일반 조항을 마련하였다. 대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제한되는 개별적인 경우를 열거한 뒤 제65조에서 ‘상업목적 혹은 비영리 교육 목적을 포함한 이용의 목적과 성질, 저작물의 성질, 이용분량이 전체 저작물 중에 차지하는 비율, 저작물의 잠재시장과 현재 가치에 대한 이용결과의 영향’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이용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이용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KORUS FTA 합의문에서 국내법적 수용을 명시한 바 있다. 2008년 12월에는

133) 미국의 연방저작권법은 제106조와 제106조A조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107조에서 일반적인 제한으로써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제108조에서 제120조에서 구체적인 권리 제한을 두고 있다.

국제협약의 3단계 테스트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를 모델로 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888호).¹³⁴⁾

공정이용에 대한 일반조항의 신설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에 대응할 수 있고 특히 현재와 같은 기술변화가 급격한 시대에는 입법의 지연을 보충하는 작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명확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준 부재에 따라(Madison, 2004) 법적 안정성의 위기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판례를 통해 선례를 축적해 나가는 fair use 방식이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입법기관의 빠른 대응과 권리 남용 법리의 활용, 기존 개념의 유연한 해석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음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中山信弘, 2008).

3) 가이드라인의 모색

공정이용의 일반 조항 도입이 유력한 가운데, 각 분야별로 소위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은 세세한 사례들을 일일이 법조문을 통해 구현할 수는 없다. 결국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룰 형성이 필요하고, 이에 의하여 법원의 판단 준거가 생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사용의 안착이 이루어져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공정이용 여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모여 공정이용지침(fair use guideline)을 만들었다.¹³⁵⁾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와 끊임없는 조정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현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작권상생협의체에서는¹³⁶⁾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134) 제35조의 2(저작물의 공정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제1항에 따른 이용행위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 또는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방법, 2. 저작물의 종류 및 성격, 3. 저작물 중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 및 비중,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135) 주요한 지침으로는 agreement on Guidelines for Classroom Copying in Non-for-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Books and Periodicals; Guideline for Educational Uses of Music; Proposal for educational fair use guideline for digital images 등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박준우(2009) 참조.

136) 2009년 9월 정부주도로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저작권을 둘러싼 ‘적과 아군’의 이분법적

논의되고 있는데, 인터넷상 음악저작물을 우연히 이용한 경우에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털이 마스터 테이프를 디지털싱글음원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포털 등이 제공하는 음악저작물의 미리듣기가 저작권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그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법원의 판단을 강제할 수 없겠지만 사실상 일종의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규호, 2009). 이는 당사자 간의 공정한 합의의 결과가 사실상 법률적 효과를 가지게 됨으로써 균형 모델을 법제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사법권에 대한 간섭이 우려되기도 한다.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은 채, 저작권 지침이 사실상 사법적 판단과 동일한 효력을 하는 상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용자, 포털 및 저작권자가 상생하는 모델, 이상적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문화발전이라는 저작권법 본래의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상생의 저작권 모델

1)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CCL은 자신의 많은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길 원하는 저작자들이 이러한 자신의 의사를 저작물에 표시함으로써 저작물 공유와 저작권 보호의 상반된 두 입장을 조화시키고자 등장한 개념이다. CCL이 표기된 저작물의 경우, 이용자는 저작권자와 직접 접촉하여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의 이용방법과 조건을 알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저작권 분쟁의 소지 또한 줄어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CCL의 도입은 모든 권리가 보호되고, 어떤 권리도 보호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채우는 중간지역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등의 대형포털을 중심으로 CCL이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CCL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용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CC Korea를 중심으로 CCL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구분과 끝날 것 같지 않던 법정 분쟁이 상생의 길로 전환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제로섬 게임이 아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법제도는 정책적으로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 활성화를 위한 CCL 도입 지원이 필요하다. 그 대안의 하나로 공공콘텐츠에의 CCL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정제호(2008)에 의하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는 서비스와 비즈니스 활용에 높은 가치를 갖는 양질의 데이터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위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공공콘텐츠의 활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콘텐츠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활용되게 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CCL을 적용한 공공콘텐츠를 개방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공공콘텐츠를 이용한 제 2차, 3차 콘텐츠가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된 콘텐츠들이 또 다른 콘텐츠 제작에 활용된다면 콘텐츠 부족과 저작물 침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오픈 비즈니스 모델

앞서 살펴본 CCL은 주로 비영리적 목적의 콘텐츠에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 CCL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은 CCL이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자가 배타적으로 콘텐츠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공유를 선택함으로써 콘텐츠가 더 많이 활용되고 나아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오픈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자멘도(Jamendo)는 합법적으로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이다. 자멘도에서 음악가들은 자신의 음악에 대해 CCL을 적용하여 자멘도 사이트에 올리게 되고 소비자는 원하는 음악을 찾아 무료로 듣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자멘도의 수익모델은 광고수익, 사업수익, 그리고 기부로 구성되어 있다. 자멘도 사이트에 업로드 된 음악이 상업적 용도로 쓰일 때 자멘도 프로(Pro)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수익은 자멘도와 원 저작자가 반씩 공유하게 된다. 페이지 뷰에 따른 광고수익 또한 원 저작자와 공유하며 기부는 대부분이 음악가에게 돌아가게 된다. 자멘도의 사례는 음악의 유통모델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기 힘든 음악가나 개인들은 자멘도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을 노출하고 홍보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보다 많은, 보다 다양한 음악콘텐츠들이 창작·유통될 수 있다.

일본의 로프트워크(Loftwork)는 디자이너의 협업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한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수익모델이 광고인데 반해 로프트워크의 수익모델은 상업화라는 점이다. 로프트워크에 있는 디자인들은 CCL이 적용되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로프트워크의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상용화되어 판매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로프트워크에서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창조적인 디자인들이 탄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콘텐츠의 온라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뉴스뱅크가 CCL을 적용한 사업모델을 선택한 사례가 있다. 뉴스뱅크는 전통적 신문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컨소시엄이다. '08년 현재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전자신문, 조선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헤럴드미디어 등 주요 신문사를 비롯한 29개 매체가 가입되어 있다. 뉴스뱅크는 뉴스뱅크이미지라는 언론사들의 통합 보도사진 사이트에서 각 가입 사들이 제공한 보도사진에 CCL을 도입하였으며 효과적으로 저작물을 관리하기 위해 개별 콘텐츠에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핑거프린트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복제물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뉴스뱅크의 주 수익모델은 광고인데 뉴스뱅크AD라는 온라인 광고플랫폼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의 뉴스콘텐츠의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 내용과 맞는 광고를 삽입하여 광고의 노출 및 클릭횟수를 매체별, 콘텐츠별로 집계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네티즌들은 원하는 기사, 사진, 동영상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콘텐츠 생산자는 광고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박창신, 2008).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콘텐츠의 CCL도입은 저작권 포기가 아니라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고 활용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대안적 보상체계

인터넷의 진화와 함께 공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콘텐츠는 기존의 소비자에 지나지 않았던 이용자 측면에서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UCC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아 왔다. 대표적인 UCC기업인 유튜브가 구글에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되면서 UCC는 정체되어 있던 인터넷 콘텐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으나 UCC 서비스 확대는 심각한 수준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면서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UCC가 이용자의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라 방송, 음악 등 기존의 콘텐츠를 편집,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진 UCC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데 있다.

UCC가 거대한 규모의 저작권 분쟁에 직면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UCC가 새

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작권 관리자는 자신의 저작물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전혀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UCC를 원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원 저작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UCC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그리고 UCC 비즈니스 사업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이용자가 원 저작권자와 일대일로 계약을 하는 것은 거래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개별 이용자들은 권리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일일이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천 콘텐츠를 이용하고 대신 권리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안적 보상체제는 보상금을 조성하는 방법이나, 콘텐츠 이용 허용의 범위, 권리자에의 분배방법 등에 따라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워너뮤직이 인터넷 접속료에 일정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하는 대신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업·다운로드,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캐나다의 작곡·작사가 협회가 P2P의 합법화를 위해 매달 5불을 인터넷 접속료에 추가로 지불하면 음악파일의 공유를 허용하는 제안을 하는 시도 등이 모두 대안적 보상체제의 여러 모습을 보여준다(윤중수, 2008).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Daum이 음악 3개 집중관리단체와 협약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고객이 UCC를 제작함에 있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이용자는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창작을 할 수 있고, Daum은 더욱 많은 이용자와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저작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의 법률 개정보다는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인다.

V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방통융합과 인터넷의 발달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갖는 한계를 검토하고, 방송통신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 제도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저작권 제도의 출발은 권리자와 이용자 간 권리 조화를 통한 문화의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디지털화로 콘텐츠의 가공, 저장, 유통이 용이해지고, 불법으로 복제된 콘텐츠가 인터넷에 의해 빠르게 유통되면서 저작권 제도는 침해된 저작권자의 권리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현재 저작권 제도의 무게중심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쪽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크며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는 ‘○○만해도 잡혀 간다더라’는 소위 ‘저작권 괴담’까지 떠돌았다.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저작권법의 개정이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아닌 ‘이용자에 대한 처벌’로 다가왔다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우리나라 이용자의 인식이 부족하며,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배려가 없는 저작권제도는 콘텐츠의 창작, 활용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인터넷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언론, 포털 등의 홍보에 의해 이러한 괴담은 가라앉았으나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와 유통 활성화 관점에서 현 저작권 제도가 갖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저작권 제도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대응해 왔으나 기술의 발전을 따라 잡지는 못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은 물리적 인프라 계층의 동시성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방송의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나 비영리 방송에 있어서 저작권 제한의 특혜를 누릴 수 있고, 일시적 녹음 녹화가 가능하며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방송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방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터넷방송, IPTV 등의 새로운 미디어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정보송신자가 개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다수의 이용을 가져오는 방송의 경우 저작권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반면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인 통신은 저작권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현 저작권법의 체계는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녹화한 후 인터넷에서 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한 것이 방송권의 침해라고 인정한 것과 스트리밍방식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벅스뮤직에 대해 방송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사례

는 방송과 전송의 구분에 혼란을 겪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P2P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을 교묘히 비껴간 P2P 유사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이맵스와 지상파프로그램의 녹화를 대행하는 서비스인 엔탈은 저작권법의 공백을 이용한 사례를 보여준다. 게다가 로케이션프리, 슬링박스, VCR처럼 시간이동(time-shifting)이나 장소이동(space-shifting)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작권법 이론으로는 위법성의 판단이 쉽지 않다.

지금까지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을 전달하는 음반제작사, 방송사업자 등의 전달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인터넷과 같은 양방향매체의 등장, 그리고 웹2.0으로의 진화는 이용자와 창작자의 경계를 허물어 이제는 ‘누구나’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였다. 저작권법의 적용범위가 불특정 다수로 확대되고 대량으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저작권법의 처리방식으로는 콘텐츠의 합법적 이용이 쉽지 않다. 일반 이용자들이 저작물의 권리자를 확인하고,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합법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거래비용은 상당하다. 그러므로 현 저작권 체계는 콘텐츠의 활용,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5세 어린이가 손담비의 ‘미쳐어’ 노래를 따라 부른 50초 분량의 동영상 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이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 된 사건과 해피에로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속 TV화면에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영상이 현시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은 공정이용, 자유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인터넷은 이용자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콘텐츠 유통 환경을 제공하는 OSP를 새로운 저작권법의 규제 대상으로 떠오르게 하였다.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포털이 제공하는 썸네일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분쟁, 비아콤과 유튜브 그리고 베오와 유니버셜그룹 간 저작권 분쟁은 OSP가 더 이상 저작권 제도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콘텐츠의 창작은 물론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자와 저작권자, 그리고 OSP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방통융합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방통통신 융합에 따라 방송과 전송의 명확한 구분이 힘든 현실에서,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효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기술 방식에 따른 준별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방송과 전송의 개념은 좀 더 세밀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의한 방

송과 통신의 융합발전을 저작권법이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사적복제에 대한 개선이다. 복제기와 DRM 기술 등의 발전으로 사적 복제 조항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융합 미디어는 공중에 대한 이용, 개인에 대한 이용의 구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사적 복제 규정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조화 방안으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로는 복제보상금제도와 사적 복제 대상을 제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즉 복제기기나 매체 등에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안과, 불법 복제에 대한 법률적 방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적복제 면책의 요건으로 ‘정당한 원본’을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사업자(OSP)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이다. OSP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면책 조항에서 구체화되는데 OSP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법조문의 적용대상이 되는 OSP 범위 확정만큼이나 OSP의 종류와 행동에 따른 책임 범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춘 면책 조항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OSP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법 적용이 바람직해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면책 규정의 효과가 임의적 감면인 점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2009년 4월에 새로이 도입된 ‘3진아웃제’는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OSP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저작권의 권리처리의 효율화 이다.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저작권자 탐색과 협상에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므로, 권리자 탐색을 위한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거래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등록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다.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관리와 보존, 그리고 검색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면, 권리자 확인을 위한 공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리의 보유자와 변동의 이력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DB 구축이 이루어지면 현재 권리자에 대한 추정가능해진다. 이는 공시수단으로서 거래비용을 낮추고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고, 공유(Public Domain) 저작물, 공공콘텐츠의 활용도 보다 용이해져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온라인저작권거래시장 구축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원 파일을 간편하

게 결제하고 다운로드 받듯이, 권리와 이용자를 매개할 수 있는 콘텐츠 거래시장이 갖추어진다면 콘텐츠 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권리의 소재와 협상이 필요치 않으므로 저작권 처리를 위한 거래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되는 콘텐츠 권리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등록제나 권리인증제와 연계하여 거래되는 콘텐츠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등록이나 인증의 법적 효과를 제고하는 입법론적 대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저작권자의 권리뿐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균형의 재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권리의 부여와 저작권 제한 등 자유이용 관련 조항들이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새로운 이용형태가 나타나면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열거가 아닌 일반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이용의 일반 조항 도입이 유력한 가운데, 각 분야별로 소위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권리와 이용자의 균형은 세세한 사례들을 일일이 법조문을 통해 구현할 수는 없다. 결국 권리와 이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룰 형성이 필요하고, 이에 의하여 법원의 판단 준거가 생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사용의 안착이 이루어져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일곱째,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활용 촉진이다. CCL이 표기된 저작물의 경우, 이용자는 저작권자와 직접 접촉하여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의 이용방법과 조건을 알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저작권 분쟁의 소지 또한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등의 대형포털이 CCL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아직 CCL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용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 활성화를 위한 CCL 도입 지원이 필요하다. 그 대안의 하나로 공공콘텐츠에의 CCL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CCL을 적용한 공공콘텐츠를 개방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공공콘텐츠를 이용한 제 2차, 3차 콘텐츠가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된 콘텐츠들이 또 다른 콘텐츠 제작에 활용된다면 콘텐츠 부족과 저작물 침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저작권자와의 상생을 위한 오픈비즈니스 모델의 고려이다. 최근 CCL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은 CCL이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자가 배타적으로 콘텐츠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공유를 선택함으로써 콘텐츠가 더 많이 활용되고 나아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멘도, 로프트워크 등의 사례는 콘텐츠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해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고 활용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대안적보상체계의 도입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UCC관련 저작권분쟁의 많은 부분은 저작권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원 저작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UCC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그리고 UCC 비즈니스 사업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이용자가 원 저작권자와 일대일로 계약을 하는 것은 거래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개별 이용자들은 권리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일일이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천 콘텐츠를 이용하고 대신 권리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저작권 문제를 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콘텐츠 창작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콘텐츠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이용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적절히 배분되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작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저작권제도가 산업의 침체가 아닌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 저작권 제도는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저작권자, 이용자, 그리고 정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저작권 제도에 대한 고민이 바람직한 저작권 환경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강기봉(2006).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소프트웨어와 법률, 3.
- 강재원·이상우(2006).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규제 방향-IPTV 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20-(2), 7~43.
- 강태욱(2006). PS2-ModChip 사건을 통해 바라본 기술적 조치의 보호범위. 디지털재산 법연구, 5(1).
- 국회입법조사처(2009. 8).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대책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헌안보고서, 제33호, 2009. 8. 21
- 곽경직(1990).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김경숙(2009). UCC와 공정이용법리에 관한 미국 판례법리의 전개. 계간저작권(86), 122~144.
- 김기중(2007).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Law & technology, 3(2).
- 김동균(2008).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08. 4
- 김대호·박승관·이은미(2003). 한국사회에서의 DMB 도입과 그 의의. 위성DMB연구, 69~94.
- 김사혁·손상영·안일태·이철남·황지연(2007).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정책과 사회후생.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현철(1998). 저작권등록제도의 개선방안 및 등록업무의 처리지침(Vol. 2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_____(2004). 디지털 환경하의 사적 복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남효순·정상조(2002). 인터넷과 法律. 과주: 法文社.
- 문화관광부(2003).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 및 접근권의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_____(2006).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 및 접근권의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박덕영(2004). 시리얼번호 게시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계간 저작권(65).
- 박성호(2006). 한국에 있어서 저작권법제의 도입과 전개: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서울: 현암사.
- 박종혁(2009). 콘텐츠 보호 기술 기준 항목 개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9. 6.

- 박준석(2006).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서울: 박영사.
- 박준우(2009). 이미지의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효력제한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8(1).
- 박창신(200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적용한 뉴스뱅크의 수익모델. 2008 CC KOREA 컨퍼런스.
- 방석호(1998). 방송 영상물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방송개발원.
- _____(1999). 저작물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 뉴밀레니엄에서의 저작권환경 세미나 발표문.
- _____(2004). 영상저작물과 방송. (季刊)著作権, 제68호, 2~15.
- _____(2006). ‘저작권법상 주문형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의 재고찰. (季刊)著作権, 19(4 통권 제76호), 4~16.
- _____(2007).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달주(2009). 의회에서 의결된 프랑스 HADOPI법의 내용. 저작권 이슈 리포트(2).
- 안효질(2005). 獨逸 著作権法上 私的複製의 許容範圍와 技術措置保護의 例外. 저스티스, 통권 제88호, 147~166.
- 양현주(2003).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의 인터넷 VOD 방송 사건. 정보법학, 제7권 제2호, 173~184.
- 염동신(200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상 책임. 인터넷법률(5).
- 오병철(2003). Super Peer 방식의 P2P시스템(소리바다2)의 저작권 침해문제. 한국정보법학회 제5회 사례연구회 발표문.
- _____(2005). P2P 유사 스트리밍 서비스의 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서울중앙지법 2005. 5. 20. 선고, 2004카합2965 결정을 대상으로. 인터넷法律, 통권 제31호, 73~100.
- 오승중(2007). 저작권법. 서울: 博英社.
- 오승중·최진원(2008). P2P 사업자의 필터링과 OSP 책임제한: 소리바다5 가처분사건 항고심결정(2007. 10. 10.자 2006라1232 결정)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9(1), 223~254.
- 오승중·최진원·김성은(2006). 저작권산업 진흥 5개년 계획수립 보고서 법제도 부문: 저작권위원회.
- 오승중·최진원·박민정(2009). 저작권 권리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 서울: 저작권위원회.
- 윤종수(2007. 3). UCC 토론문, UCC 가이드라인 컨퍼런스, 저작권보호센터
- _____(2008).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 저스티스, 제106호, 477~480.
- 이규호(2009). 공정이용법리 도입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검토. 정보법학회 사례연구회 발표문.

- 이대희(2002).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서울: 博英社.
- _____ (2007).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과 이용자 편의의 조화.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제6회 포럼 발표문.
- _____ (2007. 3). UCC 관련저작권 쟁점, UCC 가이드라인 컨퍼런스, 저작권보호센터
- 이영록(2001). 기술조치의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중심으로
(No. 8986723565).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_____ (2007).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활성화 제고방안 연구: 저작권위원회.
- _____ (2009). 디지털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사적 복제 대상의 제한. 2009-1 이슈분석.
- 이일호(2006). 복제행위가 우선인가, 복제 목적이 우선인가-인터넷TV녹화기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지적재산권연구회 발표문.
- 이충훈(2000). 전자거래 관여자의 민사법적 지위. 연세대학교, 서울.
- 이형하(1992). 저작권법상의 자유이용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下): 법원행정처.
- 이호홍(2009). 뉴질랜드의 “삼진아웃제” 입법동향. 저작권 이슈 리포트(5).
- 임원선(2005). DRM과 저작권법적 보호. Law & technology: 기술과 법에 관한 전문학
술지, 3(1).
- 장인숙(1989). 著作權法原論. 서울: 寶晉齋出版社.
- 저작권보호센터(2009. 10a). 200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
권보호센터
- _____ (2009. 10b). 월간 저작권보호, Vol. 7,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
호센터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1).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전수정(2007). IP TV 도입에 따른 저작권법의 과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정상조(2007). 저작권법 주해. 서울: 박영사.
- 정준모(2006). PS2모드칩 설치의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저작권문화(141).
- 정진근(2007). 일반논문: 방송, 통신의 융합과 저작권법의 과제-방송과 전송의 새로운
개념정립. Digital Convergence and Task of Copyright Act, 263~294.
- 정제호(2008). 공공정보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2008 CC KOREA 컨퍼런스.
- 최경수(1990).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방송사업자의 보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최경수·오기석(2003). 디지털 방송과 저작권법: 문화관광부.
- 최성준(2006).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관하여. Law & technology: 기술과 법에
관한 전문학술지, 2(3).

- 최승수(2008). UCC 제공 사이트의 저작권법적 책임. 디지털재산법연구, 7.
- 최진원(2008a). KORUS FTA와 DRM 우회 금지의 예외 - Rulemaking 절차를 중심으로. 연세 법학연구, 18-2(38), 209~236.
- _____(2008b). 방송 콘텐츠의 보호와 공개 재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_____(2008c). 유료방송의 무단이용에 대한 국제사법적 문제. 국제사법연구.
- _____(2008d). 인터넷 TV 녹화서비스에 대한 법적 고찰: 간접침해와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인터넷法律, 통권 제43호, 84~114.
- _____(2009). 개인용 방송중계 장치에 대한 법적 고찰-지상파재송신과 방송콘텐츠 유통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85), 27~46.
- 최진원 · 김학선 · 이동민(2009). 저작권 등록 심사기준 수립 및 등록 업무처리 개선방안 연구, 저작권위원회.
- 하동철(2006). 공연권에 관한 연구: 재구성과 제한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서울.
- _____(2008a).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있어 디지털 송신에 대한 저작권법 규율방안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6(1).
- _____(2008b). 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小考. 창작과관리, 통권50호, 103~142.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2001). 디지털콘텐츠의 기술보호조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황성운(2007).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진한 M&B, 2007
- www.cckorea.org
- ETRI(2002).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동향 및 전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7권 제6호, 2002. 12
- _____(2003). 불법 복제 콘텐츠 추적을 위한 핑거프린팅 기술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8권 제4호 2003. 8
- _____(2005). 불법콘텐츠 추적 기술 연구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0권 제4호, 2005. 8
- TTA(2006a).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강호갑, 표준기술동향, TTA Journal, 103
- _____(2006b). 방송콘텐츠 보호/관리, IT839 전략 표준화 로드맵
- _____(2008). 차세대 DRM, ICT Standardization Roadmap 2009, 2008. 12
- _____(2008. 6). CAS-DRM 연동기술, 윤기송, 표준기술동향, TTA Journal, 117
- National Research Council(2001). 디지털 딜레마(임원선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 中山信弘(2008). 著作権法: 法文社.
- Christie, A. F.(2004). Private Copy License and Levy Schemes: Resolving the

- Paradox of Civilian and Common Law Approaches. In V. a. Bentley(Ed.),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Millennium*(pp.248~25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k, T., Brazell, L., Chalton, S., & Smyth, C.(2004). *The copyright directive: UK implementation*: Jordans Pub.B.(2004). Judas or Messiah? The Implications of the Mod Chip Cases for Copyright in an Electronic Age. *Hertfordshire Law Journal*, 1(1), 1~13
- Ficsor, M.(2002). *The law of copyright and the Internet*: Oxford University Press.
- Garner, B.(2006). *Black's law dictionary*(8 ed.): West Group.
- Garnett, N.(2006). *Automated Rights Management Systems and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 WIPO.
- Hardin, G.(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 Hugenholtz, P.(1996). "Adapting Copyright to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The Future of Copyright In a Digital Environ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 Koelman, K.(2001). *The protec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vs. the copyright limitations*.
- Madison, M. J.(2004). A Pattern-Oriented Approach to Fair Use. *William and Mary Law Review*, 45, 1525~1666.
- Patterson, R. L., & Lindberg, S. W.(1991). *The Nature of Copyright: A Law of User's Right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1.
- Ricketson, S.(2003). WIPO Stud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of Copy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9/7(June 2003)*
[http://www.wipo.int/edocs/mdocs/copyright/en/sccr_9/sccr_9_7.pdf].
- Senftleben, M.(2004). *Copyright, Limitations, and the Three-step Test: An Analysis of the Three-step Test in International and EC Copyright Law*: Kluwer Law Intl.
- Ulmer, E.(1960). *Urheber-und Verlagsrecht*: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09-16

방송통신콘텐츠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09년 11월 (비매품)

발 행 인 최 시 중

발 행 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세종로100번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전화: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 쇄 처 인성문화
